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13-01

2022년도 일반과제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인권정책영향평가 등의 방법 및 지표개발 연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인권정책영향평가 등의 방법 및 지표개발 연구』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과제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12.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박종수(숙명여자대학교)  
한승주(명지대학교)  
김공록(아주대학교)  
유은지(성균관대학교)  
최하영(숙명여자대학교)  
정재은(세종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1) 인권영향평가의 이론적 및 제도적 근거 기반 및 운영에 대한 문헌 검토 .....	3
(2)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	5
(3) 인권노력도(친화도)측정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	6
2) 연구의 방법 .....	7
<b>II. 이론적 배경</b> .....	<b>11</b>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	11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	11
2) 사전적 영향평가 .....	12
3) 사후적 영향평가 .....	14
2.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	16
1) 부패영향평가 .....	17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17
(2) 부패영향평가의 추진체계 .....	19
(3) 부패영향평가 절차 .....	21
2) 성별영향평가 .....	23
(1)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23
(2) 성별영향평가대상과 기준 .....	24
(3) 성별영향평가 절차 .....	26
3) 개인정보영향평가 .....	28
(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개념 .....	28

(2)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	28
(3) 개인정보영향평가 시기 및 체계 .....	30
(4)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절차 .....	31
4) 규제영향분석 .....	37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의의 .....	37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	37
(3)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 .....	38
(4)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절차 .....	40
(5) 규제영향분석 평가체제 .....	43
(6) 사후적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	45
5) 종합청렴도 평가 .....	46
(1) 종합청렴도 평가의 개요 .....	46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47
(3)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의 활용 .....	48
6)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48
<b>3.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사례 .....</b>	<b>50</b>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50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	55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55
(2)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	57
3) 광역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	58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	58
(2) 서울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정책사업분야) .....	61
(3)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자치법규) .....	64
(4) 광주시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투표소 인권모니터링) .....	67
(5) 충청남도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	70
4) 기초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	74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	74
(2) 서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	77
(3) 경기도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	77

### Ⅲ.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81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85
1) 인권영향평가의 정의 .....	85
2)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	86
3) 인권영향평가의 성격 .....	87
3. 인권영향평가 현황 .....	89
1) 자치법규 .....	89
2) 정책·사업 .....	92
3) 공공건축물 .....	94
4) 기타 .....	98
4. 인권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	101
5.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	108
1) 의의 및 목적 .....	108
2) 대상 .....	108
3) 평가항목 및 지표 .....	110
(1) 평가항목 .....	110
(2) 평가의 기준으로서 인권 및 기본권 .....	113
(3)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	114
4) 평가절차 .....	117

<b>IV. 인권노력도(친화도)</b>	<b>123</b>
1.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노력도	123
1) 사후평가로서 인권노력도 개념	123
2) 관련 평가 현황	125
(1) 과정 및 결과적 관점에서의 인권 노력도 평가 도구	125
(2) 반부패 및 청렴 분야 기관 노력도 평가: 청렴도평가 (국민권익위원회)	131
2. 사후적 인권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40
3. 인권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147
1) 인권노력도 구성	147
2) 인권노력도 (안)	149
(1) 제도적 요인의 지표	150
(2) 내용적 요인의 지표	152
(3) 인권행정의 사례 개발 및 확산 지표 (가점 지표)	153
(4) 감점 지표	153
4. 인권노력도 평가체계 운영 및 보완	155
<b>V. 결론</b>	<b>161</b>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161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거버넌스	164
참고문헌	167

부록

## 표 목 차

[표 1] 국내 정책영향평가 제도 비교 .....	16
[표 2]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1) .....	18
[표 3]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2) .....	19
[표 4]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	24
[표 5]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법적근거 .....	28
[표 6]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	29
[표 7]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평가대상 법적근거 .....	30
[표 8] 개인정보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요소 .....	32
[표 9]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	39
[표 10] 규제심사 흐름도-규제심사대상인 경우 .....	41
[표 11] 규제심사 흐름도-규제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	42
[표 12] 규제영향분석서 유형 .....	43
[표 13] 규제영향분석서의 세부항목 .....	44
[표 14]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지표 .....	44
[표 15]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54
[표 16]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현황 .....	58
[표 17]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	59
[표 18] 재난 관련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 범위 .....	61
[표 19] 재난관련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	63
[표 20]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	64
[표 21]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평가방법 .....	65
[표 22] 충청남도 조례별 개선권고 내역 및 수용여부 .....	71
[표 23]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	74
[표 24] 성북구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	77
[표 25] 인권침해 판단 기준 법적 근거 .....	90
[표 26] 기본권의 세부내용 .....	91

[표 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항목	93
[표 2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대상의 범위	95
[표 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평가항목	96
[표 30]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규정집·사무편람 인권영향평가 기준	99
[표 31] 광주시 공공기관 주관 행사 가이드라인	100
[표 32] 인권영향평가 사전 실시에 관한 조례 규정	101
[표 33]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단계와 방식	103
[표 34] 평가 주체의 유형	105
[표 35] 인권정책영향평가 평가제외 검토항목 (예시)	109
[표 36] 인권정책영향평가 우선적용 검토대상 (예시)	109
[표 37]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112
[표 38] 기본적 인권의 분야 및 내용	113
[표 39] 업무분야별 관련 인권목록 및 예시	115
[표 40] 국가기관 인권지수 개발안(2011)	127
[표 41] 국가인권위의 인권경영체크리스트	129
[표 42] KOSPO 인권경영지수 지표	130
[표 43] 청렴도평가제도 변천과정	131
[표 44] 제1시기의 부패방지시책 비교	134
[표 45]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변천 (2008~2011)	135
[표 46]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변천 (2012~2015)	136
[표 47]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변천 (2016~2018)	137
[표 48]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2021)	138
[표 49] 2022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체계(안)	139
[표 50] 인권에 근거한 운영의 특징	144
[표 51] 인권노력도 (조직구성원 대상)	154

## 그림 목 차

[그림 1]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1
[그림 2]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22
[그림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절차	22
[그림 4] 개인정보영향평가 처리 절차	31
[그림 5] 개인정보영향평가 처리 흐름도	35
[그림 6]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절차도	36
[그림 7] 청렴도 평가 모형	46
[그림 8]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발전 과정	51
[그림 9] 재난 관련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의 기준 선정 절차	63
[그림 10] 경기도 현행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65
[그림 11] 경기도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66
[그림 12] 경기도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67
[그림 13] 광주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	68
[그림 14] 광주시 투표소 인권모니터링 체크리스트	69
[그림 15]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70
[그림 16]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흐름	73
[그림 17]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평가대상	74
[그림 18] 인권영향평가 절차: 정책 및 사업	118
[그림 19] 인권정책영향평가 순서도: 정책·사업	119
[그림 20] 인권정책영향평가 절차: 제·개정 자치법규	120
[그림 21] 인권감수성의 하위구성	128
[그림 22] KOSPO 인권경영지수 구성	130



## 〈요약〉

### 제1절 서론

-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관점의 행정활동에 특화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권정책영향평가'와 '인권친화도측정'이라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제안함
- 전자는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의 결정 이전 관련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후자는 정부가 인권과 관련한 정책의 제도화와 운영 성과를 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임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와 정책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인권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등을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탐색함

### 제2절 이론적 배경

- 유사 영향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영향평가란 정책 등을 시행할 때 대상집단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를 분석하여 목표달성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제도임
- 사전적 영향평가는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정책 목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이 있음. 반면, 사후적 영향평가란 정책이나 사업이 집행된 이후 목표달성 정도와 범위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대표적인 예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음
- 대부분의 정책영향평가는 사전적 영향평가가 주를 이루며 사후적 영향평가는 많지 않음
- 평가기관의 경우, 일부는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일부는 평가를 소관부처에서 직접 실시함. 평가체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보다 자율적 또는 분권적으로 진행됨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인권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인권을 고려한 정책결정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 과정(결정과 집행)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수단이나 절차로,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의 세부 구성 요소로서의 사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임
-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서의 인권 영향과 주요 사업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와 함께 있는 형태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입법의 인권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임
-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공공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경영(사업) 실행·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4단계로 구분됨
-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음
  - 지자체의 경우 2018년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결과, 실제로 평가가 실시된 곳은 광주시뿐이었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지자체의 4.4%에 그침
  - 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참여 기관중 25%에 불과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 8월 기준 17개중 인권기본조례에 인권영향평가를 명문화한 곳은 9곳(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임
  - 인권영향평가를 정례적 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임(서울, 광주,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제주)

### 제3절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정책, 사업, 계획 등 다양한 국가 및 정부의 작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적 평가는 인권 주류화와 인권 실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일 수 있음
  - 인권 관련 정책의 사전적 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립 및 집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나 절차가 인

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인권친화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인권 관련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활동이 국민 및 지역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별 정책 및 사업별 인권 영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화 되는 중임
- 사전적 평가로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이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한 사회가 정책을 입안할 때 인권을 규칙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제도화한 것임. 인권을 존중하는 규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서 국가의 소명임
-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장치, 다양한 기본권 해석의 채택과 존중, 기본권 침해와 이익 침해의 구별, 실행 가능성의 고려, 정책 전반의 포괄적 검토가 필요함

## 2. 인권영향평가 현황

- 현재 인권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평가의 대상을 기준으로 자치법규,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그 밖에 기타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음
- 자치법규
  - (대상 및 범위) 집행부가 발의하는 제·개정 조례와 규칙이 대상이며, 제·개정 자치법규를 사전적으로 평가함
  - (평가 기준 및 항목) 자치법규의 내용 자체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 요소가 존재하는지와 조문 상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이 존재하는지, 자치법규의 내용이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
  - (평가절차) 일반적으로 '법제심사 전'에 이루어짐. 다만, 현행법규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후평가로 진행됨
- 정책·사업
  - (개요)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총 5곳임
  - (대상 및 범위)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보통 자치단체의 인권담당관이나 인권위원회가 선정함
  - (평가 기준 및 항목) 지방자치단체별로 표현은 다소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인권침해여부, 예방 및 구제수단의 마련, 공개와 참여권 보장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 (평가절차) 지방자치단체 사업(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사업선정(인권담당관) → 평가단 구성(인권담당관) → 영향평가(평가단/인권담당관) → 검토 및 권고(인권위원회) → 조치계획마련(담당부서) → 모니터링(인권담당관)'의 절차로 이루어짐
- 공공건축물
  - (대상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다수가 이용하고,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

는 건축물을 광범위하게 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의뢰 또는 선정하거나 인권관련 부서에서 선정하는 형식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함

- (평가 기준 및 항목) 여타 부문의 인권영향평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함
  - (평가절차)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계획되고, 준공된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짐
- 기타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며 간행물, 사회복지 시설 규정, 투표소 등이 있음

### 3. 인권영향평가운영에 대한 평가

- 사전적 평가로서의 실효성 문제(사전 평가의 공식화, 사전 평가의 실질적 가능성,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 제도의 법률적 근거 필요, 평가주체의 전문성 문제, 정책·사업의 평가대상 발굴 문제, 평가 기준의 구체화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4.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 □ 의의 및 목적

- 정책 및 사업 등 수립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 침해나 사회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대상

- (자치법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함
- (정책·시책) 정책·시책의 경우, 인권 측면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의 구성) i) 세부 항목의 점검 결과를 합하여 인권침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 ii) 세부 항목을 진단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침해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하는 방식
- (평가항목의 세부요소) 정책·사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 및 형식'상의 인권침해 요소와 정책·사업 '내용'상 기본권 제약 및 인권 침해 요소로 구성함
  - 절차 및 형식 차원: 공개, 참여, 규제, 용어 차별로 구성됨
  - 내용차원: a)인권증진의 긍정적 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대해 먼저 기능한 후, b)인권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함. 특히, c)해당 업무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사안 및 상황 예시 중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d)기본권 제한 또는 인권 규범과의 충돌 가

능성이 있는지, e)그러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 인지를 검토함

- 종합검토: 인권침해 발생 가능 정도와 실행가능성 판단으로 구성됨

□ 평가기준으로서 인권 및 기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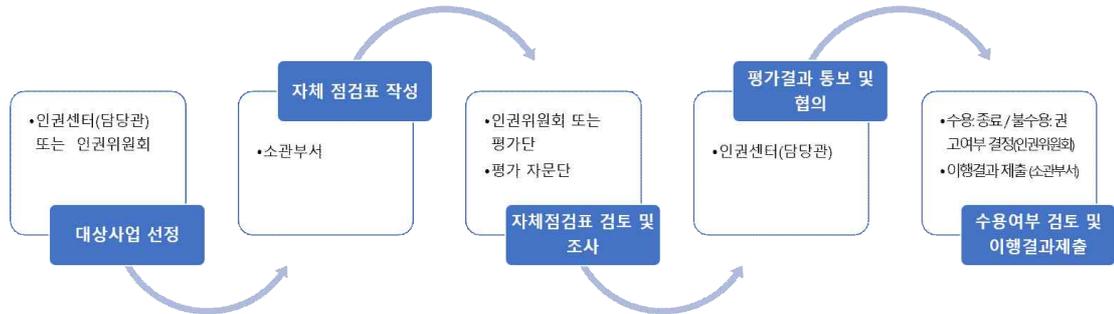
- 평가대상이 된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침해가 가능한 인권 및 기본권 종류를 나열함
- 민주적 참여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권/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권

□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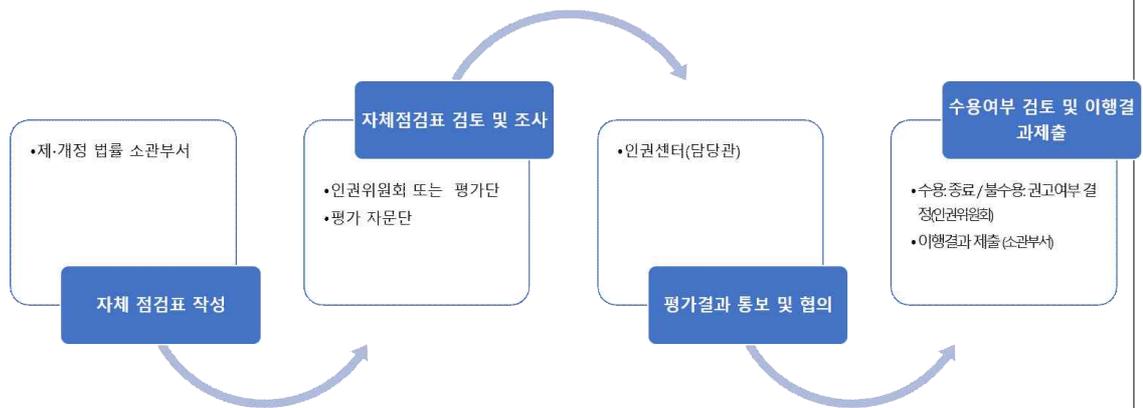
- 인권 및 기본권들이 추상적이라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분야별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세부 항목이나 사례를 지세함
-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 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이라는 10개의 업무분야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른 예시 상황을 나열함

□ 평가절차

-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각 세부적인 절차와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자치법규의 경우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가 그 대상이 되므로, 1)소관부서에서 자체 점검표 작성으로 시작하여, 2)제출된 자체점검표의 검토 및 조사는 인권위원회 또는 평가단, 평가자문단 등에서 최종 평가를 내린 후, 3)그 결과를 인권센터(담당관)이 사업부서에 통보 및 협의하고 4)소관부서에서 수용여부의 검토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됨



## 제4절 인권노력도(친화도)

### 1. 사후적평가로서 인권노력도

#### □ 인권노력도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평가임

-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서비스는 각각 개별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방식과 절차에 가치적 요소가 강조되어 조직에 내재될 것이라 기대함. 따라서 정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정책을 산출하고 서비스를 집행하는 조직 체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본 연구는 인권의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친화적” 조직 또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책 과정의 주요 활동을 평가하는 “인권노력”을 평가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권노력도란 1)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서 조직 내·외부 고객과 이해관계자(즉, 조직 내부 구성원과 조직 외부 이해관계자(주민 등))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하고, 그 침해를 구제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2) 제도적 측면에서 인권체계의 구축, 인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적 활동의 제도화 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음

#### □ 관련 평가 현황

- 과정 및 결과적인 관점에서 행정 및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평가하는 시도를 일부 추진 중임
  - 인구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기관 인권지수(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반부패 및 청렴 분야 기관 노력도 평가: 청렴도평가(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는 보다 실제적·객관적 관점에서 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됨

### 2. 사후적 인권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 과정 및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현황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 사후적 인권평가제도는 인권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 가지며, 이에 따라 인권 또는 인권 노력의 내용과 이상적 수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권에 대한 평가는 인권 증진, 보호, 및 침해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인권 노력 평가는 인권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노력 정도에 초점을 둬

- 인권 현황 평가는 기관 내부 구성원의 인권 인식 조사와 기관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인식 조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내부 평가로서의 인권 영향평가는 주로 내부구성원의 인권 침해 경험 및 인권 관련 인식을 측정함
- 반면, 인권 노력 평가는 기관의 인권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인권 추진 체계의 구축 및 거버넌스의 상황,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등의 노력을 평가함
- 인권 주류화 및 인권 제도 운영에 대한 통합 기구의 역할 부재
  - 청렴도측정의 경우 권익위가 평가를 총괄
  - 기존의 인권평가제도는 불특정 다수를 평가 대상으로 하여 인권 관련 인식이나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고,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에 따라서 각 조직의 자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친화적 조직운동을 위한 원리
  - 일반적으로 팬더 원칙(PANTHER principles)과 인권기반적접근을 기반으로 조직이 운영됨
  - 다만, 이러한 원칙은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함

### 3. 인권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 인권노력도 구성
  - (인권노력도 측정의 개념) 과정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등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 업무를 수행한 정도” 그리고 결과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내·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인식 및 경험하는 인권의 수준”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인권노력도 측정 체계 - 청렴도 측정체계와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인권경영 체계는 제도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4가지 주요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종합청렴도의 측정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권익위가 주체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인권노력도(안)

- 인권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요인과 인권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내용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음
  - 제도적 요인은 인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와 같은 조직 또는 인력, 인권관련 조례 또는 지침, 인권관련 위원회 구성, 마지막으로 4단계 인권교육과 훈련실시로 구성됨
  - 내용적 요인은 인권 경영 및 행정을 위한 제도와 사업의 추진 실적과 연관되며, 기관별 인권 취약 분야 개선, 인권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실효성 제고, 인권 주류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도적 요인의 지표) 인권기본계획 수립여부, 인권계획의 실행 체계 평가, 인권경영의 리더십 평가, 인권교육의 적절성 평가, 인권거버넌스 구축평가(가점 지표)로 구성됨
- (내용적 요인의 지표) 인권행정의 원리 적용 평가(조직 내 의사결정 참여 보장, 관련 정보 제공, 인사관리 차별 가능성, 인간으로서의 존엄보장)으로 구성됨
- (인권행정의 사례 개발 및 확산 지표(가점지표)) 인권행정 사례 평가 내용으로 구성됨
- (감점지표) 차별과 관련된 법령 불이행에 해당하는지로 활용할 수 있음

4. 인권노력도 평가체계 운영 및 보안

□ 인권노력도 평가 기본 방향

- 인권노력 평가는 인권친화도에 대한 예측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친화도 개념과 인권노력 개념을 연계해야 함

□ 인권노력도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설계

- 인권노력도의 평가 도구 개발과 평가의 실행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인권노력도 평가 결과 발표 및 활용

- 공공기관의 인권친화 노력을 평가하여 인권친화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 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인권친화도의 결과적 측면의 보완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권노력도는 인권친화도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한 도구적 지표이기 때문에 결과적 측면의 지표를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위의 인권실태조사를 지자체별로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별도로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제5절 결론

###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 □ 사전적 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정부의 행정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예방 및 최소화하는 것으로, 입법활동과 행정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제정되어 집행 중인 법률의 정비로 확장될 수 있음
- 하지만 기존의 인권정책영향평가는 행정부 일부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인권 침해 및 제한의 부정적 효과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의 달성에는 한계를 지님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권정책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권 침해 및 제한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평가 도구를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제도 및 절차적 관점에서의 평가 요소의 비중을 줄이고 내용적 관점에서의 평가 요소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의 도구로 설계되었음

#### □ 사후적 평가로서의 인권노력도 측정

- 본 연구에서는 인권노력도 측정을 인권친화도 측정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친화도의 개념적 정의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임
  - 인권노력도 측정은 개선을 위한 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과정적 측면의 노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함. 결과적 측면의 인권친화도 하위 요소로 설계됨
- 본 연구는 기존의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가 불특정 다수의 인식과 경험을 대상으로 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관의 인권 주류화 노력을 측정하는 사후평가 도구로서 인권노력도의 개념을 정의함

###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거버넌스

#### □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행정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제도의 운영과 확산이 부족하고, 인권정책 영향평가는 내용적 평가로서의 한계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도구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노력도 평가의 주관 기관으로 인권위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 단위의 인권 기본 계획 및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의 추가가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의 구축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 정책 영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정책 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다양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함
  -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간과 상시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 및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행정 및 입법기관 등)과 민간 기업의 활동이 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등장하였다. 인권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과 직접 및 간접적인 인권 관련 정책과정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용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의 제도화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기반 마련, 지역 단위의 인권위원회 및 인권전담기관의 설립, 그리고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영향평가 등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중이다. 본 연구는 인권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인권 대한 평가 기반 접근으로서 사전 및 사후적 인권 영향평가의 설계와 운영을 탐색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공적 활동으로서의 행정 및 정책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며,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을 인권의 관점으로 평가(assess)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영향평가는 주로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인권의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평가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평가에 활용하는 지표 및 추진체계 등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효과측정(review evaluation)의 다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의 의미를 담은 평가는 인권과 관련한 행정 및 정책 과정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고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전적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효과측정(review evaluation)의 의미를 담은 평가는 인권 관련 경험과 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시행 이후 결과의 변화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후적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현재, 지자체와 국가와 지방의 공공기관(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과정에서의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는 사전적 assessment의 접근보다는, 인권 관련 경험의 개선과 인권 경영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한 impact assessment와 review evaluation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체계가 구체적으

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의 공공부문에서의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공공기관 대상)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서울, 광주, 경기, 제주, 수원, 서울 성북구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공공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인권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관점의 행정활동에 특화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로써 인권정책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관점)와 인권노력도(친화도)측정(review evaluation 관점)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정부가 계획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결정 이전 관련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사전적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권노력도(친화도)측정은 정부가 인권과 관련한 정책의 제도화와 실질적 운영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인권 및 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 및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인권영향평가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정책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국내외 유사제도의 소개 등의 내용을 담는다. 국내 제도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부패영향평가가 반부패 및 청렴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의 영향평가라고 한다면, 규제영향, 성별영향,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은 정책 및 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영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정책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관 정부부처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타영향평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그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제3장은 현행의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된 인권영향평가의 현황을 재정리하고 국내 인권영향평가의 제도 도입방안을 사전적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관점)와 사후적 영향평가(review evaluation)로 구분하여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제4장은 사전적 영향평가로서의 인권영향평가의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제5장은 사후적 영향평가로서의 인권노력(친화)도의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정책영향평가와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를 포함

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담는다.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크게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와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인권 관련 경험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기관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인권 인식의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관의 조직 운영의 성과를 측정하는 사후적 영향평가(review evaluation)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기관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기관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미치는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전적 성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의 성격을 가진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사전적 영향의 평가와 사후적 효과의 평가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전적으로 행정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정책영향평가와 사후적으로 인권 관련 정책이 인권 인식 및 경험의 개선을 가져왔는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인권노력도(친화도) 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인권영향평가의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에 대한 소개, 기존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인권영향정책평가의 설계 및 측정도구 개발과 제언,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의 설계 및 측정도구 개발과 제언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 (1) 인권영향평가의 이론적 및 제도적 근거 기반 및 운영에 대한 문헌 검토

첫째, 인권영향평가의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 소개는 정책과정 및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r review evaluation)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인권영향평가의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법령분석, 정책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와의 비교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영향평가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사전적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사후적 영향평가(review evaluation)로 구분된다. 사전적 영향평가가 정책, 사업, 과제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김준현·오현주, 2011), 사후적 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과제가 실제로 집행된 이후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측정한다. 국내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상당수의 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는 사전적 영향평가에 해당하며, 정책을 통한 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적 영향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송이은, 2017; Corrigan, 2006). 인권 분야에서의 영향평가제도 역시 제도의 도입 목적과 관심 분야의 상이함과 관계 없이 비슷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정책, 법률, 공공서비스의 제안 및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영향을 판단하고 주요 쟁점별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사전적 영향평가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실제로 평가하여 모니터링 및 환류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정책영향평가의 국내 사례를 평가하고, 사전 및 사후 영향평가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하여 현행 제도의 기여와 한계를 탐색한다. 본 연구는 사전적 영향평가 중심의 평가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사후적 영향평가의 보조적 수단을 탐색하는 노력으로 사전적 정책영향평가(인권정책영향평가)와 사후적 정책영향평가(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의 이원적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의 인권의 주류화와 인권정책의 진척 사항에 대한 기관 간 비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 인권정책영향평가는 공공 및 행정기관이 제안 및 집행하는 법률과 정책, 사업,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잠재적 영향력을 시행 전에 조사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비교하여, 사후적 영향평가로서의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은 인권정책 및 과제의 추진 성과가 실제로 대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에 주목한다. 즉, 사전 예방적 성격의 인권정책영향평가가 정책 결정 과정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사후 진단적 성격의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은 정책의 환류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과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목적을 기준으로 사전적, 인권정책영향평가가 정책에 대한 평가라면, 사후적,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는 기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기도 하며,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인권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이후,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내외부 구성원/이해관계자의 인권이해 및 인식을 평가하는 흐름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해왔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 및 현황 소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도 분석의 연구내용은 기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모했던 목표 및 그 성과와 함께, 운영 상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인권정책영향평가 및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인권영향평가제도는 평가체계를 도입한 조직 단위에서의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인권에 대한 리더십의 강조와 조직구성원의 관심에 따라 평가제도의 활성화와 내재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는 인권이 모든 정책 및 사업 분야에서 주요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기 보다는 평가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관 및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 과제로서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기관의 자율형 평가로서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으로, 인권정책의 추진 기관이 일관적으로 인권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보다 집중적인 형태의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인권경영 및 인권정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인권실태조사와 조직 단위에서의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인식과 인권문화에 대한 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들이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인권 상황을 측정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기관 간 비교가 쉽지 않고, 그에 다른 인권정책의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인권경영의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등을 시행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를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는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인권경영이 작동함에 따라 외재적으로 도입된 점에 착안하여 인권경영추진체계 및 인권영향평가의 운영 현황을 실무진의 관점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정책평가 전문가의 관점, 그리고 인권 분야 전문가의 관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구내용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는 인권정책이 조직 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경영평가와 인권경영 및 정책 추진 간의 연계가 제고될 필요성을 반영한다.

## (2)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및 제언은 인권정책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대상 제시, 인권정책영향평가의 구성 체계 및 측정 지표 개발,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 검증, 인권정책영향평가제도의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기존 인권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새로운 인권정책영향평가가 가지는 특징을 제도의 목적, 대상, 기대효과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한 후, 그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인권정책영향평가는 법령·제도·정책의 입단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및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인권위가 평가 및 운영기관이 되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 규정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인권정책영향평가는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규정 등에 대한 자율평가체계의 도입과 필요시 또는 인권위의 요청시 인권위가 개선조

치를 위한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정책영향평가는 모든 법률안의 제·개정 사항 발생시 인권위가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을 평가하여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인권정책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의 형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률 단위에서부터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들과 비교하여,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 분석한다.

### (3) 인권노력도(친화도)측정의 제도 설계 및 평가 도구 개발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의 설계 및 제언은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의 목적 및 대상 제시,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의 구성 체계 및 측정 지표 개발,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 검증,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의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정책과정에 관련된 조직 내·외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될 인권노력도(친화도)평가의 목적과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제시하고, 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구성 및 개발하며, 그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인권노력도(친화도)의 정기적 조사를 통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직 내부 구성원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로서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내부 조직운영 및 외부 업무 과정에서 체감하는 인권 인식 및 경험을 측정한다. 내부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될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은 인권 인식과 인권 침해 경험의 주관적 응답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인권의 개념이 다양하고 인권 침해의 유형과 대상이 다양함에 따라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은 일반적인 인권 인식과 구체적인 준거를 대상으로 한 인권 인식과 경험을 포함할 수 있는 측정 문항의 개발과 기관 성격, 관련 법령 및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유형화 및 세분화를 필요로 한다.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은 인권인식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하고, 인권침해 항목의 결과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인권인식에 대한 측정모형은 내부 직원 대상으로 한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의 인권 경험과 외부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업무 과정에서의 인권 경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인권 침해의 경험률과 빈도를 중심으로 한 인권 경험을 감점항목으로 활용하여 인권인식과 인권경험의 지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와 정책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인권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인권영향평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헌조사, 심층면담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아 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가 사용하려는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기준으로 5개의 모듈을 구분하고, 각 모듈별로 아래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모듈은 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 설계,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측정 도구 개발,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의 제도 설계, 인권노력도(친화도)의 측정 도구의 5가지 내용을 담는다.

모듈 1은 영향평가의 제도적 및 이론적 기반에 대한 선행연구와 기존 인권영향평가와 유사 사례로서의 아동정책영향평가(보건복지부)와 부패영향평가(권익위)의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그리고 국내외의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모듈 2와 3은 사전적 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 설계 방안과 측정 도구로서의 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듈 4와 5는 사후적 영향평가로서의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의 제도 설계 방안과 측정도구로서의 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국내외 문헌 및 정책 연구

- ‘인권’, ‘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문헌(단행본, 논문, 정책자료 등) 및 수집
- 국내외 영향평가 평가지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문헌연구정책 분석을 통한 법적·이론적 근거 도출
- 외국의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
- 유사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청렴도측정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
- 인권협약과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정책영향평가 평가 방법 구조화
- 인권실태조사 및 기관별 인권경영문화 측정조사에 기반한 인권노력도(친화도) 평가 방법 구조화

□ 면접조사 및 서면조사

- 해당 내용에 대한 인권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인권정책영향 평가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욕구 파악
- 인권영향평가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경영평가위원 및 국내 전문가 서면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 도입방안 모색
- 인권영향평가 실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정책영향평가 측정 도구 개발
- 인권인식조사, 인권실태조사 실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노력도(친화도) 측정 도구 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관련 업무 유경험자, 행정력을 지닌 내·외부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누락된 내용 또는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함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제3절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사례



##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유형

### 1)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 일반적으로 정책분야에서의 영향평가란 법률, 정책,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수립 및 시행할 때 대상집단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효과를 미리 예측, 분석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함
- 노화준(1986)은 정책영향평가는 정책대안이 대상집단이나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환경의 영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추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될 정책대안들의 결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말함
- 김기곤(2013)은 영향평가를 정책형성 및 집행상의 한 전략으로,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 이영안(2017)은 영향평가를 사전적인 측면에서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의 영향평가는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는 사전적 정책분석(ex-ante policy analysis)의 의미를 담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과 영향평가 결과 이후 이루어지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 감사, 모니터링하는 등의 사후적 정책평가(ex-post evaluation)의 영향평가(review evaluation) 개념으로 나누어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적 정책분석(ex-ante policy analysis)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안을 탐색하고, 각 대안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책분석의 일반적인 목적은 다양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

택하도록 하는 정책의사결정의 합리성의 제고이나, 특별한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 사후적 정책평가(ex-post policy evaluation)는 기존에 실시 중인 정책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의 정책평가의 주요 내용임.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의 방식에 따라 실험, 준실험, 비실험의 평가 방법이 활용되며, 주로 관심을 가지는 정책 현상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행태 및 통계적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관찰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 사전적 영향평가

- 정책학에서의 사전영향평가(ex-ante policy evaluation, or impact assessment)는 정책 결과의 대상, 범위, 크기를 예측하고 사회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활동임
  - 정책의 집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영향평가는 정책 집행으로 기대되는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 분석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정책 집행에 따른 2차적인 또는 부가적인 효과를 사전에 탐색하고 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많은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전적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영향평가지침」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전정비 및 종합적 개선대책

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체계를 말함(「부패영향평가지침」 제2조)

- 개인정보영향평가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함
  -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의 시행 및 시설설치의 경우 발생할 교통장애 및 교통 안전 문제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임
- 위 정책영향평가 중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결과는 법령정보로 등록되며, 소관부처는 관련 영향평가를 관계기관, 즉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평가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소관부처의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개인정보영향평가는 법령안이 아닌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나, 권리주체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는 정책영향평가의 형식과 유사함
  -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필요에 따라 현행 법령,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등을 특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후적 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운영 중인 상황임
- 정책영향평가제도가 기본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영향평가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용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등이 있음
-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은 세출예산사업, 기금사업 및 시행할 계획 및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및 계획 등을 포함함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를 두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책 및 계획을 포함함
- 인권 관련 정책의 사전적 영향평가는 국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는 정책과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자와 집행 담당자에게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인권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사후적 영향평가

- 사후적 영향평가란 정책이나 사업이 집행된 이후 당초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달성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영향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에 피드백 기능으로도 작용하는 활동을 의미함
- 즉, 사후적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를 수행한 정책 혹은 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정책, 사업이 협의 내용을 이행 및 준수하였는지 소통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김경호 외, 2021)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과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서 규정되어있음
  - 사업자의 협의 내용 이행 규정과,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 착공 이후 사업자에게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영향평가는 사전 영향평가에 그치며,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시행 및 집행 중에 있는 법률과 규칙 그리고 그에 근거한 사업 등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음

- 규제영향의 경우 규제의 사전적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규제영향분석이 OECD 회원국에서 의무화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규제영향분석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기존 정책이 그 목적을 효과 및 효율적으로 달성하여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정책을 신설할 유인에 비하여 정책을 완화 및 폐지, 개선할 유인은 크지 않아 사후평가가 적절히 수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책의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정책의 대상 집단이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그 방안을 제시할 때, 해당 소관 부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의 사후평가 방식(예: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인권 관련한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는 인권 관련 추진 체계의 구축 노력과 외부 및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과정에서의 인권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사후적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인식의 개선 및 증진과 관련한 직접 및 간접적인 정책과 사업 시행의 결과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여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과 긍정 및 부정적 결과, 그리고 의도 및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인권 인식과 문화 수준, 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및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인권 인식과 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는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시 환류되어 인권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2.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유사 사례

- 본 연구는 정책영향평가의 사례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을 비교함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은 공공기관의 법령과 자치법규, 규칙 및 사업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며 법령안에 대한 평가와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 사업 및 계획 등에 대한 평가의 대상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특징을 가짐
- 사례 연구의 대상인 정책영향평가는 법률, 규칙, 정책 및 계획의 정책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나 법적 근거를 개별법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 법률 내 조문과 시행령 및 행정규칙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음
  -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은 소관 부처의 주요 정책 사업 중의 하나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비교하여 성별영향평가는 특별법으로 고유의 목적으로 가지고 시행되는 차이를 가짐
  - 성별영향평가는 법률과 계획 및 사업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이며, 규제영향분석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중 신설 및 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협의의 대상을 평가하는 특징을 보임

[표 3] 국내 정책영향평가 제도 비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근거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성별영향평가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평가대상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2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규정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계획 및 사업	개인정보파일	법령 중 신설 및 강화 규제
법령상 평가유형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평가 시기	사전	사전	사전	사전

## 1) 부패영향평가

###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 부패영향평가 의의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적 성격을 가짐
- 기존의 사안별 사후적발 및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부패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어,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함

#### □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내 불필요하게 사용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하고자 함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함
- 법령 입안·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재량을 적정화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및 법령의 예측 가능성 제고함

[표 2]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1)

<p><b>「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b>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li> <li>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li> <li>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 내부규정</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b>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패유발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li> <li>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여부</li> <li>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li> </ul> </li> <li>2. 법령등 준수 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li> <li>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li> <li>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li> </ul> </li> <li>3. 행정절차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li> <li>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li> </ul> </li> <li>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li> </ol> <p>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

[표 5]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2)

<p><b>법제업무 운영규정</b></p> <p>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p> <p>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li> <li>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li> <li>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li> <li>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li> <li>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li> </ol>
--

(2) 부패영향평가의 추진체계

-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안 및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관부처가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제정 및 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나,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법령을 직접 선정하고, 각 기관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평가를 받은 형식을 취함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과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부패영향평가의 평가 및 운영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과 지자체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 경험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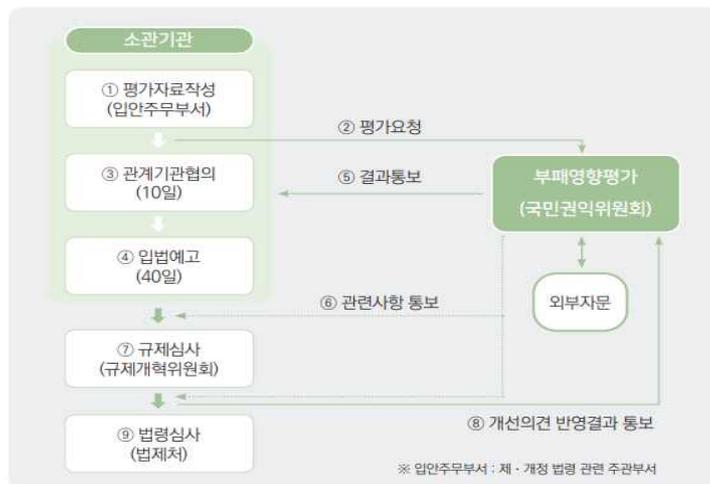
-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평가요청을 받은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등의 직접 및 간접적인 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부패영향평가는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라는 총 4가지의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함
  - 준수의 평가항목은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임
    - 준수부담의 합리성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가 국민, 기업, 단체 등에 부담지우는 비용과 희생을 타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함
    -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정도가 타법 및 유사법령의 그것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은지 그 적정성을 평가함
    - 특혜발생 가능성은 법령 등의 적용이 특정 계층,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집행의 평가항목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임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은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은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재정누수 가능성은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행정절차의 평가항목은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임
    - 접근의 용이성은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공개성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예측 가능성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부패통제의 평가항목은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임

- 이해충돌 가능성은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를 평가함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은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함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은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3) 부패영향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규제적 평가와 자율적 평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제정 및 개정의 법령안의 경우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직제, 국호, 급여, 문서, 차량관리 등 관련법령)을 제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이 되고 있으며, 그 외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 제정 및 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는 법령안의 소관부처 주무부서가 부패영향에 대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권익위는 외부자문 등을 거쳐 평가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 및 협의하는 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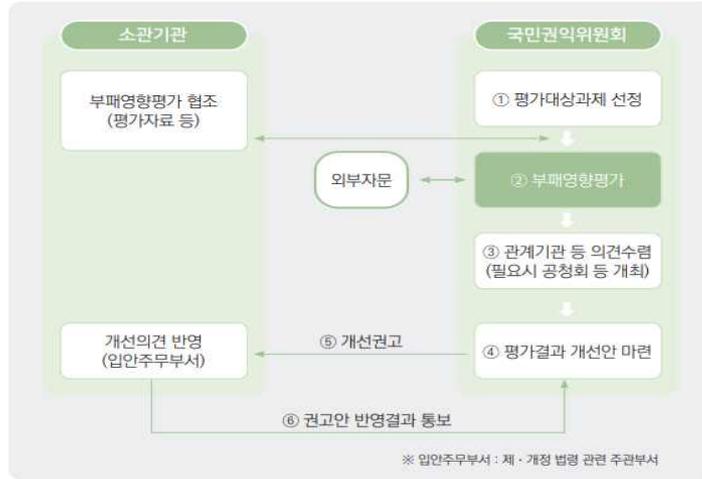
[그림 2]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영향이 높은 법령을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 및 주무부서에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외부자문을 거쳐 평가 및 결과를 통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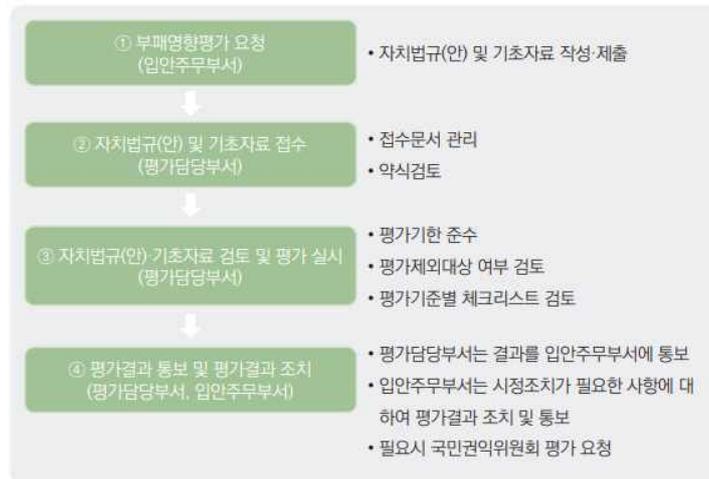
이후 주무부서에 평가결과의 개선을 권고하는 과정을 거침

[그림 3]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며, 입안주무부서가 평가담당부서에 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담당부서가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및 협의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그림 4]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절차



## 2) 성별영향평가

### (1)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 성별영향평가 의의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도입됨<sup>1)</sup>
  -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주체로 활용하고 있음
- '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0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었으며, '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통해 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가 이루어짐. '18년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 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 진행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lawmaking.go.kr>)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 □ 성별영향평가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 □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표 6]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 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성별영향평가대상과 기준

-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령, 계획, 사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등 지방자치단체임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의 4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법령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법령과 자치법규를 그리고 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마지막으로 사업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함
  - 법령의 경우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의 반영 여부,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여부, 성별 균형 및 참여 여부, 그리고 성별 통계를 평가함
    - 법령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다만,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 법령인 경우, 해당 절차는 생략됨
    - 성별영향평가는 i)제·개정 법령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조항이나 표현의 존부, ii)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규정의 존부, iii)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을 균형적인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권장 또는 저해할 가능성 검토, iv)제·개정 법령과 관련하여 별지서식, 실태조사 등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인적 통계 및 실태조사 작성시 성별에 따른 고려 여부를 점검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계획의 경우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할 가능성, 성별에 따른 차이 고려 및 성별 특성 반영 여부,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평가하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 및 중점과제를 구분하여 성별영향을 분석 및 평가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계획 추진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계획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평가대상 계획을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로 평가대상 계획을 선정하고,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부합하는가와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전략 및 중점과제와 관련하여서는 i)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정책수요가 발생하는가와 이를 반영한 사업수립의 필요성, ii)사업 수혜자의 성비의 형평성과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 반영여부를 평가하고, iii)이상의 평가를 토대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짐
  
- 사업의 경우 성별에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과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법령, 예산, 사업 등)을 구분하여 평가함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 해당 평가결과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함(동법 제9조 제2항)
  -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가 이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i)신규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중 ii)일자리관련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 유아 및 초중등 교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함
  - 가는 크게 i)정책환경으로부터 도출되는 성별 특성을 점검 및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ii)이상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법령, 예산, 사업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정부홍보사업의 내용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담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 중인 법령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해당 평가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3) 성별영향평가 절차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검토를 받은 후, 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함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대상 중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평가를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지정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평가를 수행함
    - 성별영향평가의 모든 과정은 GIA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의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 검토의견의 통보, 반영계획 제출, 반영계획 관리,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의 경우)의 단계로 구성됨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여성가족부가 영향평가를 주관함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 수요조사와 일반국민 등 대상 과제발굴 공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대상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분석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반영계획의 제출 및 반영, 그리고 반영계획 관리의 단계를 거침
-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 검토의견 통보
  - (통보주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필요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통보내용)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 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통보기한)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반영계획 제출

- (제출대상)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제출기한)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여성가족부에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는 반영계획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반영계획 관리

- (관리절차)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입력
- (관리방법)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법령안이 제·개정 되었는지를 지속 관리

### 3) 개인정보영향평가

#### (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개념

- 개인정보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의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혹은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의미함. 일반적인 개인정보파일은 수기문서자료도 포함하지만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은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형태에만 한정함. 단, 종이로 기록된 개인정보 문서가 PDF 등 전자적인 매체로 변형될 경우 해당 PFD파일은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2)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 (법적 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취급 및 처리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본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따라 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적용대상) 영향평가 의무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과 해당 처리시스템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함

[표 7]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법적근거

<p>「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gt;</p>
---

-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 개인정보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영향평가 시행 시점과 적용 개인정보주체 수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8]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시점	대상
구축·운용 시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 단, 평가 시행 기점으로 영향평가대상은 아니나 가까운 시점(1년 이내)에 정보주체의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법령상 규정된 대상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

보를 수집·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영향평가대상 여부 확인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포털(<https://privacy.go.kr/>)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가능

[표 9]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평가대상 법적근거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제2조(정의)</p> <p>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p> <p>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p> <p>제35조(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lt;개정 2016. 9.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li><li>2.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li><li>3.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li><li>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li></ol>
---

### (3) 개인정보영향평가 시기 및 체계

□ (평가시점)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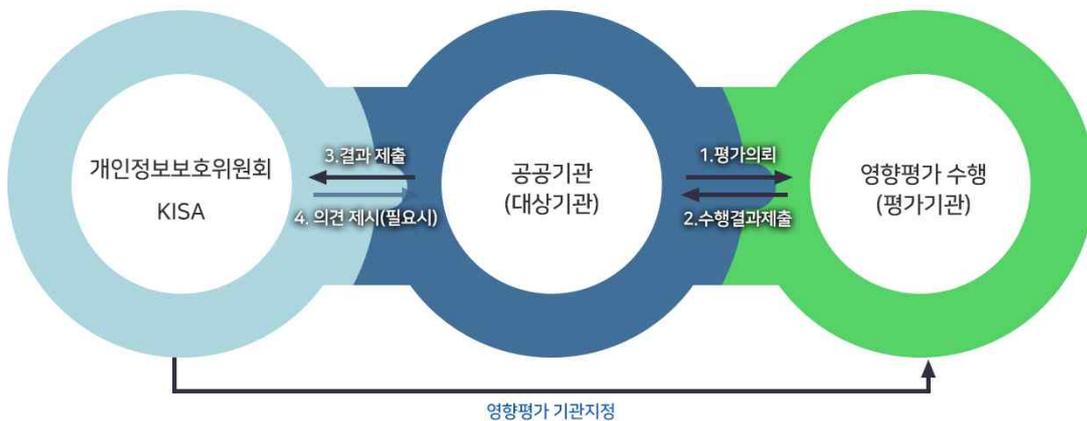
-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대상 시스템의 설계 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또한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해야 함(「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의 경우, 수집·이용 및 관리상에 증대한 침해위험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수행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단,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함
  - 영향평가기관은 신규 지정 이후 3년간 기관 지정을 받으며, 2020년 4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2021년 5개 기관, 2022년 5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14개 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민간기업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평가체계) 개인정보영향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
  -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기관은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점검 확인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함

(4)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절차

- (평가절차) 영향평가 사업은 사전준비단계, 영향평가 수행단계, 이행단계 순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됨

[그림 5] 개인정보영향평가 처리 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 영향평가 사전준비단계: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을 선정함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단계에서는 목표, 개요, 수행주체, 참고자료, 산출물을 토대로 필요성을 평가하며 각 요소별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사전평가 수행은 선택사항으로 대상기관은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영향평가 자율수행 프로그램 (privacy.go.kr)을 통해 맞보기 기능을 활용 가능하며 이는 대상시스템 및 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발주 시 평가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계획서 작성) 영향평가 사전준비 단계로 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영향평가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에 포함됨
  - (영향평가기관 선정)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우선 대상기관<sup>2)</sup>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발주 후 영향평가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기반으로 제안서를 작성함. 대상기관은 영향평가기관 중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기관을 선정하되 평가기관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 경고,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선정해야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표 10] 개인정보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요소

목표	구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 필요성 여부 판단
개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이용·연계·제공 또는 처리절차상 변경 등으로 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영 제35조에 근거하여 판단
수행 주체	대상사업 주관 부서
참고 자료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RFP) 등
산출물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서 (영 제35조에 근거하여 작성)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p16

- 영향평가 수행단계: 사전준비단계에서 선정된 평가기관이 평가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영향평가서를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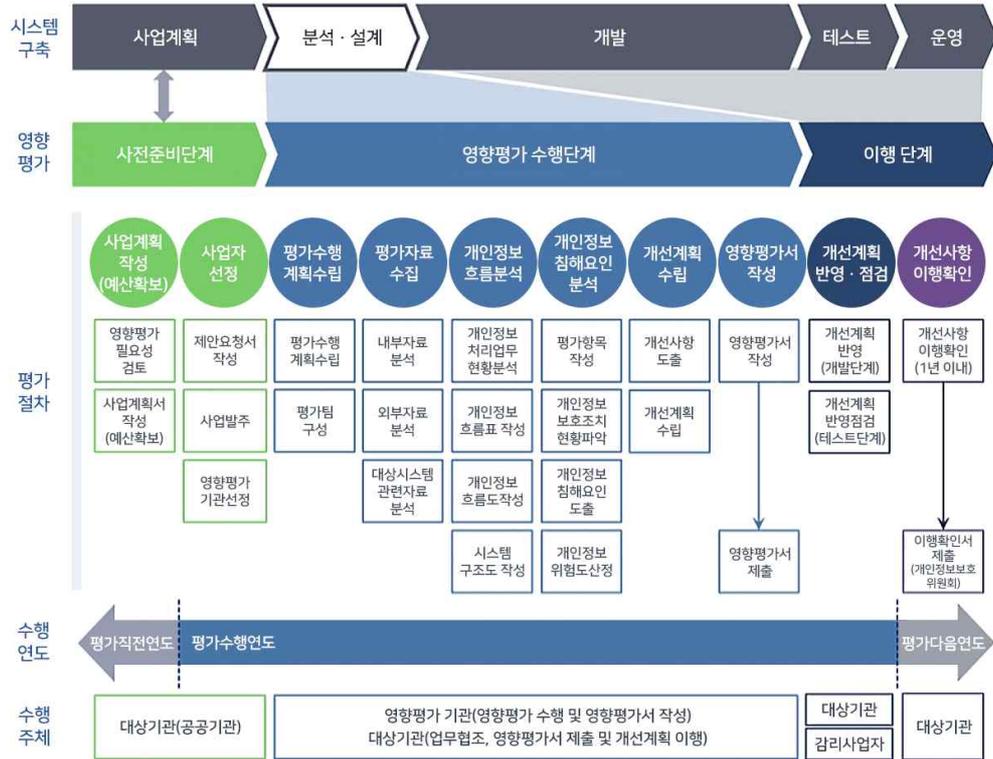
2)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팀이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과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임
  - 수행계획서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이 포함됨
  - 수행계획서 작성 단계는 영향평가팀 구성방안<sup>3)</sup>협의, 역할정의,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이 포함됨
  - 계획서가 작성되면 영향평가팀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에게 수행계획서를 보고하고 영향평가대상사업 최종책임자와 영향평가 수행지시 후 영향평가를 실시함
- (평가자료수집) 영향평가팀이 효율적인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및 개인정보 정책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규 및 상급기관의 지침과 해당기관의 내부규정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분석 대상자료는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 정책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①내부 정책자료, ②외부 정책자료 ③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등으로 구분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영향평가팀이 대상 사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내의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는 단계로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4단계로 이루어짐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영향평가팀이 앞서 분석한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도출하는 단계로 평가항목구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4단계로 이루어짐
-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팀이 대상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앞의 단계에서 도출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혹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영향평가서 작성) 영향평가팀과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과 산출물을 정리하는 단계로 위험요소, 개선계획 등의 최종산출물은 물론 추진경과, 중간산출물을 취합하는 과정임. 영향평가팀은 작성 완료된 영향평가서를 대상기관의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함
  - 잔존하는 위험이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한 토론을 진행하여 개인정보보호 목표수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함

3) ①평가 시 위탁 개발·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실제업무담당자와 사업담당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업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참여 ②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사업은 산하기관 등 외부기관이 운영·관리할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 ③외부 정보시스템 구축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 추진 시 PM(Project Master) 혹은 PL(Part Leader) 등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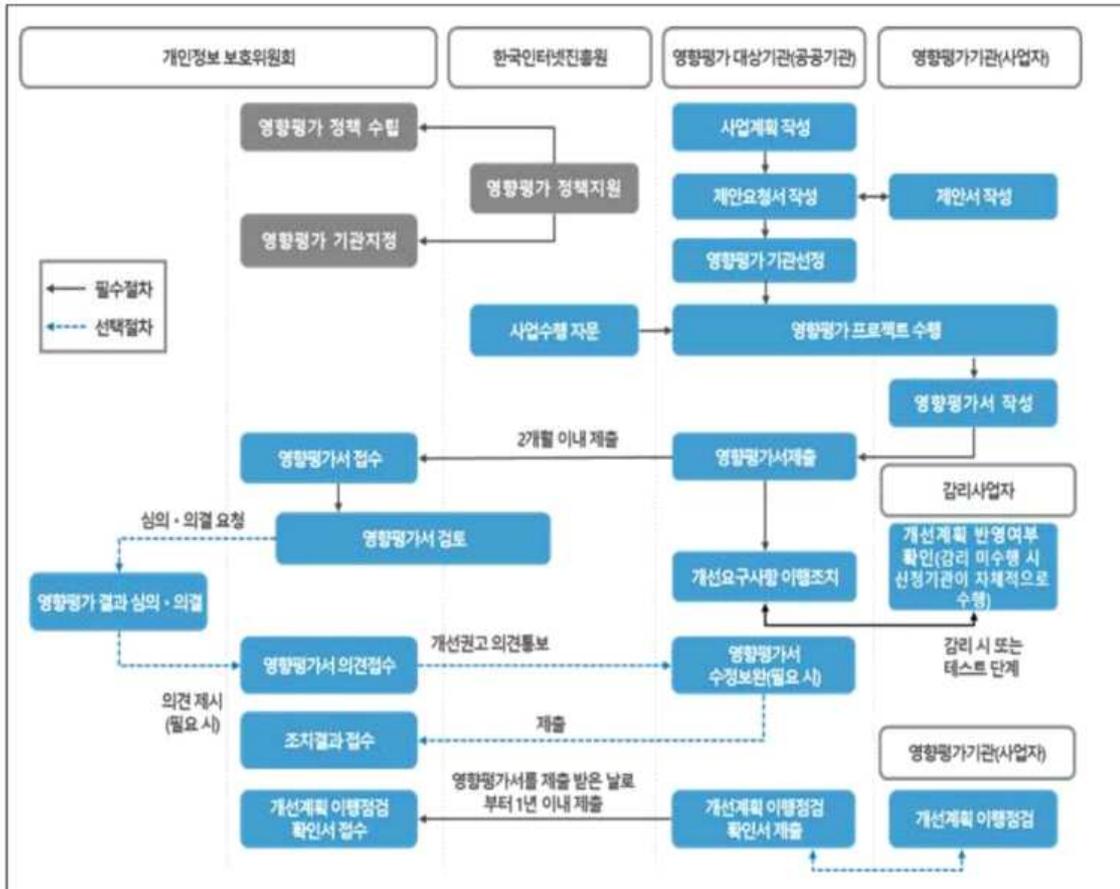
- 영향평가 이행단계: 개선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함
  - (이행점검) 사후적 영향평가단계에 해당하며 사업주관부서, 평가기관 및 감리사업자가 수행주체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는 과정
  - 개인정보파일 구축 및 운영 전에 개선사항 반영여부를 점검함. 이때 대상기관은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야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함.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시스템 사전 테스트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반영여부를 확인함
  - 개선사항 이행 확인 시기는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 현황을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함(「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4조)
    - 평가기관은 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후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https://intra.privacy.go.kr>)를 통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도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5]과 [그림 6]과 같음

[그림 6] 개인정보영향평가 처리 흐름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p15

[그림 7]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절차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p13

## 4)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의의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담당자가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혹은 비규제 대안으로 인하여 정책 대상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전에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sup>4)</sup>
- 규제영향분석이 정책 결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여 최선의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인 바, 사전적 영향평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국무조정실,2021)

###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국무조정실,2021)은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에 대해 아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도록 함
-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
-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

4)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에 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을 강화

- 또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국무조정실,2021)은 좋은 규제의 조건으로 목표적합성,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을 제시하여 규제자가 지향해야하는 바를 명시하고 있음
  - (목표적합성) 국가전체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규제가 도입된 구체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여야 함
  - (투명성) 규제 법규의 신설, 강화, 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실시와 그 반영결과 명시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는 공개하여야 함
  - (비례성)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규제로 인한 편익이 커야 함
  - (책임성) 규제자는 규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져야 함

### (3)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동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동법 제7조2항)하고 있음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표 11]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p><b>「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개정]</b></p> <p>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5. 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li><li>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li><li>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li><li>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li><li>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li><li>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li><li>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li><li>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li><li>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li></ol>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개정]</b></p> <p>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삭제 &lt;2006. 3. 31.&gt;</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lt;신설 2006. 3. 31.&gt;</p> <p>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6. 3. 31.&gt;</p> <p>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 3. 31.&gt;</p>
--

#### (4)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는 기본적으로 규제영향분석→부처 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됨
  - 시행령 제6조 4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실명제를 도입하여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국·과장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위원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자체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에서 작성한 영향분석서를 기반으로 해당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신설·강화된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동법 제14조 제1항)
  -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sup>5)</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동법 제14조 제2항)
  
- 소관부처에서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시 규제조정실에 신설·강화된 규제여부 확인의뢰가 선행됨. 이때 규제심사대상인 경우 심사가 진행되며 규제심사비 대상인 경우 법제처심사가 진행됨
  
- 규제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sup>6)</sup>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관의 장애에 통보하여야함

[표 12] 규제심사 흐름도-규제심사대상인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조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표준/간이)을 규제조정실과 협의
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통해 작성하고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실한 작성 등 부적절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려될 수 있음
입법(행정) 예고 (20~60일)	소관부처	- 제·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행정)예고(행정 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 WTO TBT 통보대상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예고해야하므로 기술규제가 있는 경우 자체 검토
비용검증 및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20일~60일,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규제연구 센터 (1차 검증)	-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검증 ※ 비용·편익 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2차검증 대상 확정
	비용분석 위원회 (2차 검증)	- ①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중 연간균등순비용 ±10억원 이상인 규제와 ②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중 비용상 중요규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및 제2호)가 대상으로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종결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지체없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되면 심사종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안은 행정예고(20일간) 및 법제처 검토를 규개위예비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규제심사이후 법령안 내용이 변경시 규제심사대상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실과 재협의

주: 국무조정실, 202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7

[표 13] 규제심사 흐름도-규제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를 규제조정실과 협의
규제정보화 시스템 입력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 비대상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고 규제의 폐지·완화로 심사 비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확인증 발급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입법예고 종료일 다음날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 가능 ※ 소관부처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규제조정실에 공유

주: 국무조정실, 202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8

(5) 규제영향분석 평가체제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설·강화(규제 기한 연장 포함)하는 모든 행정규제임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1항과 2항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함
  - 규제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와 쟁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와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규제영향분석서 유형

작성유형	기준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관련 규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규제

주: 국무조정실, 202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16

- (평가지표) 개정 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8개의 요소와 20개의 항을 규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 시 평가요소가 법령에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규제영향분석서에 공포방법을 정함
  -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정한 구성요소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7)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②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③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④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⑤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⑥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⑦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⑧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등임

[표 15] 규제영향분석서의 세부항목

구성요소	세부항목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규제의 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향후 평가계획, 종합결론

주: 국무조정실, 202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17-18 재구성

- (검토사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표 16]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지표

착안사항	점검 내용
문제 정의의 정확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충분한 현황 분석과 이를 통한 문제점의 본질과 규모, 발생이유를 분석·제시하였는가? - 모든 사용된 자료는 그 근거(출처)를 제시하였는가?
정부개입의 정당성	-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기존규제의 충실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는가? - 규제이외에 교육 및 홍보, 정부지원 등의 비규제적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규제목표의 명확성	- 규제를 신설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가 측정가능하게 제시되었는가?
규제대안의 다양성	-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였는가? - 규제의 강도, 규제방식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우선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활용여지 확대 • 투입기준규제보다는 성과기준규제 우선 •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기준 및 비례원칙 근거</li> <li>•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내·외 기업간 차별발생 방지</li> </ul>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충실히 실시하였는가?</li> <li>•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li> <li>•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받는 편익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추계하였는가?</li> <li>- 제시된 규제대안들의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충분히 하였는가?</li> </ul>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안의 정량적·정성적 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였는가?</li> <li>-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는가?</li> <li>-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li> <li>- 불필요하게 피규제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구비서류 등을 간소화 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였는가?</li> </ul>
이해관계자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규제신설 초기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li> <li>-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여부와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li> </ul>
집행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확보되어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가?</li> <li>- 피규제자가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현실적으로 가능한가?</li> <li>• 대안이 공정한 경쟁과 경제성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li> <li>•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시기·방법 등을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는가?</li> </ul>

주: 국무조정실, 202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18-19

## (6) 사후적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 현행 규제영향평가는 사전적 영향평가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규제영향평가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제시되고 있음
- 현재 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변화한 환경에서 본래 의도한 규제 목적의 달성정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 일몰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01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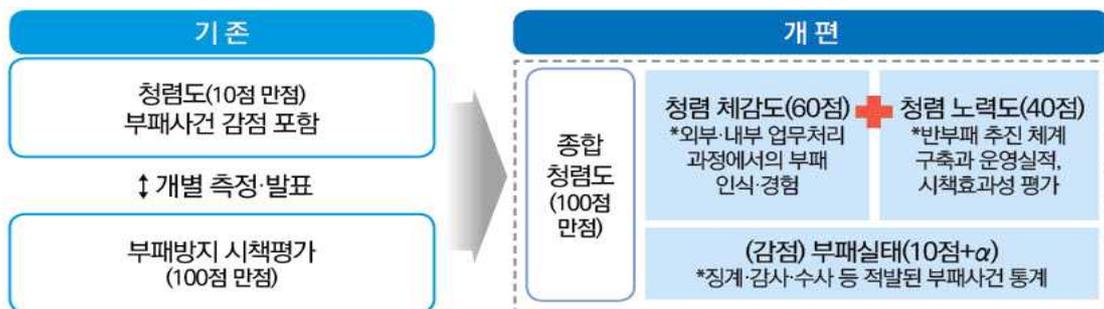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의 제정에 따라 규제비용관리제가 도입되어 기존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재검토의 수단으로 규제사 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됨

## 5) 종합청렴도 평가

### (1) 종합청렴도 평가의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운영하였고 2022년부터는 일원적 종합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21년까지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각각의 평가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청렴도의 경우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하는 부패 인식과 경험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을 평가하였음
- 2022년부터는 기존 청렴도를 청렴 체감도로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청렴 노력도로 대체하여 체감 및 노력도를 종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종합청렴도 평가의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전체와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중 일부, 그리고 시·도경찰청 등임
- 평가대상의 유형은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을 구분한 2개 유형,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과 기초 중 시·군·구를 구분한 4개 유형, 시도교육청 1개 유형, 그리고 그 외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 준정부기관, 중점평가기관(공직유관단체),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의 5개 유형, 국공립대, 공공의료, 시·도경찰청의 3개 유형 등 총 15개 유형으로 구분됨

[그림 8] 청렴도 평가 모형



##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실태(부패사건 감점)로 구성되며, 청렴체감도는 전체 중 60%의 비중을 그리고 청렴노력도는 40%의 비중을 차지함
  
- 청렴체감도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내부 이해관계자는 소속 기관 공직자를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 및 공직자 등임
  - 불공정 직무수행과 공직자 권한남용, 그리고 부패경험의 3개 유형, 8개 항목에 대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하며, 온라인 및 전화 설문조사를 조사 방법으로 활용함
  -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업무(외부체감도)는 평가대상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및 공직자의 업무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함
  -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는 평가대상 기관의 소속직원이 기관의 내부 운영과정과 조직문화에 대하여 인식 및 경험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법령 및 규정 위반, 권한 남용, 청렴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조사 항목으로 함
  
- 청렴노력도는 평가대상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체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 내용으로 하며, 기관 제출 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시책효과성에 대한 내부구성원 대상 설문평가, 그리고 기존 실적 등을 평가 방법으로 함
  - 청렴노력도는 정량 및 정성평가를 병행하며, 청렴정책추진체계는 4개 지표, 청렴정책추진실적(+ 가점 지표)은 8(+ 1)개 지표, 반부패 시책 효과성평가는 1개 지표이며 각 지표별로 정량, 정성,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
    - 평가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지표가 상이한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14개 지표를 적용하며, 기초 지자체, 중소형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 등은 필수 지표 8개를 적용함
    - 청렴노력도의 평가는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 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음
  - 청렴노력도의 경우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 청렴컨설팅 등의 추진 노력, 적극행정 및 청렴포털 신고창구 운영 등의 항목을 가점지표로 활용함
    - 청렴노력도의 필수 지표는 청렴정책 추진 체계 중 반부패 추진계획, 기관장 및 고위직의 노력,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의 구축의 3개 지표, 청렴정책 추진실적 중 반부패 추

진계획 이행, 반부패 및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그리고 기타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가점 지표의 4개 지표, 마지막으로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의 1개 지표임

### (3)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의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등급화하여 외부에 공개 발표하며, 최종 등급은 기관이 속한 유형별로 각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산출함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종합청렴도 평가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 1등급과 최저 5등급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 평가대상 기관에는 자세한 평가 결과 및 종합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6)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사례 조사한 국내 정책영향평가는 대부분 사전적 정책영향평가의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정책(법률 및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시행 및 집행 중인 정책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개인정보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은 제정 및 개정된 법률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 법률안과 현행 법률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짐
- 영향평가의 평가기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와 청렴도평가는 평가의 소관부처가 평가를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다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은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차이를 보임
  - 부패영향평가는 권익위가 평가를 수행하며 외부 자문기구를 활용하는 형식을 취하며, 소관부처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며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개인정보영향평가는 민간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실시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공공의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소관부처 및 주무부서인 여성가족

## 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행함

- 영향평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은 사전적 영향평가만을 수행하며, 청렴도평가는 사후적 영향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비교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이행점검을 절차로 정하고 있어 사전적 영향평가 중심이나, 사후적 영향평가를 병행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도 현행 법령,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권고를 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평가체계의 특징을 일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규제영향과 성별영향의 경우 평가대상 과제를 공모 및 평가주체의 판단으로 선정하여, 관련 소관 부처 및 주무 부서에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주체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후적 정책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함
  
- 영향평가의 체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영향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영향평가가 보다 자율적 또는 분권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임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가 직접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의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같은 분권적 특성을 보임

### 3.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사례

####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인권영향평가제도(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는 정부나 조직 기업이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의 계획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강현수, 2013; 최유, 2015)
- 인권영향평가는 1970년대 UN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국제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 평가 제도의 권고로 시작됨
  - 2005년 UN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로 임명된 존 러기(John Ruggie)는 2008년 「보호, 존중, 구제 :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는 기업과 인권 간의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 최초의 공식문서임
-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 UN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안」을 제출하였고, UN 인권이사회는 이를 채택하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적용과 관리에 관한 평가기준·평가지침·평가가이드라인들을 개발 및 제공하였음(김영주, 2020)
  
-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음
  - 하나는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개발 및 제공한 기업의 인권경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었음
  -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촉진책의 흐름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인권정책의 흐름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여기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인권정책의 핵심적 절차이자 도구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김영주, 2020)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인권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인권을 고려한 정책결정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되었으며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영향분

석, 부패영향평가 등의 영향평가와 유사한 종류의 영향평가제도로 도입되었음(최유, 2015)

[그림 9]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발전 과정



출처:김영주(2020)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과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공공부문 및 국가단위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인권영향평가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단위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1년 이전에는 인권의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에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2006년에는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와 함께 인권의식이 조사되었음(정진성, 2011)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조사는 2011년 국민인권의식조사가 시작이며, 이 조사는 인권에 대한 인권지식, 인권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쟁점, 인권행동으로 다각적인 측면이 포함된 조사였음
  - 그 후에 2011년 조사내용을 계승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가 승인통계로 지정된 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sup>8)</sup>

8)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인권에 대한 의식,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 대응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인지 및 지식 수준을 측정, 인권 상황 평가는 개인 및 사회 수준의 인권 존중, 인권취약 요인 및 상황, 인권의 존중도를 측정, 인권침해 및 차별은 실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을 측정하며, 정책 대응은 인권교육, 인권옹호활동

- 인권정책의 또 다른 흐름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논의임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인권정책, 인권행정, 인권 제도화 등을 통해서 지방행정 내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음
  
-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정부의 정책 과정(결정과 집행)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수단이나 절차로,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의 세부 구성 요소로서의 사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인권경영의 주요 단계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을 구분하여 인권영향평가가 평가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 및 형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공공기관이 실제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기관 내 인권경영의 미흡한 부분을 탐색 및 확인하는 현황 진단적 성격을 가지며, 평가 분야의 확대 및 문항의 세분화를 방향으로 고도화된 체크리스트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을 주제어로 하여,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행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것 (assessing human rights impact)과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로 구분됨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18은 “인권 위협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그리고/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체계적 또는 표준화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특정한 도구와 관계 없이 인권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의 규모, 인권영향의 위험도,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서 평가의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 인권영향평가가 정의하는 ‘인권(human rights)’은 국내외의 인권 관련 규범을 반영하며, 최소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포함함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차별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선주민, 소수자(민족, 종족, 종교, 언어), 농민에 대한 권리 선언 및 국제 협약이 있음. 특정 행위에 대한 권리 선언 및 협약도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종차별, 강제실종, 고민과 비인도적 차별 및 대우의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있음
  
- 인권영향평가에서의 ‘영향(impact)’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권리 주체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함. 평가대상 기관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이 다른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규제영향평가와 평가의 특정 항목으로 중소기업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등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인권영향평가에서의 ‘평가(assessment)’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제활동을 의미하며, 평가의 대상과 목적(및 시기)에 따라서 유형의 구분이 가능함
  -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관 활동의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관 평가와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평가의 2개 유형이 구분됨
  - 평가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관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적 평가와 기관활동이 종료 또는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사후적 평가로 구분됨
  
-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서의 인권 영향과 주요 사업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와 함께 있는 형태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입법의

인권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임

-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정책영향평가와 달리 법이나 시행령 단위에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임
    - 지자체의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시 인권침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경찰청과 국방부 및 군 등에서는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각각 경찰인권보호규칙과 군 인권업무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기도 함
    - 경찰청의 인권영향평가는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법률 유보, 비례 및 평등,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등에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는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안을 대상으로 하며, 상위법령(인권관련 국제조약,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위배 여부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평가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표 17]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개념

연구자	개념
세계은행과 노르딕 신탁 기금(2013)	정책, 법령, 프로그램, 사업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들을 확인하고 측정하며, 검토하기 위한 도구
덴마크 인권 연구소(2016)	기업의 맥락에서 사업 프로젝트나 활동들이 노동자와 커뮤니티 구성원과 같이 이해당사자들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확인, 이해, 평가하기 위한 과정
강현수(2012)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총칭
강현수(2013)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김기곤(2013)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

이영안 (20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이준일 외 (2018)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 및 그러한 평가의 결과
이충은·노진석 (20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법령·제도, 정책,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 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광주광역시 (2019)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사전 조치로서 정책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높여주는 제도적 장치
유병선·김덕진 (2019)	인권을 핵심의제로 하는 영향평가로 공공정책 및 입법,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사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일종의 정책도구
이중섭 외 (2019)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사전적 의미로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출처: 김영주(2020) 재편집

##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공공기관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은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경영(사업) 실행·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4단계로 구분됨
- 2022년 9월 기준, 인권영향평가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한 국가 공공기관은 대한체육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식진흥원의 8개 기관임
  -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체제의 운영의 한 요소로 정의되며,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추진체계(인권경영 현장, 인권경영 기본계획, 인권경영 전담조직, 인권경영 책임관 등)의 구축 과정의 하나로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점검 시책으로 이해되고 있음
- 인권경영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시작을 의미

- 인권경영 체계는 크게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기업) 내 각부서에 확산, 기관(기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2단계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함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됨
-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기업)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

#### ○ 3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공개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한 인권현황과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조치를 기관(기업) 경영 및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기관(기업)의 인권보호의무와 인권준중 책임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서 경영진의 지원과 체계적인 실행 및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함
- 인권경영 실행 등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홍보의 효과와 함께 책임성을 높이는 의미를 가짐

#### ○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 구제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말함
- 구제 방식은 크게 사법제도를 이용한 방식과 비사법적 구제, 그리고 기관(기업) 내부 절차와 외부 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비사법적 구제제도는 기관(기업) 내부의 구제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등 권리 구제기구를 말함
- 구제조치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2)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도입된 인권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8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함
  - [광역 지자체] 인권조례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광역 지자체는 서울시, 광주시, 충청도, 전남도 4곳(23.5%)이었음
    - 인권영향평가 시행은 지자체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기준 실제로 실시된 곳은 광주시 뿐 이었음
  - [기초 지자체] 지자체의 자치법규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조례 내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기초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의무), 은평구(의무), 인천시 미추홀구(의무), 광주시 북구(재량), 동구(재량), 광산구(재량), 경기도 광명시(의무), 수원시(의무), 충청도 아산시(센터 업무), 전남도 화순군(재량) 등 10곳이었음
    - 이는 전체 기초 지자체 226개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곳은 가장 선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 서울시 성북구를 비롯하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4곳에 지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조사 참여 기관 중 25% 수준에 불과하였음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매뉴얼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임에도 공공기관들은 여러 이유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꺼리고 있는 상황임
  -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이 경영평가의 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 전담 부서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도 발견되고 있음

### 3) 광역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 □ 인권영향평가의 법적근거 및 운영현황

- 2022년을 8월 기준으로 전체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인권기본조례에 인권영향평가를 명문화한 지자체는 9곳(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이며, 강원도는 2022년 8월 8일 기준 인권영향평가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임
- 한편, 2022년 현재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정례적 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임(서울, 광주,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제주)
- 2022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기준, 인권영향평가를 자치법규의 조문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별도 집계)는 39개이며, 이 중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이외에도 학생과 장애인을 특화한 인권영향평가를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 9개이며, 광주, 서울, 충청남도의 3개 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4개시(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하남시), 경상남도 2개(김해시, 진주시), 전라남도 1개군(화순군), 서울특별시 9개구(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2개구(미추홀구, 연수구), 광주광역시 3개구(광산구, 남구, 동구), 부산광역시 3개구(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임

[표 18]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현황

광역자치단체	인권관련조례	인권영향평가 규정 유무 (도입시기)	인권영향평가 운영여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2016. 9. 29)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 (2019. 1. 1)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9. 1. 7)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2012. 1. 1)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	×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 (2020. 12. 29)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21. 7. 14)	○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22. 8. 8 개정안 발의)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 (2018. 10. 1)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20. 7. 13)	○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	○ (2015. 1. 2)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경상남도	인권보장조례	○ (2021. 7. 8)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20. 12. 31)	○

주: 김태명 외(2021)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9]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서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경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영향평가관련 조례안 마련 예정 제00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광주	<p>「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2017.7.1. 신설)</p> <p>② 인권영향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7.1.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규칙</li> <li>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 또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개정 2020.1.1.)</li> <li>3.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의회장이 의뢰한 시책 등 (신설 2020.1.1.)</li> </ol>
울산	<p>「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충남	<p>「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인권영향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p>
강원	<p>「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전남	<p>「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6조(인권영향평가) 도지사는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전북	<p>「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본조신설 2020.7.13.]</p>
제주	<p>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 제20조(인권영향평가)</p> <p>①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 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규칙 또는 정책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기준으로한다.</p> <p>제20조의2(평가절차등)</p>

①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 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

(2) 서울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정책사업분야)

-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9년도 시정 최초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 도모함
  - 2020년도 자치법규 개정권고 및 인권건축 인증제 도입방안, 정책사업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발함
  - 2021년도 정책/사업분야(재난지침) 인권영향평가 및 건축물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함
  
- 2021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정책·사업분야
  - 서울시는 재난 관련 자치법규 55개에 대해 사후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함
  - 대상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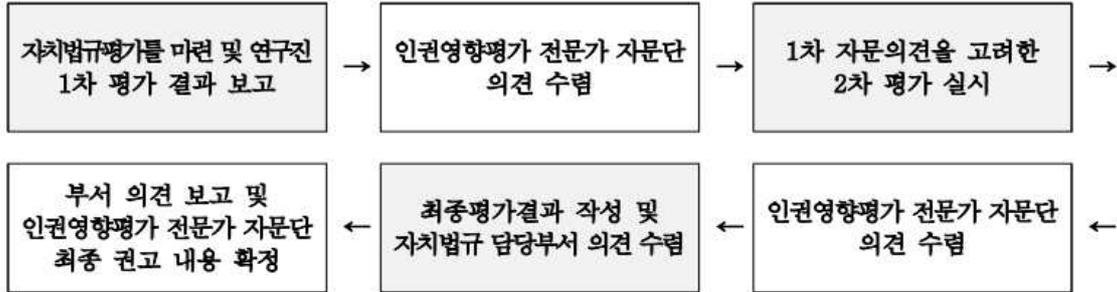
[표 20] 재난 관련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 범위

재난분야	조례명
재난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li> <li>▪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li> <li>▪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li> <li>▪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li> <li>▪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li> <li>▪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li> <li>▪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li> <li>▪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li> <li>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li> <li>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li> </ul>	
자연재난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li> </ul>	
	가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li> </ul>	
	산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li> </ul>	
	한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li> </ul>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li> <li>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li> </ul>	
	대규모 수질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li> <li>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li> </ul>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li> </ul>	
사회재난	다중밀집 대형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li> <li>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li> <li>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li> </ul>	
	공연장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li> </ul>	
	가축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li> </ul>	
	정보통신 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li> </ul>	
	원전안전(방사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초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li> <li>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li> </ul>	
	주요 상황	도로터널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li> </ul>
		도시가스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지반침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li> </ul>	
버스파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li> </ul>	

□ 재난 관련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 절차

[그림 10] 재난 관련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의 기준 선정 절차



출처: 2021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정책·사업분야

□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년 자치법규 55개(조례 46, 규칙8, 규정1)에 대한 서울시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평가하였음
- 평가영역은 2개의 인권영역(시민, 제도)에서 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표 21] 재난관련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구분	내용
시민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가한 경우
	2)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미비한 경우
	3)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
제도	4) 개편된 서울시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설정된 경우

출처: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대학교수 등 참여하여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협의를 통하여 결과 도출
- 평가결과 총 7개 조례 10개 조항의 보완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권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2]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평가항목	주요개정 내용	조항수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가한 경우	시민의 책무 → 시민의 의무	4
2)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미비한 경우	시민의 알권리 및 교육권 강화 규정	3
3)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2
4) 개편된 서울시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설정된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부서 수정	1

(3)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자치법규)

□ 경기도는 자치법규 입법 및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실행·환류 과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예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과 도민의 인권역량 증진하고자 함

- 이에 경기도는 현행 자치법규 사전인권영향평가를 연평균 213건, 제·개정 자치법규 사전인권영향평가, 주요 정책·사업 중 3개 사업 선정하여 단계별 평가를 진행함

□ 평가방법

- 평가단은 대상사업별 사업 담당자 + 전문가 + 도민(인권모니터단)으로 10명 내외 구성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은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7명 구성

[표 23]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평가방법

평가분야	단계	평가주체	평가방식
현행 자치법규	사후 평가	(1차) 영향평가담당자 (2차) 자문단	현행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요소 전수 점검 전문가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사전 평가	입안담당자	자치법규 입법절차 시 점검표 작성 기반 자 체평가 + 전문가 평가
주요 정책·사업	사전 평가	정책·사업 담당자	정책·사업 추진계획의 인권침해요소 사전 검 토·점검
	과정 평가	평가단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여건 등 현장점검
	사후 평가	평가단 인권위원회	사업 완료 이후 사전·과정평가에서 제시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후점검

출처: 2021년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계획(안)

- 현행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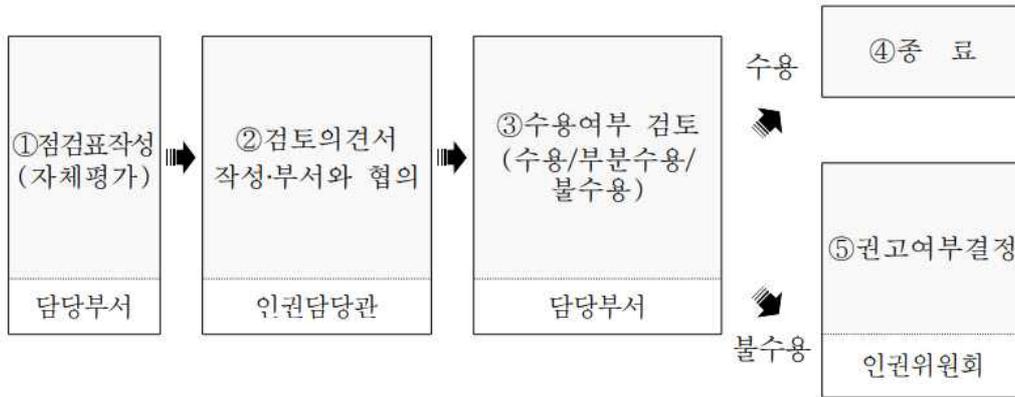
[그림 11] 경기도 현행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출처: 2021년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계획(안)

-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평가절차

[그림 12] 경기도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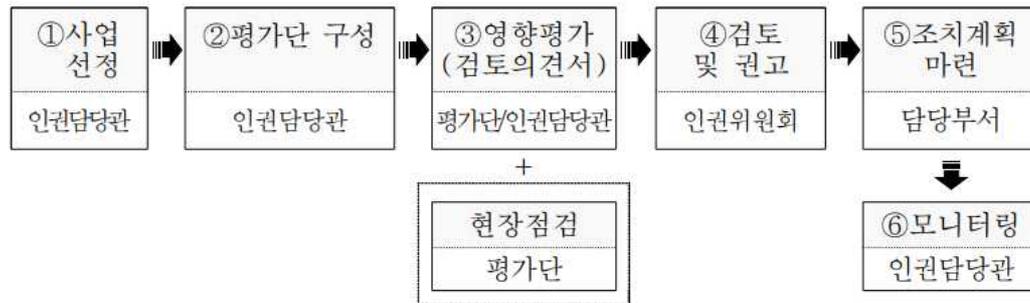
- ① 법제심사 전, 해당부서에서 자체 점검표 작성 후 인권담당관실에 송부  
\* 점검표에 의거 해당사항 체크 및 의견 제출
- ② 인권담당관 검토의견서 작성, 담당부서와 협의 후 부서 통보(원안동의 / 개선권고)  
\* 필요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의견 자문
- ③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의견 수용여부 결정(부서 의견서 작성)
- ④ 의견 <수용 시> 인권영향평가 절차 종료
- ⑤ 의견 <불수용 시> 경기도 인권위원회 안건 상정(원안동의 / 개선권고)

출처: 2021년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계획(안)

□ 주요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 평가절차

[그림 13] 경기도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절차



- ① 도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선정
- ② 평가단 구성 : 10명 이내(사업 담당자 + 전문가 + 도민(인권모니터단))
- ③ 평가단 논의 및 의견서 작성 (전문가 검토의견 및 컨설팅 첨부)
  - \* 초안 작성(인권담당관) → 평가단 논의·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2~3회)
  - \* 필요시,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 인터뷰 실시
- ④ 인권위원회 최종 검토(권고여부 등 판단)
- ⑤ 검토의견에 따른 담당부서 조치계획 등 전달
- ⑥ 담당부서 조치계획 또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관련 모니터링

출처: 2021년 경기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추진계획(안)

(4) 광주시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투표소 인권모니터링)

□ 광주시는 주요정책이나 제도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행정의 실질적 인권화 도모함

○ 광주인권헌장(5장 18조문)의 정신과 가치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인 조례·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강구

- 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3장 사회적 약자와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4장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 인권영향평가 도입목적

- 조례규칙의 제개정과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행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나 사회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민의 인권 보호·증진

□ 2022년 광주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투표소 인권모니터링

- 광주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민인권실천단’과 함께 투표소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과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인권증진을 도모코자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및 이용 등과관련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인권취약 계층의 참정권 증진·보장 도모하고,
  - 인권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대상이자 주체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기반 행정 구현함

○ 추진절차

[그림 14] 광주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



출처: 광주광역시(2017) 사람중심, 평등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5팀 25명(자치구별 1팀)
- 주요역할: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점검 및 결과표 작성

○ 점검대상 투표소 선정

- 선정기준: 이동약자 등의 참정권 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투표소
-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층, 2층 이상에 위치한 투표소
- 선거인이 잘 알지 못하거나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취약한 투표소
- 제20대 대선 투표소 모니터링 후 市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한 투표소 등

○ 점검항목

[그림 15] 광주시 투표소 인권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비 고
투 표 소 현 황	투표소 설치 건물명칭		
	투표소 설치 위치	<input type="checkbox"/> 지상 / 층 <input type="checkbox"/> 지하 / 층	
투 표 소 구 입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설 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투표소 입구 경사로 너비(폭)	cm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투 표 소 건 물 내	출입문 너비(폭)	cm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출입문 형식	<input type="checkbox"/> 여닫이 <input type="checkbox"/> 미닫이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출입문 재질	<input type="checkbox"/> 유리문 <input type="checkbox"/> 나무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승강기 설치	<input type="checkbox"/> 설 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이동통로 너비(폭)	cm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장애인 화장실 설치	<input type="checkbox"/> 설 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 위치	<input type="checkbox"/> 지상 / 층 <input type="checkbox"/> 지하 / 층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어려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시각장애인용 기표용구 비치	<input type="checkbox"/> 비 치 <input type="checkbox"/> 미비치	
	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	<input type="checkbox"/> 배 치 <input type="checkbox"/> 미배치	
기 타 사 항			

## (5) 충청남도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 충청남도는 2019년에 충남도 자치법규와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자치법규와 시책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규정과 공공건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충청남도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은 법제심사 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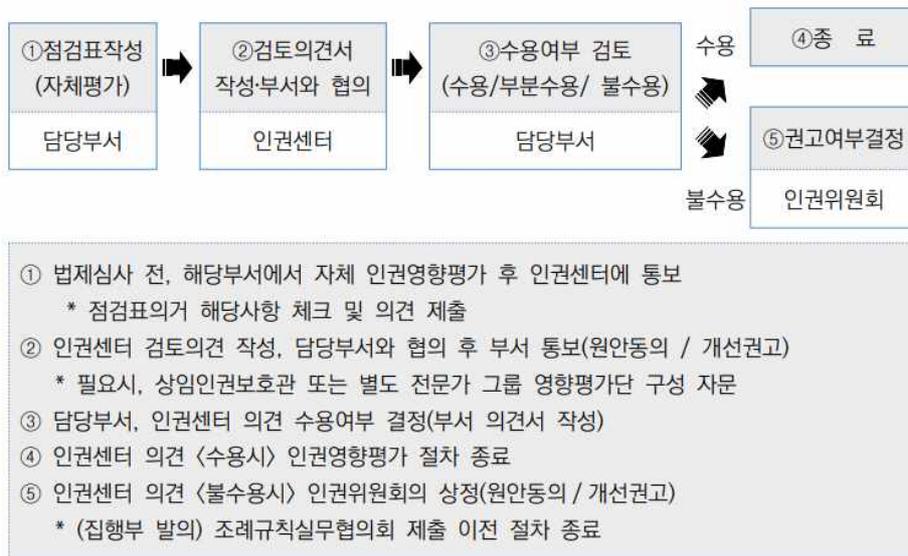
-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작성과 함께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인권센터에서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후 원안동의 또는 개선권고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담당부서로 통보함
- 원안동의 시 인권영향평가 절차는 종료되고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 여부(수용, 부분수용, 불수용)를 결정하여야 하고 수용시 인권영향평가 절차는 종료되며, 불수용시 인권위원회에 상정되어 권고여부를 재결정함

### ○ 평가기준

- 기본권제한, 인권침해, 구제수단, 공개, 참여 5개 분야에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함

### ○ 평가흐름

[그림 16]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출처: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표 24] 충청남도 조례별 개선권고 내역 및 수용여부

연 번	조례명	권고사항	조치 결과
1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내용에서 보호대상자는「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에 부합한 표현이 아니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조장할수 있다.</li> <li>‘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명칭변경</li> </ul>	권고 수용
2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균형’을 고려한 조례이나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내용이 모호함</li> <li>「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하여 수정</li> </ul>	권고 수용
3	충청남도 컨설팅감사 규칙 전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차원에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li> <li>“법령 등”의 정의를 제2조(정의)에 조문을 추가할 것을 권고</li> </ul>	권고 수용
4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장애인의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이므로 “정신이상자” 표현 삭제</li> </ul>	권고 수용
5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서점인증요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지원을 받는 도민이 혼동 할 우려가 있음</li> <li>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li> </ul>	권고 수용
6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정안 제7조 1호에 표현된 ‘이상행동’은 ‘정상행동’으로도 구분지을 수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할 우려가 있음</li> <li>제7조 1호 중 ‘이상 행동’을 삭제하거나 충청남도 산림박물관을 방문하는 도민이 차별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li> </ul>	권고 수용
7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지 제2호에 ‘최종학력’을 기입함으로써 선입견과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농어촌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음</li> <li>별지 제2호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신청 검토의견의 1. 사업신청자에 기입하도록 되어있는 ‘최종학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li> </ul>	권고 수용
8	충청남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권고</li> </ul>	권고 수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li> </ul>	
9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삭제 권고</li> <li>‘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정 권고, 장애 유무가 직무 수행과 관련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 권고</li> </ul>	권고 수용
10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수정 권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한 부분이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타 사회적경제 기업이 배제되어 차별받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권고</li> <li>‘관계인’ ⇨ ‘당사자’로 수정권고, ‘관계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권고</li> </ul>	권고 수용
1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권고</li> <li>「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li> <li>협의회 구성 시 위촉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li> </ul>	권고 수용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 권고</li> <li>「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가 2020. 4.1.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 용어 정비 필요</li> <li>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수정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필요</li> </ul>	권고 수용
13	충청남도 포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권고</li> <li>「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li> <li>알기쉬운 법령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사용 권고, “거양”, “정려”를 각각 “향상”과 “모든 힘을 다하여”로 수정 권고</li> </ul>	권고 수용

□ 시책 인권영향평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하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평가대상 시책이 선정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각 평가대상별 인권영향평가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함. 인권영향평가단은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평가단은 평가대상 시책에 대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평가기준에 따라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함. 인권위원회에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여부 등을 결정함
-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하며 인권센터에서는 이행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함

○ 충청남도는 2019년 ‘2019년 도민인권 증진시책’으로 선정된 50개의 시책 중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3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음

○ 평가흐름

[그림 17]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흐름



출처: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평가대상

[그림 18]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평가대상

인권영향평가 평가 대상		담당 부서
도민인권 증진 시책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	여성가족정책관(권익보호팀)
공공건축물	충남공감마루	공동체정책과(민관협치팀)
사회복지시설 규정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

출처: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4) 기초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 (1)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5]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서울시 성북구	<p>「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b>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li> <li>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li> <li>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li> <li>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li> <li>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li> <li>2.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li> </ol>

서울시 은평구	<p>「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b>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b></p>
경기 광명시	<p>「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li> <li>2. 재정상의 조치</li> <li>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li> <li>4. 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li> </ol> <p>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p> <p>③ 시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p>
경기 수원시	<p>「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b>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b></p>
인천 미추홀구	<p>「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장 인권영향평가제19조(인권영향평가 실시)</p> <p>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b>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b></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정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추홀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li> <li>2. 정책이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인권영향평가 권고)</p> <p>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정·개정 등이</p>

	<p>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미추홀구의 조례, 정책 등이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광주 북구	<p>「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인권영향평가)</p> <p>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정책 등이 국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u>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u></p> <p>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u>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li> <li>2.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li> <li>3.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li> </ol> <p>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서를 구의회 및 제1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광주 동구	<p>「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국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u>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u></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광주 광산구	<p>「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인권영향평가 권고)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국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u>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u></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충남 아산시	<p>「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16조(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 업무 지원</li> <li>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li> <li>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li> <li>4. 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li> </ol>

	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개발 관련 사항 ...
전남 화순군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인권영향평가) 군수는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군민 등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i>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i>

## (2) 서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함
  - 특히, 성북구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인권영향평가를 재량사항으로 둔 지자체와 다른 특징을 보임
- 평가대상
  -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 2.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 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 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점검기준

[표 26] 성북구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지역	영역	평가내용	점검방식
성북	권리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해당항목 표시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주민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구제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기대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 (3) 경기도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사례

- 광명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간행물 모니터링 제도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 홍보물 및 간행물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음

- 광명시 간행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 실시 필요함
- 따라서 간행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최소한의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표현을 사전에 막는 장치로 사용해야 함

□ 사업개요

- 영향평가방법: 인권영향평가단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분야: 3개 영역(장애, 여성, 이주민)
- 모니터링 범위: 및 대상: 2020년 10월 ~ 2021년 9월까지의 광명시 간행물

# 제3장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

제1절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절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제3절 인권영향평가 현황

제4절 인권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제5절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 3

##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 인권정책영향평가

###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정책, 사업, 계획 등 다양한 국가 및 정부의 작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적 평가는 인권 주류화와 인권 실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일 수 있음
- 현재까지의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특화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인권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 인권 관련 정책 영향은 직접적으로 인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 목적은 달리 하나 정책 과정에서 대상 집단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정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음
  - 특정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목적과 대상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의 기대 효과와 인권 관련 영향, 특히 부정적 영향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
-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의도 및 비의도적인 효과를 사전에 분석 및 평가하는 예측적 성격을 가지며, 정책의 개입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정부의 법령 및 제도의 설계, 정책의 입안 및 집행, 사업의 시행 등이 의도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다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적인 관점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영향평가의 대상은 법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담당 소관부서나 공무원이 아닌 정책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특정한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적으로도 평가될 필요가 있는데, 입법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재의 관점에서 또는 미래의 시각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미 결정되어 집행 중인 정책으로 인한 인권 영향에 대한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책이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권리 제한이나 침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사후적인 정책의 인권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전문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되어야 함
- 또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인권 주류화와 연계하여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는 인권 인식과 경험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권(증진)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다양한 인권정책이 입법적 근거, 추진체계의 마련, 정책 및 사업의 집행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실재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상황임
  - 기관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인권정책의 추진 전후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인권지표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인권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정보를 제공 및 환류하는 것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인권 관련 정책의 사전적 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립 및 집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나 절차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인권친화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영향평가란, 정책이나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 등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활동임(이영안 외, 2017; 이충은·노진석, 2018)
- 영향평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 수단으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상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정책분석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강현수 외, 2012)
  - 기존의 영향평가가 수단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객관적 및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최근의 영향평가는 절차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정책영향평가는 의사결정과정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다양한 관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책의 설계 및 입안을 담당하는 기능이 주로 내부화하는 것과 비교하여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기능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외부화되고 있기도 함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임
  - 이는 각종 법령 및 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 인권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탐색될 수 있음. 추상성의 수준에 따라 인권 영향의 내용과 규모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인권영향은 정책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되는 과정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책의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집행 단계에서의 정책 수단의 선택과 정부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현행 자치법규, 계획 및 사업,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적 영향평가와 사후적 영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사전 및 사후적 영향평가의 구분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평가의 목적의 차이를 반영함
  - 가장 적극적으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영역은 자치법규이며, 주로 조문의 표현과 내용을 중심으로 사후적인 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음. 즉,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적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법조문의 인권 침해 및 차별적인 용어와 표현의 문제와 법규의 적용 대상의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자치법규와 이를 근거로 한 정책 및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 신설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정부입법에 한정되며,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계를 가짐. 더욱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전적 영향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 및 재개발 등의 특정 정책 영역에서 사전적 영향평가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는 현재 관점에서 내부 규정, 조직 운영 절차, 사업 추진 관행 등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후적인 평가의 성격을 가짐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을 2개 영역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의 경영 활동에서 인권 침해 위험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인권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관 단위의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평가는 자율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과 외

- 부 고객의 권리 제한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탐색되지는 못하는 상황임
- 인권 관련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활동이 국민 및 지역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별 정책 및 사업별 인권 영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국민 및 지역주민의 인권 관련 인식의 변화나 인권침해 사례의 감소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접근임
    - 후자는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과정 및 행정활동에서 인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연결되며, 인권 침해나 권리 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주류화하는 것을 주요 성과로 간주하는 개별적인 접근임
  
  - 인권 관련 행정활동의 주체에 대한 평가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영향평가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중임
    -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 기반 경영 성과를 평가 받고 있는 중이며, 국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각 정부부처로부터 그리고 지방 공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 경영의 성과를 평가 받고 있음
      - 평가대상인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인권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 및 주요 사업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 및 경영하는지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중임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성과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도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지표 선정과 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권영향평가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추진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인권 관련 정책이 상향적 또는 참여적인 접근을 지향함에 따라 분산형의 체제가 적합할 수는 있으나 전체 현황에 대한 진단 및 확인을 위한 도구는 부재한 상황임
  
    - 공공기관의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집중형, 표준형으로 설계할 경우 이러한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인권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성할 경우 구체적인 기관유형별 구분, 측정 대상 업무와 측정 모형, 측정 주기 및 등급 산정 방식, 청렴도 평가의 벤치마킹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각급 기관의 인권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는 인권노력도(친화도) 또는 인권노력도의 개념으로 접근 가능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내부인권노력도(친화도)(직원)와 외부인권노력도(친화도)(민원인 등)로 나누어 인권인식, 침해 및 차별경험, 인권(조직)문화, 인권적 업무처리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건수와 이행정도, 기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 인권노력도(친화도)와 특정 인권주제에 대한 인권노력도(친화도)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1) 인권영향평가의 정의

- 인권영향평가는 입법, 정책, 프로그램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임(World Bank and Nordic Trust Fund, 2013)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인권에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임
  - 인권영향평가도구는 정책이나 사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제반활동을 의미함(이영안 외, 2017; 이충은·노진석, 2018)
- 인권영향평가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평가범위로 삼아 개념화한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현수 외(2012)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됨에 있어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라고 하였음
  - 이준일 외(2015)는 “국가작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는 영향평가의 하나로 그 대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함. 한편, 이정은(2016)은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전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인권 증진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정의함
  - 이영안 외(2017)는 인권영향평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제시함
- 한편,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공공기관 및 기업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종철 외(2012)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를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정책이나 계획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수단이나 절차”로써 정부 정책과 규범 제정, 기업의 프로젝트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봄
-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강현수(2013)는 “정부나 조직, 기업이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함

## 2)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부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임(Boxewanos & Werner, 2013; 한국인권재단, 2016; 이영안 외, 2017)
  - 인권영향평가는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권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짐(World Bank & Nordic Trust Fund, 2013; 강현수 외, 2012; 이영안 외, 2017)
- 실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목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은 인권침해요소를 미리 진단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외부적으로 인권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을 증진,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것임
  - 서울시(2018)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며, 경기도(2021)는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예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과 도민의 인권역량 증진하는 것과 경기도정에 인권을 주류화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보장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편, 광주광역시(2021)는 행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나 사회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민의 인권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2020)는 인권관점의 사고를 통해 정책을 형성 및 경정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사회적 분쟁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3) 인권영향평가의 성격

- 사전적 평가로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이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한 사회가 정책을 입안할 때 인권을 규칙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제도화한 것임. 인권을 존중하는 규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서 국가의 소명임
-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의 보편적 기준과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 있음. 따라서 제도의 기본 성격에 대한 숙고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단계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행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적 성격 혹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 제안될 수 있음
  
-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장치
- 인권영향평가라는 장치는 기본권 보장의 최대화를 우선하기보다, 정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행정작용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다시 말해,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면적이고 창의적인 탐색에 초점을 두어야 함. 기획된 정책안이 도모하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피해가 인권 측면에서 발생할 여지를 사전 발견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다양한 기본권 해석의 채택과 존중
-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해석은 변화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으므로, 행정 현장에서도 새롭게 강조되고 증가하는 인권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해당 사례에서 침해될 수 있다고 제기되는 기본권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두루 고려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한 토론과 설득 과정이 중요함.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기관 및 담당자의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및 제3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권 침해와 이익 침해의 구별 필요
- 모든 정책은 직·간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향해 이뤄지며 정책대상은 수혜자뿐 아니라 비용부담자를 발생시킴. 기획된 정책 아이디어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존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이 있음.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 중 하나는 발생될 비용(침해될 이익)과 기본권을 분별하는 과정임

- 기본권과 이익을 구별은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목적은 이익 침해의 구제나 갈등 조정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져야 함. 일반적으로 규제 혹은 침익적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손해가 고려되는 장치는 다른 사전평가제도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사항은 되도록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물론 다른 권익 관련 평가와 평가영역/대상에 있어서 배타적일 수는 없을 것임
- 이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이뤄지고 최종 검토의견서에는 누구의 어떤 기본권 침해인가를 비교적 명료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영향평가는 다양한 집단 간 권익보장 수준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제도라 기보다는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하려는 접근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실행 가능성의 고려
  - 인권의 양도 불가능성 및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과정은 행정 현실적 제약,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집행될 필요가 큼. 제기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나 정책 조건의 조정과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 및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실무자의 숙고 및 토론 결과 부분적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충분히 적시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정책 전반의 포괄적 검토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검토되는 정책안은 내용적 타당성과 함께 형식적 적절성도 함께 평가되어야 하며, 정책안의 집행 과정 및 예상되는 결과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함. 인권영향평가가 되도록 해당 정책안을 정책과정의 여러 국면과 단계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사전의 일회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의 집행 과정 및 사후적으로도 인권 측면의 수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제기될 때 이를 평가하고 동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인권영향평가 현황

- 본 연구는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대상, 범위, 평가 기준 및 항목, 절차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인권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평가의 대상을 기준으로 자치법규,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그 밖에 기타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분류를 바탕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고자 함

#### 1) 자치법규

- 대상 및 범위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집행부가 발의하는 제·개정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하며, 제·개정 자치법규를 사전적으로 평가함
    -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는 좁게는 단체장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전라남도, 경기도 수원특례시)부터 제정 및 전부개정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일부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지자체(제주도)까지 다양함. 서울시의 경우, 조례와 규칙, 그 외 시 산하기관의 규정까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더불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추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한편,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같이 현행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사후적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음
  
- 평가기준 및 항목
  -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기준은 자치법규의 내용 자체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 요소가 존재하는지와 조문 상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이 존재하는지, 자치법규의 내용이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임
    -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기본권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별의 기준은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함

[표 27] 인권침해 판단 기준 법적 근거

<p>「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p> <p>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p>「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p>
--

- 강원도의 경우는 ‘규범적용상의 차별’ 여부와 ‘차별금지 분야별 색인어’ 위반여부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음

<p><b>규범적용상의 차별</b></p> <p>‘규범적용상의 차별’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치법규의 차별적 적용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함</p> <p><b>차별금지 분야별 색인어</b></p> <p>자치법규 특성상 조문의 용어가 차별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p>
--

-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평가항목은 i)기본권 제약, ii)인권 침해, iii)구제수단, iv)공개, v)참여임
-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민주적 참여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권, 시민 알권리 등을 제시함.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노동규약 및 헌법상 보장하는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등임

[표 28] 기본권의 세부내용

기본권	내용
민주적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li> <li>▪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li> </ul>
주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li> <li>▪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퇴거 금지</li> </ul>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li> <li>▪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li> </ul>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li> <li>▪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li> <li>▪ 안전하게 먹을 권리</li> <li>▪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li> </ul>
문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li> <li>▪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li> </ul>
안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li> <li>▪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li> <li>▪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li> <li>▪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li> </ul>
환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li> <li>▪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li> </ul>
이동권·접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li> <li>▪ 공공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li> </ul>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li> <li>▪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li> </ul>
개인정보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li> <li>▪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li> </ul>
알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li> </ul>

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등 관련 자료에서 발췌 및 보완

-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요소가 있는지 검토함. 일반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비혼모,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병력이 있는 사람, 비정규노동자, 생활보호대상자, 전과자 등을 일컬음. 더불어 ‘정상인, 정신병자 등’ 인권침해적 용어나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가를 검토함

#### □ 평가절차

-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보통 ‘법제심사 전’에 이루어짐. 다만, 현행법규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후평가로 진행됨
  -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는 ‘점검표 작성(담당부서) → 검토의견서 작성·부서와 협의(인권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담당부서) → 수용시, 종료 / 불수용시, 권고여부결정(인권위원회)’의 절차로 이루어짐
  -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적 인권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나, 종합하면 ‘평가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인권담당부서) → 점검 및 평가(인권담당부서 또는 인권위원회) → 점검결과 검토 및 자문회의(인권영향평가 자문단 또는 인권위원회) → 검토의견 통보 및 의견조회 (소관부서) → 심의 및 개선권고(인권위원회)’의 과정을 거침

## 2) 정책·사업

#### □ 개요

-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총 5곳임
  - 전라북도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도입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 대상

-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보통 자치단체의 인권담당관이나 인권위원회가 선정함

#### □ 평가기준 및 항목

-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현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3]와 같음

[표 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항목

광역자치단체	내용
서울특별시	인권침해의 예방 침해구제 절차의 제공 참여권의 보장
부산광역시	인권침해 구제수단 공개 참여
광주광역시	인권영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부정적 영향 또는 권리 침해 요소</li> <li>▪ 행정용어의 인권침해 가능성</li> <li>▪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li> <li>▪ 주민참여 보장 여부</li> <li>▪ 사업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한 해소방안</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시행이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개선에 기여</li> <li>▪ 사업의 시행이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li> </ul>
경기도	기본적 생존보장 자유의 보호 평등의 보장 자력화 보장
충청남도	인권증진활동 인권침해가능성 향후 인권적 관점에서 추가될 수 있는 사업계획
전라북도	인권침해 참여권 보장 구제수단 사후평가 수단 마련

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등 관련 자료에서 발췌하여 저자 작성

-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표현은 다소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인권침해여부, 예방 및 구제수단의 마련, 공개와 참여권 보장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기본적인 평가항목을 크게 사업으로부터 인권이 받을 영향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행정 및 주민인권 증진에 대한 효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을 마련함

- 경기도는 평가대상 정책·사업이 인간다운 삶의 수준으로서 기본적 생존의 보장여부(기본적 생존 보장),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등의 보호여부(자유의 보호),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없이 운영되는지 여부(평등의 보장)와 사업이 인권역량 증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자력화 보장)를 평가하는 항목을 제시함
- 충청남도는 정책·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능성을 평가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당 사업이 인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후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계획까지도 확인하는 항목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평가절차

- 지방자치단체 사업(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사업선정(인권담당관) → 평가단 구성(인권담당관) → 영향평가(평가단/인권담당관) → 검토 및 권고(인권위원회) → 조치계획마련(담당부서) → 모니터링(인권담당관)’의 절차로 이루어짐

### 3) 공공건축물

□ 개요

- 공공건축물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평가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존재하며, 공공건축물에 인권 감수성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충남연구원, 2016)
- 시민들의 일상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 실시함
-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총 4곳임
  - 전라북도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도입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대상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표 28]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임

[표 3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대상의 범위

광역자치단체	내용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산하 출연기관의 시설로 현장조사, 관계자 조사 등 평가 협조가 가능한 곳</li> <li>▪ 다양한 연령, 성별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다중 시설 우선</li> <li>▪ 특정 지역을 위한 시설보다는 서울시민 전체를 이용자로 하는 시설 우선</li> <li>▪ 일정 크기 이상의 규모와 많은 이용자가 있어, 관리를 위해 다수 관리자와 상주 공간이 필요한 시설</li> <li>▪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의 적정한 분배 선정</li> </ul>
부산광역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내 모든 공공건축물
충청남도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공공기관, 의료·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건축물 등
전라북도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공공기관, 의료·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건축물 등

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등 관련 자료에서 발췌하여 저자작성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수가 이용하고,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광범위하게 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의뢰 또는 선정하거나 인권관련 부서에서 선정하는 형식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함
  - 서울특별시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실제로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2021년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총 12개소를 선정함
  -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는 공공건축물 중 행정·공공기관, 의료·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 건축물로 그 대상을 범주화함
  - 수원특례시의 경우,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청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사회복지타운과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및 생태환경체험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평가기준 및 항목

-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여타 부문의 인권영향평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함. 광역자치단체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9]과 같음

- 서울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준공 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권,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 등 9대 인권분야를 기초로 점검이 이루어짐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평가항목

광역자치단체	평가항목
서울특별시	참여권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
부산광역시	(원칙) 포괄적 인권보장과 비차별 시민의 참여권 보장 및 소통과 역량 강화 이용자의 다양성 존중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건물폐쇄 이후의 회복력  (기초점검표) 기획-설계-시공-이용 및 유지관리단계-건물폐쇄 단계  (세부점검표) 내외부 공간(접근권, 안전권, 참여권) 시설물(비차별, 접근권, 휴식권, 환경권, 지속가능성, 인권친화적 용어)
광주광역시	(기본원칙) 경제·문화·사회·신체·환경 등을 고려한 포용과 비차별 인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시민 등 참여 및 소통,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용자의 다양성 수용 및 존중  (공통) 기획·설계·시공 등 건축의 전 과정에 걸쳐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작업자의 인권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

	<p>향후 인권수요의 변화 및 증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p> <p>모든 사업과정에는 인권을 고려한 ‘공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p> <p>(개별)</p> <p>인권을 고려한 기획 및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참여권리 존중</li> <li>▪ 주변환경에의 영향</li> <li>▪ 공간계획</li> </ul> <p>시공</p> <p>상세건축요소 및 시설 기준</p> <p>이용 및 유지관리</p>
충청남도	<p>지속가능성,</p> <p>유니버설 디자인 반영여부</p> <p>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등</p>
전라북도	<p>인권을 고려한 기획 및 설계(권리존중, 공간배치 등)</p> <p>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확인(BF 인증 등)</p>

□ 평가절차

-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 공공건축물이 계획되고, 준공된 후까지, 즉 사업계획- 설계공모 - 설계시행 - 공사시행 및 준공 -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임
- 구체적으로 평가절차는 ‘(사업계획) 평가의뢰 및 인권영향평가단 구성(담당부서, 인권센터) → (설계공모) 1차 인권영향평가(평가단, 인권관련부서) → (공모심사) 영향평가단 심사위원위촉(담당부서) → (설계용역시행) 인권영향평가(평가단, 인권관련부서) → (공사시행)인권감리(평가단, 인권관련부서: 인권영향평가자문) → (종료심사) 3차영향평가(평가단, 인권관련부서) → (사후관리)모니터링(평가단, 인권관련부서)’의 절차로 이루어짐
-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와 동일한 절차(대상선정(인권담당부서: 계획 수립•통보) → 평가실시(인권담당부서: 평가단 구성, 단계별 평가) → 결과통보(인권담당부서: 보고서 작성, 부서 통보) → 검토•회신(주관부서/건축부서: 건축과 협의 및 결과회신) → 사후 모니터링(인권담당부서: 이행점검, 환류체계))로 진행됨

#### 4) 기타

-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사업(정책), 공공건축물 외에도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서울시는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사례: 간행물 인권영향평가
  - 개요: 광명시는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정기회의(2020년 5월 8일)에서 ‘간행물 인권영향평가’ 요구 의견에 근거하여 광명시 간행물(소식지·유튜브·블로그)에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영향평가 항목: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표현내용 및 맥락을 토대로 직접적인 인권침해 또는 간접적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현 여부 검토
    - 직접적인 인권침해: 직접적으로 혐오·차별·비하표현, 사회문제·위험·폭력, 외모비하, 명예·수치심·사생활 침해 표현
    - 간접적 인권침해: ‘비가시화’된 형태 또는 기타차별 형태의 차별 등 적절하지 않은 표현
  - 영향평가 절차: 인권위원회 의결 →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 사전교육 → 기획회의 → 평가 및 검토 → 의견서 작성 → 시정권고
  
- 사례: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
  - 개요: 광주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6곳의 운영지침, 운영규정, 사무편람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적용된 영향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규정집·사무편람 인권영향평가 기준

영역	평가항목
기관운영 분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인력 채용절차 및 성별로 균형있는 업무분장 기관운영 관련 별지서식 검토(인권적 용어, 개인정보 기재항목 등)
종사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 분야	고용(준비, 근로기간 중, 해소)단계별 차별적 요인 점검 근로관계에서 노동권 보장(상위법과의 정합성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 용평등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법률 규정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규정(예: 일방적인 징계사유 적시)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인(예: 산모도우미 근로형태·범위 명시 등)
인권교육 분야	대상별(관리자·종사자) 교육 내용 및 교육예산편성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사후조치(구제절차 명시 여부)
기타 인권적 용어사용 등	규정집·사무편람 조항별 인권적 용어 및 비인권적 용어의 대안 제시

□ 사례: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개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진 사례로서, 투표소에 대한 인  
권영향평가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바 있음. 광주시의 사례를 보면, 2018년 4  
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설치되는 42개 투표소(전체 364개)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단(시민단체 20명, 장애인 단체 20명,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0명)을 구성해 평가하였음

○ 영향평가 항목: 노후, 지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 및 변경된 투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여부를 점검함

○ 영향평가 결과: 광주시 2018년 투표소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지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투표소 6개소는 승강기 미설치 투표소(1개)는 1층에 임시  
기표소 설치하고 안내요원 배치
- 출입구 계단 또는 급경사, 출입문 협소로 이동이 불편한 투표소(8개)는 임시경사로 설치
- 폭이 좁은 문 임시 제거,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투표소(6개)는 인근 건물의 장애인 화장  
실 사용 협조 및 당일 안내요원 배치

□ 사례: 공공기관 주최 행사 인권영향평가

○ 개요: 광주시는 공공기관 주관행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개 행사에 시범 적용한 바 있음. 행사에 대해 현장 점검하여 항목별 점

검 항목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음. 행사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권고함

○ 영향평가 항목: 7개 분야 28개 점검 항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음

[표 33] 광주시 공공기관 주관 행사 가이드라인

영역	평가항목
의전 간소화	내빈소개 지양 인사말(축사, 환영사) 최소화 내빈 중심의 행사운영 지양 지정좌석 최소화
행사 운영	사전교육 제공(인권적 용어사용, 인권침해 예방) 진행요원 식사 및 휴식 보장(사회자 의자 등) 성평등한 업무 분장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가이드라인 적용
정보 제공	안내소 설치운영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행사사전 신청시 정보요구 최소화 사진영상촬영시 고지와 동의
참여권 보장	교통약자를 고려한 동선 배치 통역제공(점자, 수어, 자막, 보이스 아이 등) 영유아 공간 및 돌봄 지원(유아차, 휠체어 확보)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지원
편의시설 확보	화장실(장애인, 가족형, 성중립 등) 확보 성비를 고려한 화장실 확보 자유로운 장내 이동확보(경사로, 주차공간, 점자블록 확보) 선택가능한 식단(채식 등) 제공
친환경 운영	1회용품 사용 자제 현수막/인쇄물 제작 최소화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안전성 확보	안전교육 실시 행사보험 가입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 응급상황 매뉴얼 준비

## 4. 인권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 □ 사전적 평가로서의 실효성 문제

#### ○ 사전 평가의 공식화

- 사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능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될 모든 정책안이 기획 및 결정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적 근거가 있어야 함.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기반하는 규범적 근거에 따라서 평가의 시기, 주체, 대상, 기준 등 일정한 체계가 마련되는 것임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의 근거는 조례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조례에 근거하여 제도가 운용되기에 그 구체적인 체계는 지역별로 상이함.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기준으로 볼 때, 인권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뤄져야 함이 규정된 경우는 경남, 제주, 부산, 광주임
- 경남은 정책·계획 수립 및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 부산은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전 어느 단계인지 불분명하지만, 제주와 광주의 경우는 평가대상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조례·규칙은 ‘법제심사 의뢰 전’, 정책·시책은 ‘해당 계획 확정 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사전 실시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으로 볼 수 있음
- 그 이외 지역에서는 평가 시기가 인권증진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등을 통하여 사전 실시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인권영향평가가 정책안의 인권 측면의 영향을 사전 단계에서 평가하는 제도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34] 인권영향평가 사전 실시에 관한 조례 규정

지역	내용
경남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
제주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규칙: 법제심사의뢰 전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 등: 해당 계획 확정 전
부산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광주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규칙: 법제심사 의뢰 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책 등: 해당 계획 확정 전 (시행 중인 경우, 시장이 정하거나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실시)

#### ○ 사전 평가의 실질적 가능성

- 하지만, 제도적으로 사전적 실시 방침이 조례 및 추진계획 상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전’ 단계의 평가가 원활히, 효과적으로 실시되는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특히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비해 정책·계획 혹은 시책 등은 인권영향평가의 필요 여부를 사전

에 판단하기 쉽지 않음

- 자치법규와 달리, 정책·사업은 기획되는 모든 안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인정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임. 사업 담당부서는 어떤 정책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반면 인권 담당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어떤 정책안을 계획 중인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나 파악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사전적 평가의 실효성은 사업부서의 사전 선정과 검토 과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인권영향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권부서와 사업부서 사이에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현실에 맞는 세부 설계가 있어야 함
- 지자체 인권담당자 인터뷰 결과, 제도적으로 사전적 실시 방침이 조례 및 추진계획 상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전’ 단계의 평가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음. 인터뷰에 근거할 때,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제정 및 개정시 모든 안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 일괄적으로 법제심사의뢰 전에 검토될 수 있으나, 정책·사업은 인권영향평가의 필요 여부를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판단하여 인권 담당부서에 평가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는 인권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고 응답되었음
- “저희가 사실 정책이나 그런 거 못 건드리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처음 사업 시행 단계에서 건드려야 하는데. 인력상으로도 그렇고, 예산이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협조해주시기도 쉽지 않고 저희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 담당관]
- “해당 부서에서 이 정책에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크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다든가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 ○ 담당관]

#### ○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

- 한편, 사전적 평가 이외에도 추진 과정 및 사후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고 추진할 것인지 체계 마련도 필요함. 경기도의 경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전, 과정, 사후평가로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표 참고).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사업담당자가 추진계획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 검토 및 점검하는 사전평가 단계를 거친 후,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인권침해 여건 등을 현장점검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 사전·과정평가에서 제시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단 및 인권위원회가 사후점검하는 단계로 마무리됨
- 또한 공공건축물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는 사전 단계에서 진행되면서 세부 평가를 사업계획 단계, 공사단계, 완공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공공건축물 및 시

설물의 경우, 진행 중이나 완료 이후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비용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 평가의 필요성이 특히 더 높음. 따라서 평가 분야별로 사전 뿐 아니라 과정 및 사후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할 규정 및 기준도 필요할 수 있음

[표 35]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단계와 방식

평가분야	단계	평가주체	평가방식
주요 정책·사업	사전평가	정책사업담당자	정책·사업 추진계획의 인권침해요소 사전 검토·점검
	과정평가	평가단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여건 등 현장점검
	사후평가	평가단, 인권위원회	사업완료 이후 사전·과정평가에서 제시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후점검

주: 평가단: 대상사업별 사업담당자+전문가+도민(인권모니터단)으로 10명 내외

○ 요약하면, 정책·사업의 경우 전수를 대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적 평가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사안이 평가가 필요한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이 중요할 수 있음. 추후 지자체 인권영향평가의 확장 적용을 위해서 선정기준 및 방식 마련이 중요할 것임. 이를 위해 다음의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 부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학습
-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정책·사업 분야를 구체적 제시하고 강제 규정 마련
-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기준과 점검 항목 구체화
- 부서 사업기획 단계에서 인권부서와의 협의 절차 구축

□ 제도의 법률적 근거 필요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운영 근거는 법률이 아닌 조례이므로 평가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됨.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현재 지역별로 운영 수준이 상이함. 이러한 상이함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성이라기보다 지자체 관심 및 지원 정도에 따른 제도 발전의 단계 차이로 보임

- 지자체 인권담당자 인터뷰 결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었는데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부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단체장 교체로 인한 부서 개편, 감축, 폐지 등의 변화가 크다는 것임. 또한 여러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관심과 적극성이 중요한데 법률적 근거 없이 공무원의 행동을 유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임
- “가장 큰 요인은 법률인 것 같아요. 모든 조직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뒷받침 되

어야 하잖아요. 지자체 (인권부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부서가 아니거든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인권 침해 업무를 하든 인권 영향평가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표준안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 인권부서들은 그냥 자생적으로 커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런 조직들이 조금 체계화되고 힘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도기로 커가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있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 담당관]

-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인권센터를 마련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운용할 역량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인식되었으며 이를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의 구축과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평가 주체의 전문성 문제

- 인권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판단에 어려움이 크기에 인권영향평가를 전문적이며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평가를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영향평가는 평가 주체별로 평가의 관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 주체는 관심 분야 및 전문성에 기반하여 관련 인권 쟁점을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찾는 과정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외부인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기도 함
- 인권영향평가는 해당 지역의 자원과 역량 등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주체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권은 절대적인 관점과 상대적인 관점을 반영하게 됨. 이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인권과 관련한 시의성과 적절성이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자원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현재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의 평가/판단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외부 전문가/전문기관 활용 유형(예:광주시), 인권담당부서 전담 유형(예:수원시), 지역 인권위원회 판단 유형(예:성북구)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은 나름의 특징과 한계가 있음
  - 해당 지역의 역량과 특징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위해 적합한 평가 주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사회적 측면의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는 대체로 평가 결과에 권위가 부여되므로 검토의견의 수용 가능성도 높을 수 있음
  - 하지만, 지역 내에서 평가를 위탁할 적임의 전문가/전문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음
  - 또한 외부 기관에 맡김으로써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 공무원들이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며 인권역량을 높일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인권부서에서 전담 평가하는 경우, 인권 분야 전문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육성한다면 조직 내 인권역량이 강화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 제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고용한다면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권 분야를 전문담당관으로 지정하기에는 조직적 상황에서 쉽지 않음
  - 또한 인권센터 내에서 다양하고 다수의 사안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 등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인권담당 부서 지원 수준으로 어려움이 있음
- 지역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 과정이 여러 인권위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인권위에서 다루는 여러 인권 사안들과 연계하여 접근 및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을 것임
  - 하지만, 인권위원들의 역량과 구성에 따라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음

[표 36] 평가 주체의 유형

유형	특징	한계
외부전문가/ 전문기관 활용	전문적인 평가 수행 가능 검토의견에 권위 부여	지역내 전문가 인프라 중요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어려움 전문인력의 채용 및 전문관으로서
인권부서 전담	운영의 안정성 확보 평가의 일관성과 학습 가능	육성 필요 일관된 부서 운영 필요 충분한 자원 확보 필요
인권위원회 판단	다양한 관점의 검토 가능 다른 인권 사안과 연계 검토 가능	위원들의 역량 및 지속적 몰입 확보 중요

- 따라서 어떤 유형이 인권영향평가의 전문성이나 포괄성을 높이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보편적 판단은 쉽지 않으며, 위와 같은 특징과 한계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정책·사업의 평가대상 발굴 문제

- 자치법규의 경우, 현재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이 평가대상이지만 일부 지역은 단체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에 국한되기도 함
- 의원 발의와 단체장 발의 여부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의원 발의 조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사업은 인권영향평가의 중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사안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만 평가되고 있음
  - 인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사업 일부를 대상으로 평가를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사업 담당부서, 인권담당부서, 인권위원회, 단체장 등이 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하지만 대체로 지자체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의뢰하여 인권부서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평가하는 bottom-up 방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협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권부서나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평가 이후,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그 이유와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정책·사업 중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투표소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개발(성북구 등), 공공기관 주관행사(광주시 등), 복지시설 등 위탁 계약(수원시 등) 등으로 확대하여 평가하기도 하였음. 또한 사후평가로서 공공간행물 및 매뉴얼(광명시 등)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고 있음
  - 지자체 인권부서 담당자 인터뷰 결과, 지자체에서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였기에 일부만을 평가하는 수준이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할지 선정 및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정책·사업이 어떤 인권과 관련된 것인지 분류할 필요가 있다. 사업과 인권영역(기본권)을 매칭하고 이를 교육하면 평가대상 사업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건축물이 이동권과 관련되는 것처럼.” [기초 지방자치단체 ○○○ 담당관]
  
- 그 외에도 정책·사업 중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복지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 신고가 들어온 사안, 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평가대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음

- “부서 중에서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청소년 특히 약간 계층별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무언가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먼저 인권담당 부서에 인권침해나 인권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뢰하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서와 특히 인권부서가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 담당관]

#### □ 평가 기준의 구체화 문제

- 현재 인권영향평가의 평가 기준(항목, 지표)은 자체 점검 시 필요한 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특정 분야 및 영역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부 분야는 해당 분야에 맞춰 특화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 경우 보편적 항목이 적용되고 있음
  - 보편적으로 점검 가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경우, 비교적 간소화된 지표 적용이 이뤄지므로 평가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점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평가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라 평가 기준으로서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의 항목과 평가의 척도를 현재보다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마련할 수 있는 일부 정책·사업 분야에 국한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공공간행물 및 매뉴얼 평가를 들 수 있음
  - 기본권 권리별, 정책 분야별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경우, 해당 분야의 인권침해 여부를 비교적 명확히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하지만 권리 및 분야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의 복잡함이 제기될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절차상, 부서 단위의 1차 점검이 이뤄질 때에는 비교적 보편적 기준이 적용되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지는 단계에서는 비교적 세부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의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5.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설계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권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침 및 지표(안)을 구성하여 제시함

### 1) 의의 및 목적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법률제·개정 및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행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나 사회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질적수준 향상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함
- 본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i) 인권 침해 및 기본권 제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해당 정책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ii) 정책 및 사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영향을 미칠 요소에 대해 예상하는 것임
- 해당 지침(안)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의 개발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추후, 사업 및 정책분야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심화 및 변형하여 활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2) 대상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정 및 개정되는 자치법규와 일부 주요 정책·시책임

#### □ 자치법규

- 자치법규의 경우,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함
  - 평가 제외 가능한 항목으로 행정 내부관리를 위한 단순 절차 및 용어 변경,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단순 정비 및 변경, 권익 개선을 위한 개정 권고 반영,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음

[표 37] 인권정책영향평가 평가제외 검토항목 (예시)

평가 제외 검토 항목
1. 행정 내부 관리의 단순 절차 및 용어 변경
2. 권익 개선을 위한 개정 권고 반영
3.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단순 정비 및 변경
4.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경우
5. 기타 제외 이유 ( )

□ 정책·시책

- 정책·시책의 경우, 인권 측면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예: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 침익 발생의 범위나 규모가 큰 사업, 투용자 규모가 큰 대규모 예산사업(국가재정법 38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정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담당관이나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참고로 평가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함

[표 38] 인권정책영향평가 우선적용 검토대상 (예시)

우선 적용 검토 대상
1.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2.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3.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사업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
5. 침익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법정계획)
6. 투용자 규모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지방투자심사대상 사업)
7. 지자체장, 의회, 인권위 등에서 평가 권고한 사안
8.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되어 적용 가능
9. 기타 평가 필요 사유 ( )

### 3) 평가항목 및 지표

#### (1) 평가항목

##### □ 평가항목의 구성

- 평가항목의 구성은 i) 세부 항목의 점검 결과를 합하여 인권침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ii) 세부 항목을 진단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침해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음
- 현재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인권영향평가 항목이 전자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절차 및 형식 차원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들로서 가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내용 차원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정도의 상·중·하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하는 항목들로 구성함
- 이와 같은 방식은 담당자가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사유를 돕고 학습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 평가항목의 세부 요소

- 평가항목은 크게 정책·사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 및 형식'상의 인권침해 요소와 정책·사업 '내용'상 기본권 제약 및 인권 침해 요소로 구성함
- **절차 및 형식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공개, 참여, 구제, 용어 차별로 구성됨. 정책·사업 수립 및 추진과정을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와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용된 용어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사전 검토하였는지 등을 진단하도록 함.
- 아래의 질문에 대해 '예'에 체크된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며, '아니오' 혹은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그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였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 시 보완 여부 판단하도록 함
  - 공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제공되고 있습니까?
  - 참여: 1)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2)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였습니까?
  - 구제: 정책사업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용어차별: 정책사업 계획상에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국

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표현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정책·사업의 내용 및 집행상 a)인권증진의 긍정적 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대해 먼저 가능한 후, b)인권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함. 특히, c)해당 업무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사안 및 상황 예시 중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d)기본권 제한 또는 인권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e)그러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
-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관련된 질문들로서 앞선 질문에 이어진 다음 질문에 응답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임
  - 인권 증진: 해당 사업이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까?
  - 인권 침해 가능성: 1)제시된 업무영역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사례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2) 해당 사업에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규범과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3)그러한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4)그러한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모두 복수 선택 가능)
- **종합 검토**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 정도와 실행가능성 판단으로 구성됨. 먼저, 절차 및 형식 차원, 내용 차원의 항목에서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사업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함. 인권침해 가능성 정도를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대상과 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며, 해당 침해 요소의 제거와 관련된 한계와 우려를 함께 기술함. 또한 그러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려되거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도록 하여 현장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인권침해정도 최종 판단: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정책사업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실행가능성: 그러한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해주시시오.
- 인권침해 가능성의 최종 판단은 상·중·하·없음 중 선택하는데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구체적인 침해 대상 및 내용과 함께 침해 가능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적인 판단 주체(예: 인권위, 인권담당관 등) 보내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최종 판단하도록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관부서의 담당자의 인권인식을 신장에 기여할 수 있고, 집행상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평가 결과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표 39]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비고	
절차 및 형식	공개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참여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여부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여부		
	구제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권리침해시, 구제방안 마련		
용어차별	정책·사업 계획상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부			
내용	인권 증진	정책·사업의 내용이 인권을 증진할 가능성 검토		
	업무분야 별 인권영향 항목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 분야별 발생가능한 인권 영향 세부 항목과의 관련성 검토		
	기본권 제한 및 인권영향 요소	정책·사업의 내용상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검토		
	기본권 제한의 대상	정책·사업의 내용상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대상 검토 (권리 주체 중심)		주관식, 내용 서술
	제한 가능성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 검토 (권리 내용 중심)		주관식, 내용 서술
	인권영향 발생정도	정책·사업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상의 인권영향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권영향의 발생 가능성 - 인권영향 대상별 권리 제한 요소 기술	상·중·하 및 없음	
종합 검토	실행가능성 검토	해당 권리 제한 요소의 제거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 기술	주관식, 내용 서술	

## (2) 평가의 기준으로서 인권 및 기본권

- 평가대상이 된 정책·사업으로 인해 침해 가능한 인권 및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 제시된 권리 항목은 민주적 참여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권/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권임

[표 40] 기본적 인권의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안전권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동권 접근권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노동권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권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 평가자는 해당 정책의 인권정책영향평가 과정을 통해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내용 및 종류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복수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라면 그 모두를 포함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함

### (3)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 앞서 표로 제시된 인권 및 기본권들이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업무분야별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세부 항목이나 사례를 예시하는 표를 마련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이러한 세부 항목이나 사례와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요소로서의 인권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정의되는 한계를 가지며, 실제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인권의 내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또한 이러한 세부 상황과 예시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미처 주목되지 않고 간과되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각 업무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의 우선순위나 강조점을 일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광범위한 인권 목록을 토대로 업무 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논의되는 인권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논의 과정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업무분야별 인권목록은 정책 및 사업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정책 및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필요로 함
- 현재 여기서는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 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이라는 10개의 업무분야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른 예시 상황을 나열하고 있음
- 향후 각 분야에서 주요한 세부 항목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지침과 매뉴얼이 각각 구축되어갈 수 있을 것임.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마련된 공공건축물, 투표소 설치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지침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음

[표 41] 업무분야별 관련 인권목록 및 예시

업무 분야	세부 항목	예시
교육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차별 방지 대책의 준비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생할인 또는 혜택(공공요금), 각종 행사참가자격 제한 예) 학생증을 활용한 학생할인제도, 공모전 참가자격 '초·중·고등학생'으로 제한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어린이 놀이공간 미조성
	장애인 학습권	관련 편의시설이나 지원서비스의 준비와 실효성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이주노동자의 자녀, 탈북민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춘 교육기관 및 시설 준비
복지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차단 복지관 경로식당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판매 제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및 대안 마련
일자리/경제	노동자 안전/보건권	작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 및 보건권 보장 상비약 구비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인권(공정계약, 휴식권, 임금 등)보장체계 미비
	이주노동자 인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공정계약, 휴식권, 임금 등)보장체계 미비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휴게시간, 노동시간, 노동강도 및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유무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표 또는 상호 등 무단도용)에 대한 방안
	사회적 약자의 일할 권리 침해 가능성	청년고용정책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정책 마련 여부
환경	(환경 위협으로부터의) 생명권	폭풍,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후변화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 및 노력 여부
	(환경 위협으로부터의) 건강권	
	(환경 위협으로부터의) 주거권	
	환경권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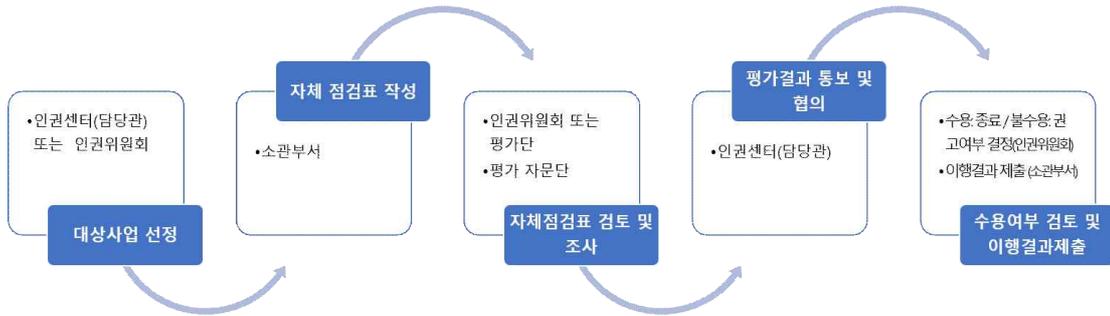
안전 재난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재난 대응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받을 권리 보장 여부 재난 발생,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알권리
	참여의 권리	안전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마련 재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 보호권	CCTV 설치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대피소 및 임시거주시설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주거권 보장	재난시 재난피해 이재민 외에 안전취약계층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홀몸 노인 등)에 대 한 주거권 확보
	안전권 보장	재난 상황 발생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재난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학습 권 침해 발생 가능, 대응방안 마련 여부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지정 대피소로 대피하는 이동상의 어려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미설치
	개인정보보호	안면인식 CCTV설치로 인한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부동산/주택 / 도시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재개발시 강제철거로 인한 주거권 침해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및 공해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여부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시계획 및 설계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예) 장애인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핸드레일 및 승강기 설치, 단차제거, 수유실 설치, 휠 체어 구비 등
도로/교통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폭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	신호등 정비 및 자동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확보)	유무
생활/문화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접근성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지원여부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노인복지관 또는 요양센터 등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방지에 대한 교육 등의 준비
보건/건강	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돌봄과 동행서비스 등 마련여부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증진방안 마련 여부 예) 사회적 인프라 구축, 건강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화, 이동, 의사소통, 시력 제한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증진방안 모색
일반행정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 공고문의 주요내용상 부당요소 실효된 전과로 인한 불합격 연령, 국적·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인사상 차별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열람 및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사업·정책 및 민원 사무에 대한 충분한 제공을 통한 자기결정권 부여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상여금, 복지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

#### 4)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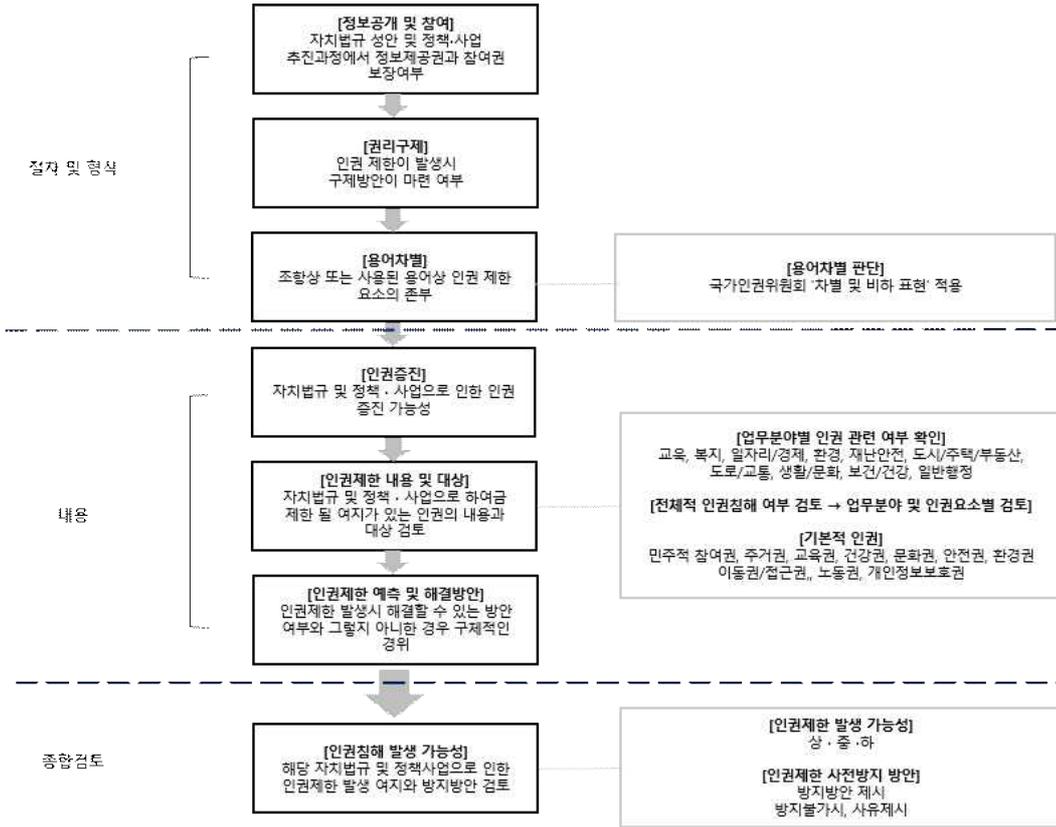
-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각 세부적인 절차와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본 지침(안)은 소관부서의 사업담당자가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로서 설계되었는데, 먼저 1)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그 선정 기준이나 선정 사업을 인권센터(담당관)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2)소관부서 사업 담당자는 자체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3)제출된 자체점검표를 인권위원회 또는 평가단, 평가자문단 등 평가의 최종 주체가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평가를 내린 후 4)그 결과를 인권센터(담당관)이 사업부서에 통보 및 협의함 5)소관부서에서 수용여부의 검토 및 이행결과를 제출함

[그림 19] 인권영향평가 절차: 정책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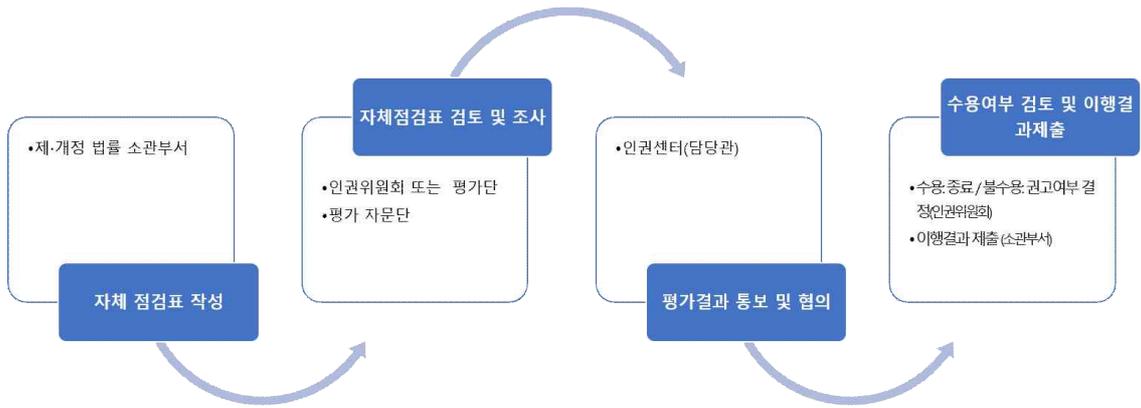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선정은 우선적으로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인권 담당관, 또는 인권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인권정책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부서 자율적인 참여가 함께 요청됨. 이는 본질적으로 정책과 사업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인권정책영향평가의 특징과 연결되며,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담당자와 인권 관련 부서의 이해가 일치될 필요가 있는 것임
- 인권정책영향평가대상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는 우선 자체 점검표를 참고하여 각 체크리스트별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아니요”와 같이 인권 영향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 보다는 인권 영향을 전제된 사항에서 정책 및 사업이 인권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자체 점검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후, 소관 부서가 작성한 자체 점검표는 인권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을 통해 검토 및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정책 및 사업을 집행하는 소관부서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전략 집단(target population)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달리, 외부 평가기관 또는 자문단은 전략 집단 이외의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임
- 인권센터 및 인권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자체 점검표를 평가 자문단에 송부하고 평가 자문단은 자체 점검표에 대한 평가 의견을 첨부하여 인권센터에 재송부할 수 있어야 함.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간사로서 평가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며, 최종 평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인권위원회가 없는 경우)에서 진행하도록 함
- 최종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수용 및 불수용에 대한 의견을 소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고, 소관부서는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정책영향평가의 과정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0] 인권정책영향평가 순서도: 정책·사업



- 자치법규의 경우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가 그 대상이 되므로, 1)소관부서에서 자체 점검표 작성으로 시작하여, 2)제출된 자체점검표의 검토 및 조사는 인권위원회 또는 평가단, 평가자문단 등에서 최종 평가를 내린 후, 3)그 결과를 인권센터(담당관)이 사업부서에 통보 및 협의하고 4)소관부서에서 수용여부의 검토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됨

[그림 21] 인권정책영향평가 절차: 제·개정 자치법규



## 5) 인권정책영향평가 점검표(안)

- 제·개정 법률과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표는 부록으로 제시함

## 제 4장

# 인권노력도(친화도)

---

제1절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노력도

제2절 사후적 인권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제3절 인권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제4절 인권노력도 평가체계 운영 및 보완



## 1.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노력도

### 1) 사후평가로서 인권노력도 개념

#### □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평가

- 행정 및 공공기관의 활동의 산출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함
  - 만약 특정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라면 그 생산품에 품질검사를 해서 의도했던 기능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는 각각의 개별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조직운영원리의 주요 가정은 조직의 운영방식이나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산출물도 그 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임
  - 이는 조직의 내부적 절차 또는 운영방식에 특정한 가치적 요소가 강조되거나 해당 가치가 조직 내에 제도화되면서 그 조직의 정책이나 서비스도 해당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함
  - 즉, 정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정책을 산출하고 서비스를 집행하는 조직 체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정책과정의 집행자이자 결정자로 참여하는 행정기관은 정부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적 요소를 조직 운영의 주요 원칙이나 제도 내에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
  - 정부, 행정기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인권친화적(human-rights friendly)한 정부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때 인권친화의 개념은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정적 측면에서의 인권 친화는 조직 운영, 행정 활동, 정책 과정 상의 여러 공적 활동에서 정부가 투입하는 노력과 자원의 방향, 수준, 내용 등을 반영하며,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며, 절차와 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 있는가의 투입 및 과정적 요소를 강조함
-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 친화는 이러한 정책 및 행정 활동의 결과물로 정부 구성원이 인식 및 체감하는 인권의 수준과 연관되며, 인권 보장과 증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강조함
  - 인권 친화는 인권을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인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인해 인권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친화”의 이상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활동과 조직구현 노력 등의 과정적 또는 투입적 요소에 주목한 “인권노력”의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인권의 사후적 평가로서 “인권친화적” 조직 또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책 과정의 주요 활동을 평가하는 “인권노력”을 평가할 것을 제안함
- 인권친화의 정책 목표 달성이 최종적인 평가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각 조직이 추구하는 인권 또는 인권친화의 최종적인 결과/상태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간 합의와 공동의 이해를 확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는 결과적 측면에서 구현된 인권친화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로서 평가자 간 일치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의 신뢰성의 한계를 가짐을 의미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목표 달성의 결과적 측면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 설계의 적절성, 관련 수단 활용 및 집행의 충분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가도구를 통하여 인권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제도 정비와 가치의 내재화, 그에 따른 조직 문화 및 풍토의 변화를 위한 활동 등의 과정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 □ 인권노력도의 정의 및 목적

##### ○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의 비교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면서 윤리경영이 주요한 조직운영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관의 윤리경영은 크게 반부패·청렴(anti-corruption), 인권친화(human-rights friendly), 투명성(transparency)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윤리경영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 윤리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 방식으로 재무적, 법적, 사회적 책임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하며, 반부패, 투명성 및 청렴성을 강조함
- 비교하여, 인권경영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실행하는 등의 조직운영과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8; 김동철·김정원, 2021)

-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에게 부여된 책임의 이행에 대한 것이라면,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를 가짐.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의 준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운영방식이라면 인권경영은 권리의 최소한의 침해와 다양한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조직의 운영 상의 목표로 정의함.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즉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권노력도는 다음과 같음

- 인권노력도란 1)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서 조직 내·외부 고객과 이해관계자(즉, 조직 내부 구성원과 조직 외부 이해관계자(주민 등))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하고, 그 침해를 구제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2) 제도적 측면에서 인권체계의 구축, 인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적 활동의 제도화 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인권노력도의 내용적 측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행정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활동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서의 제도화와 총체적 인권 및 개별적 인권의 주류화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진행과 조직 문화 및 풍토의 조성을 평가 내용으로 함
- 인권노력도의 제도적 측면은 인권 경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인권현장, 인권의 제도화와 거버넌스의 구성, 인권 침해 구제 절차의 공식화 및 제도화 등을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권 분야 정책의 계획과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투입을 평가 내용으로 함

## 2) 관련 평가 현황

### (1) 과정 및 결과적 관점에서의 인권 노력도 평가 도구

- 행정 및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기관의 노력을 과정과 결과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도를 일부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 관련 쟁점을 각 시대별 맥락과 연계하여 조사 중에 있음
  - 기관 단위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개별 기관의 인권에 대한 절대 및 상대적인 측정 및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로 연결되며, 인권지수와 인권감수성과 같은 결과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평가 지표가 일부 개발되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의 기관 운영에서의 인권 측면의 노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인권경영체크리스트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는 중임

□ 인권실태조사(한준 외, 2020)

- 인권실태조사는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민의 인권의식, 국내인권상황평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관련 쟁점에 대한 여론,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방안을 설문조사
- 조사는 인권의식, 인권침해 및 차별, 인권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으로 구성
  - 연간통계조사의 형식을 가진 인권실태조사는 각 부문별 세부 설문문항 관련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면서 일부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삭제하고 있음
  -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인권존중 및 인권인지에 대한 측정
  - 인권침해 및 차별은 인권존중정도에 대한 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취약집단에 대한 상황평가,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 수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응
  - 인권관련 쟁점: 정보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등의 인권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 국가기관 인권지수 (구정우 외, 2011)

-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인권개념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권친화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면서, 국가기관의 인권지수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음
- 대표적으로, 구정우 외(2011) 연구가 제안한 국가기관 인권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이하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모형과 유사한 구성을 채택하였음
  - 국가기관 인권지수는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청렴도 측정모형과는 차이를 가짐
- 주관적 차원은 조직을 대상으로 소속기관의 내부구성원이 인권의식을 스스로 진단하는 내부자평가와, 해당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경험한 외부자들이 동일 기관의 인권의식을 평가하는 외부자 평가로 구성
  - 주관적 차원의 내부자평가에는 인권인지도(인권친화성), 인권보호수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침해시 해결기제 및 제도 유무, 인권친화적 리더십의 여부, 인권교육 실시여부, 그리고 해당업무(서비스)를 실행할 때 인권기준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 주관적 차원에서 외부자평가는 외부자가 해당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서 외부자는 업무협력을 하는 유관기관, 각종 위원회 참석인사, 또는 해당업무 관계자이며, 주요 측정 개념은 해당기관의 인권보호 수준,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유무, 인권친화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 업무(공공서비스) 과정에서 인권기준 고려 여부가 포함
- 객관적 차원은 해당 기관의 정책적 노력과 그 결과로 구성. 구정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기관의 인권개선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관리지표를 발굴하였음
- 객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관리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배분 및 인력배치, 그리고 제도·프로그램적 운영으로 구성
  - 객관적 차원의 정책적 결과는 관리지표의 개선정도와 국민의 정책노력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 국가기관 인권지수 개발안(2011)

차원	세부영역	지표	평가 방식
주관적 차원	내부자 평가	인권인지도	내부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반영
		인권보호수준	
		인권경험 (침해 및 차별)	
		해결기제/제도	
		리더십	
		인권교육	
		서비스 제공시 인권기준 고려	
	외부자 평가	인권보호수준	외부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반영
		인권경험(침해 및 차별):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리더십	
서비스 제공시 인권기준 고려			
객관적 차원	정책적 노력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재정투여	계량 평가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인력배치	비계량 평가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비계량 평가
	정책의 결과	관리지표의 개선 정도	계량 평가
		국민들(전문가 포함)의 정책노력 평가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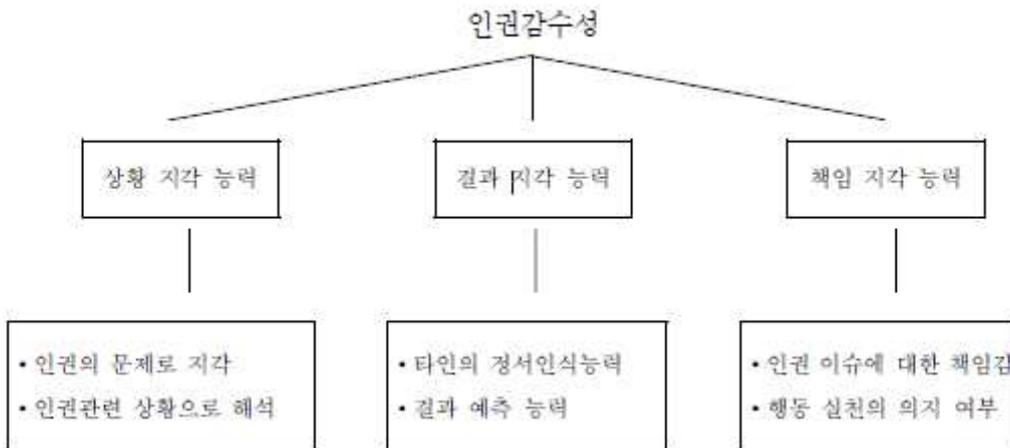
(출처: 구정우 외, 2011)

□ 인권감수성지표 (문용린 외, 2002)

- 문용린 외(2002)는 도덕적 민감성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인권감수성 지표를 설계하여 제안하였음

- 레스트(Rest, 1986 & 1994)는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민감성, 도덕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성격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도덕적 민감성은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상황을 도덕적 상황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는 정도, 도덕적 판단력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도덕적 동기화는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과정, 도덕적 성격은 용기를 가지고 기술을 실행하는 과정임
  
- 도덕적 민감성이 인권감수성의 바탕이 되는 개념일 때,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상황을 해석하고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인권문제의 결과를 지각하는 과정을 말함.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권감수성에서 상황지각능력이란 사회문제에 대하여 인권을 문제를 지각하는가와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인권관련 상황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한 능력임
  - 인권에 대한 결과지각능력이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지와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임
  -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책임지각능력이란 인권이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지와 사회변화에 대한 행동 실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세분화할 수 있음(조혜영, 2021)

[그림 22] 인권감수성의 하위구성



(출처: 인권위, 2002)

□ 인권위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2011 UN 기업과 인권의 이행지침을 발표(인권위, 2014)
  - 인권경영에 가장 권위있는 문서로 이 지침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기업의 인권정책선언과 실천점검의무가 확산

-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 및 존중해야함. 모든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기업 소재지의 지역주민, 기업의 협력회사의 인권을 말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환경권, 소비자인권으로 10가지의 운영원칙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간이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음
- 응답은 예, 아니오, 보완필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구성하였음. 해당없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인권위의 체크리스트가 특정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보편적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임

[표 43] 국가인권위의 인권경영체크리스트

분야	항 목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인권중심의 책무를 대외하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②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③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④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⑤ 회사는 인권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⑥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소 계					
☐ 채용상의 비차별	①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소 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회사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회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소 계					
☐ 강제노동의 금지	①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② 회사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등 다른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소 계					
☐ 아동노동의 금지	①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②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③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소 계					
☐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직하도록 유지한다.					
	②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③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⑤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					
	소 계					
☐ 취약민간기업의 인권관리	① 회사는 모든 주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② 회사는 실무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③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소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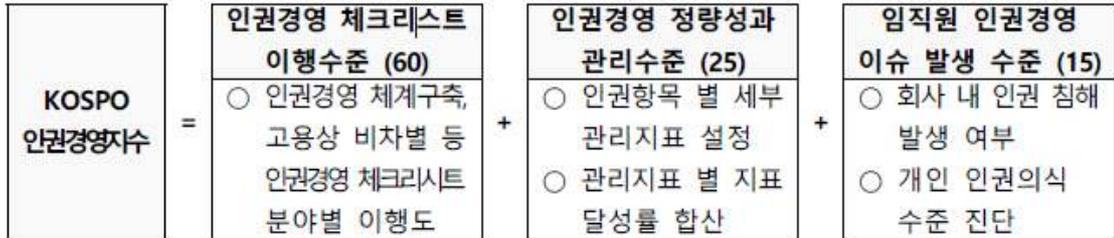
☐ 남부발전 인권경영지수(KOSPO 인권경영지수)

○ 인권위에서 2018년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서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가 해당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 남부발전의 발전업은 외부전문기관과 협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발전소 설비·시설 운영 및 신규 건설사업 운영과정이 고려되어야 함

- KOSPO 인권경영지수는 인권경영체크리스트 이행 수준(60), 인권경영 정량성과 관리수준 (25), 임직원 인권경영이슈발생수준(15)으로 구성되었음

[그림 23] KOSPO 인권경영지수 구성



[표 44] KOSPO 인권경영지수 지표

영역(총점)	구분	배점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이행수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
	고용상의 비차별	5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차유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4
	아동노동의 금지	4
	산업안전의 보장	4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4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
	환경권보장	4
	개인정보 보호	4
	이해관계자 참여	4
	발전사업 상 인권영향	5
신규사업 인권영향평가	5	
인권경영 정량성과 관리수준	임직원	17
	협력사	2
	환경권	6
임직원 인권경영이슈발생수준 (설문조사, 15)	인도적 대우 및 차별금지	3
	적법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2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2
	소비자 및 지역사회 인권보호	2
	직장내 성희롱	3
	직장내 괴롭힘	3

(2) 반부패 및 청렴 분야 기관 노력도 평가: 청렴도평가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평가 운영현황

- 청렴도평가는 1999년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부패진단시스템으로 ‘청렴도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3년간의 시범조사를 실시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음
  - 청렴도평가 이전에는 개인의 심리적·주관적 관점에서 평가되었지만, 청렴도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는 보다 실체적·객관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짐(국가인권위, 2020)
  - 청렴도평가제도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함께 부패에 대한 경험을 함께 조사하여 부패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하였음

[표 45] 청렴도평가제도 변천과정

이원평가체계		종합평가체계
도입기	성숙기	
청렴도는 외부청렴도만 -민원인대상 설문조사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내부청렴도 도입 (2007년) - 내부직원대상 설문조사 - 청렴문화, 업무청렴 •부패사건지수 감점제도 도입(2011년) - 징계자료(징계자 직위 및 금액)에 근거하여 점수화 - 정무직 및 임직원의 부패사건 평가 •정책고객평가도입(2012년) - 전문가, 정책관련자, 지역주민	•청렴체감도 - 외부청렴도 및 내부 청렴도 - 민원인 및 내부설문조사 •부패실태 -기관별 부패사건발생현황 -감점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 기관운영체계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 반부패대책추진체계, 기관장노력도, 제도개선 등을 평가	•청렴노력도 -반부패추진체계평가 -부패방지시책효과성평가 (내부직원설문조사)
2002년~2006년	2007년~2021년	2022년~

○ 이원평가체제에서 종합평가체제로 개편

- 청렴도평가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동안 청렴도와 부패방지사책을 평가하는 이원평가체제였지만, 2022년부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실태의 종합평가체제로 개편되었음 (국가권익위원회, 2019; 민경선, 2020)

□ 종합청렴도 구성체계(권익위, 2021)

○ 외부청렴도

-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에 의한 평가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짐
-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세부문항을 구성
  -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적극성, 부당한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부패수준
  - 부패경험: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공직자의 요구나 수수 등의 부패수준
- 2014년부터 외부청렴도의 외부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음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함
-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세부문항이 구성됨
  - 청렴문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수준을 측정
  - 업무청렴: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 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함
- 조직내부절차와 그 관행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지시 등과 같이 조직 내 구조적인 부패를 진단하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의 인식과 실질적인 경험을 측정함
- 2014년부터 내부청렴도의 내부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서 반영하고 있음

○ 부패사건발생현황 반영

- 실제 부패행위가 발생한 정도,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의 직위와 부패금액을 반영하여 점수화함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감사자료,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부패사안에 대한 부패금액 및 당사자의 직위를 반영한 점수화
  - 부패금액 및 내용, 부패행위의 관행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여 점수화

□ 부패방지시책평가 (권익위, 2022)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부패방지노력과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2002년에 도입하여 2021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청렴노력도 지표로 개편되어 평가됨
-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대국민 영향력이 큰 중앙행정기관(중앙정부1유형, 2유형),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청렴도 평가가 2년연속 2등급이상이며서 당해시책2등급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평가지표는 3가지 주요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국민권익위, 2021)

- 청렴향상 직결지표: 기관장 및 고위관리자의 노력도를 측정
- 범정부대응체계지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패 및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계구축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임
- 청렴교육 기반구축지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지표임

#### □ 부패방지시책의 변천과정

○ 청렴도평가의 부패방지시책은 해당 기관의 운영체계를 평가를 말함. 2004년부터 실시한 부패방지시책의 평가체계 및 지표는 지속적으로 지표를 수정하면서 개편되어 왔음

-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초기에는 공통과제와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지만, 2004년도에는 청렴도평가 및 부패잠재성업무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13년부터 기관특성에 맞는 과제를 대상으로 하다가 2014년에 '부패방지시책평가'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어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고위직 청렴교육 강화 등의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하였음
- 부패방지시책평가의 내용에 따라 1기(2004-2007), 2기(2008~2011), 3기(2013~2015), 4기(2016~2021), 5기(2022~)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말함.

- 2004년도에 청렴도중점과제, 공통과제, 제도개선권고과제,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기관평가를 시행하였음. 청렴도 중점과제에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하고, 공통과제에서는 행동강령이행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등의 제도운영실태와 그 실적을 평가하였음. 제도개선 권고과제는 권고안의 수용도 및 반영적시성을 평가하였으며, 자율과제는 기관에서 선정한 과제로 해당과제가 부패개념과 잘 연관되었는지를 비롯하여 구체성, 효과성 창의성을 평가하였음
- 2005년부터는 평가체계를 부패방지체계-부패방지노력-부패방지성과와 같이 3부분으로 나누고 그 세부항목을 재편성하였음 부패방지체계부문에서는 해당 기관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조직체계, 기관장의 관심도, T/F의 활동을 평가하였음. 부패방지노력부분에서는 제도개선종합대책, 반부패교육,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제도를 평가하였으며 부패방지 성과 부분에서는 해당 기관의 민원인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6년에는 2005년과 같은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한 것을 유지한채로, 부패방지체계부분에서는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부패방지노력에는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개선대책, 행동강령 이행수준 및 신고활성화제도,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수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음
- 2007년도에는 2006년의 부패방지체계 및 부패방지 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패방지성과지표를 일부 수정하였음. 부패방지성과지표를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결과와 함께 각 성과지표별로 지표설정 및 목표설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표 46] 제1시기의 부패방지시책 비교

시기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4		청렴도중점과제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내용의 충실성
		공통과제	행동강령이행, 반부패 교육 및 홍보의 제도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	권고안의 수용정도, 반영 적시성
		자율과제	부패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창의성 등
2005	부패방지 체계부문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추진동력 체계를 구축, 기관장의 관심도 및 T/F 활동 등을 평가
	부패 방지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유발요인개선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추진실적, 실천의지 등
		반부패 교육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교육활동의 성과와 추진방식의 적절성·독창성을 평가
부패방지 성과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청렴도(민원인대상)	
2006	부패방지 체계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T/F활동 등
	부패방지 노력	기관장 노력도	기관장의 분위기 조성, 솔선수범 등
		제도개선 종합대책	과제발굴노력, 이행실적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	(중앙행정기관만) 평가수용도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실적 등
		반부패 교육 및 홍보	1인당 교육실적 등
부패방지 성과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및 개선도	
2007	부패방지 체계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T/F활동 등
	부패방지 노력	기관장 노력도	기관장의 분위기 조성, 솔선수범 등
		제도개선 종합대책	과제발굴노력, 이행실적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	(중앙행정기관만) 평가수용도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실적 등
		반부패 교육 및 홍보	1인당 교육실적 등
	부패방지 성과	대민·대관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및 개선도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	

○ 제2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말함. 이 시기에는 평가분류를 공동시책평가와 자율시책평가, 그리고 부패방지성과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음

- 공동시책평가에는 반부패대책추진체계,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개선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그리고 반부패교육 및 홍보가 포함됨. 제1시기를 거쳐서 제2시기에서는 공동시책평가라는 분류로 기관평가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

- 하였다고 평가됨
- 자율시책평가는 2008년부터 반부패수범사례와 자율시책권장사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기관별 부패행위를 막기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도화 되었다고 평가됨
  - 부패방지성과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임

[표 47]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변천 (2008~2011)

2008		2009		2010		2011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기준
공동시책평가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공동시책평가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공동시책평가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공동시책평가	반부패대책추진체계
	기관장 노력도		기관장 노력도		기관장 노력도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자율시책평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자율시책평가	반부패 수범사례	자율시책평가	반부패 수범사례	자율시책평가	반부패수범사례
			자율시책 권장과제		자율시책 권장과제		기관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실적
부패방지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 제3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를 말함. 2012년부터는 반부패경쟁력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가 개편되었음. 이에 평가항목에 “반부패”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반부패의지노력부분과 부패방지성과 부분으로 개편되었음
- 2012년에 개편된 반부패경쟁력평가(부패방지시책평가)는 반부패의지노력 부분에 반부패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 및 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및 개선,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그리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활성화로 구분되었음

- 반부패인프라구축은 과제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등의 조직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를 평가하였으며, 정책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는 업무추진비 등의 조직활동의 투명화 및 민관협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부패유발요인제거 및 개선부문에서는 기존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수준을 평가,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개선은 기관장의 의지 및 청렴교육의 활성화를 평가,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에는 부패신고자 보호 등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었음
- 부패방지성과는 종합청렴도 및 청렴개선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종합청렴도는 기존의 청렴도측정결과와 함께 부패행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점하도록 설계하였음
- 2013년도에는 2012년의 지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채, 부패방지성과 부분 내에 종합청렴도의 하위지표였던 감점지표를 하나의 주요 부분으로 개편하여 반부패의지노력-부패방지성과-반부패시책추진협조(감점지표) 부분으로 재구성하였음. 실질적으로 조직 내 부패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조직차원에서 높였다고 평가됨

[표 48]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변천 (2012~2015)

2012		2013		2014		2015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기준	평가분류	평가기준
반부패 의지 노력	반부패인프라구축		반부패인프라구축		반부패인프라구축		반부패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반부패의지 노력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반부패의지 노력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반부패의지 노력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방지 성과	종합청렴도	부패방지 성과	청렴도개선	부패방지 성과	청렴도개선	부패방지 성과	청렴도 개선
	청렴개선도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공직자 발생
별도감점지표 없음		감점지표	반부패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반부패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반부패시책 추진협조

- 제4기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를 말함. 2016년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시책도 영향을 받아 개편되었음
- 계획-실행-성과확산-감점 등의 3+1 체계로 개편하였음. 계획부문은 부패방지계획수립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으며, 실행은 청렴생태계조성수준 및 부패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의 수준 그리고 청렴문화조성에 대한 평가이며, 성과확산에서는 반부패수범사례 및 그 확산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이 시기에는 감점지표가 포함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조직의 부패 행태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조직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2017년에는 부패방지시책개발부문을 포함시켜서 해당 지표에 대한 개선 사항 및 하위지표에 대한 개발을 위한 부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 2019년부터는 실행부분에서 청렴생태계라는 지표로 하위지표를 일원화하여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 문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표 49]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변천 (2016~2018)

2016		2017		2018	
계획	부패방지계획수립	계획	부패방지계획수립	계획	부패방지계획수립
실행	청렴생태계조성 부패위험제거개선 청렴문화정책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개선 청렴문화정책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정책
성과 확산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및 확산	성과 확산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개발 및 확산	성과 확산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개발 및 확산
감점	부패외부적발 및 시책협조	감점	부패외부적발 및 시책협조	감점	부패외부적발 및 시책협조
		부패방지시책개발			
2019		2020		2021	
계획	반부패방지 계획수립	계획	반부패방지 계획수립	계획	반부패방지 계획수립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부패통제실효성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성과· 확산	성과 확산	부패통제 실효성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성 과·확산	성과 확산	부패통제 실효성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감점	부패방지제도운영	감점	부패방지제도운영	감점	부패방지제도운영

□ 2022년 새로운 부패방지시책 도입

○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개편하였는데, 2021년과 2022년 지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21년에는 평가부문이 계획- 실행-성과-확산-감점의 4단계로 구분되지만, 2022년에는 추진체계-추진실적-효과성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음
- 2021년의 부패평가시책의 지표를 일부 포함하여 2022년에는 각 기관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세부지표를 추가하였으며 가점 지표와 감점지표를 포함하여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기대

[표 50]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2021)

평가부문	평가영역	단위과제	평가지표
계획	반부패 계획수립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정책 참여확대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부패방지제도구축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부패통제 실효성확보	부패위험제거노력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 <sup>9)</sup>
		부패방지제도운영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
성과·확산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반부패정책성과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행
		반부패정책확산노력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sup>10)</sup> ▪ 반부패 문제 대응을 위한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감점	부패방지 제도운영	부패방지제도운영 충실도	▪ 부패·공익신고자보호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21),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시계획

9) 공직유관단체에만 적용되는 지표임

10)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표 51] 2022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체계(안)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안)
[1] 청렴 정책 추진 체계 4개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성과 대내외 홍보 등</li> </ul>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li> </ul>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li> </ul>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수요 발생시)</li> </ul>
[2] 청렴 정책 추진 실적 8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li> </ul>
	⑥ 부패방지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이행 및 자치법규·사규 개선</li> </ul>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기관의 청렴 교육 이수현황 공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li> </ul>
	⑧ 외부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li> </ul>
	⑨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처분 기록관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실태점검 및 조치, 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li> </ul>
	⑩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포털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및 청렴활동, 신고·상담·적발 사례 및 지침 공개,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li> </ul>
	⑪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li> </ul>
	⑫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li> </ul>
	⑬ 가점 <b>특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운영, 5.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li> </ol>
	⑭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b>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li> </ul>

\* <특화>라고 표시된 지표는 단계별 지표를 적용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정원 300명 미만의 중소형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지표에 해당함

\* 출처:국민권익위(20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안내서

## 2. 사후적 인권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과정 및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현황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 사후적 인권평가제도는 인권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인권 또는 인권 노력의 내용과 이상적 수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인권 노력에 관한 도구들은 기관의 인권 경영과 관련한 거버넌스적 관점의 수준에 주목하고 있으나, 인권 경영의 거버넌스의 현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적정하게 측정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짐
    - 최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조직 운영과 기관의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 침해 요인을 발굴하는데 주목하고 있으나, 자율적 평가 및 내부적 평가의 형식을 주로 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위의 인권경영체크리스트를 기본 모형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관의 인권 전담 부서 또는 구성원이 인권경영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관 내에서 설치한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으나, 인권영향평가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대상이 내부 이해관계자이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평가의 기획과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내부적 평가의 특징을 강하게 가짐
  - 인권 또는 인권 노력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초점을 달리하는데, 인권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증진, 보호, 및 침해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며 인권노력에 대한 평가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의 노력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차이를 가짐
    - 기존 인권영향평가 중 인권의식실태조사, 인권지수, 인권감수성 등의 도구들은 인권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며, 결과적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경영체크리스트 및 인권영향평가 등의 도구들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지향하며, 주로 과정적 차원에서 인권 취약 요인의 제거 및 인권 주류화와 같은 조직 문화 및 제도의 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적 성격을 가짐
  - 인권 현황 평가는 기관 내부 구성원의 인권 인식 조사와 기관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인식 조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내부 평가로서의 인권 영향평가는 주로 내부구성원의 인권 침해 경험 및 인권 관련 인식을 측

## 정함

- 인권 침해 경험은 주로 성희롱, 성차별, 갑질 및 폭언 등과 같은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규정 적용과 관련되며, 특정 행동 또는 결정의 경험 또는 관찰의 빈도로 측정됨
  - 인권 침해는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외 불특정한 대상과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며, 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기관의 추진 체계와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는 주로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패널 형태의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빈도의 변화를 추적하며, 인권 침해 취약 요인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하지만, 인권 침해 경험이 주로 반부패·청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조사되고, 인권 관련 제도 및 문화가 이들 부서를 통해 조성 및 변화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인권 관련 전담 부서와 조사 및 제도 개선 담당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함
- 인권 노력 평가는 기관의 인권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인권 추진 체계의 구축 및 거버넌스의 상황,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등의 노력을 평가함
- 인권 노력 평가는 기관의 인권 경영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권 경영의 제도화 수준, 인권 경영을 위한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기관 문화 조성, 인권 인식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관의 제도와 사업, 그리고 인권 침해 경험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인권 노력 평가는 인권현장 및 인권경영선언문의 작성과 같은 선언적 또는 상징적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정책 및 접근을 부각하는 등 행위 중심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기관 고유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의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한계를 가짐
  - 또한, 인권 관련 제도화가 기관 차원에서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일로 한정되어, 인권 교육 및 사업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함. 이는 대부분의 인권 관련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구성원의 참여 보다는 인권 정책 담당 부서의 고유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됨
- 인권 주류화 및 인권 제도 운영에 대한 통합 기구의 역할 부재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측정은 중앙행정기관이 청렴 및 반부패와 관련한 국가 정책을 하향식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짐.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권익위가 평가를 총괄함으로써 타율적 및 외부적 평가의 틀을 갖추고 있음
- 청렴도 측정은 사후적 인권평가제도의 형식을 대체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 있는데, 내부 구성원, 외부이해관계자, 실질적인 부패사건을 반영하는 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이해관계자 설문 등의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조사 도구에 반영되어 있음
- 다만, 기관의 제도적 또는 구조적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가변적이며, 특히 국가 단위의 반부패 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의 확산을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고 있어 국가 정책의 공공기관의 확산을 위한 강제적 제도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함
- 기관의 인권 노력에 대한 평가도구로서의 인권지수의 경우 청렴도 측정과 유사한 구조로 제안되었지만 객관적 지표의 관리지표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관적 지표에서 기관별 주요 인권이 무엇인지와 같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며, 보편적 평가 도구로서의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인권경영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가 기관 자체의 자율 및 내부적 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 역시 기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일부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통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외부 및 타율적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개별 평가제도가 평가주체를 달리함으로써 평가의 내용 및 형식에 차이가 있어 공공기관의 인권 관련 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및 지방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함.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인권 관련 기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경험은 있으나, 평가 자체가 상시화되어 있지 않고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 환류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도 함
- 그 외 인권 감수성조사는 에피소드형식의 설문문항 구성이 필수적이며 각 기관별 인권상황을 고려한 에피소드를 구성해야 함
- 조사 대상별로 에피소드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은 기관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관의 인권 현황에 대한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는 타당성의 한계를 가짐
  - 기관 상황과 관계 없는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경우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의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있는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경우 조사 과정의 노력 대비 조사 결과의 대내외 활용에 있어서 효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함
- 요약하면, 기존의 다양한 인권평가제도는 불특정 다수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인권 관련 인식이나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고,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에 따라서 각 조직의 자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친화적 조직운동을 위한 원리

○ 정부가 인권에 기반 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팬더원칙(PANTHER principles)에 따른 접근이 제시됨(정영선, 2014)

- 패널(PANEL)원칙은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권한강화(empowerment),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의 다섯 가지 원칙을 의미하며 각 요소의 첫 글자를 따서 PANEL원칙이라고 함
- 팬더(PANTHER)원칙은 기존 패널원칙에 투명성(transparency), 인간 존엄(human dignity),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가된 원칙임(FAO, 2021)
- 조효제(2015)는 인권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때 팬더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및 행정기관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일수록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

○ 각 기관들은 PANEL원칙을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가하여 새로운 원리를 구성하고 있음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에서는 투명성(transparency)를 추가하여 PLANT원리라고 칭함
- UN 식량농업기구는 의무부담자에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명성(transparency), 인간 존엄(human dignity),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가하여 PANTHER 원칙을 제시하였음.
- 의무부담자(duty-bearers)는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거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며, 이에 대칭적인 행위자로 권리보유자(rights-holders)는 인권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함(성하은&김혜정, 2021)
- 정부조직으로 대입해본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인 의무부담자이고, 시민이나 주민, 그리고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은 권리보유자라고 할 수 있음

○ PANTHER 원칙은 인권행정에서 조직운영원리로 학교,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조효제, 2013)

- 참여의 보장: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부담자인 조직인은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 또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책무성: 조직은 권리보유자의 인권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 다시말해서 조직은 서비스나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차별없음: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히 차별적이라고 간주해야한다는 가정에 따라서 정책이나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이 개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

- 직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함
- 투명성: 조직은 권리보유자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공개된 정보가 교육수준이나 전달방식에 따라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수준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그 전달방식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함
  - 인간존엄: 권리보유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위엄을 지켜주는 것을 말함.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존엄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자력화: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권리보유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야 하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 권리보유자가 그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함
- 인권친화적 조직과 관련한 다른 원칙으로 인권기반적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은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을 개발계획, 정책 결정, 시행평가 전 과정 적용하는 개념 틀임
- 인권기반적접근에서 말하는 인권(human rights)은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원칙과 방법을 말하며 기반한(based)라는 의미는 특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며, 접근(approach)이란 실행을 위한 정책 도구라는 것을 말함(한국인권재단, 2015, 성하은&김혜정, 2021)
  - 인권기반적 접근은 인권의 속성에 따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국 정부(의무부담자)와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요중심(need-base) 개발협력적 접근법과는 비교됨

[표 52] 인권에 근거한 운영의 특징

Needs-based Approach	Human Rights-based Approach
결과를 위한 업무	결과 및 과정을 위한 업무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강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
권한 부여 없이 요구에 충족	권한부여를 통한 권한 실현
협업적 프로젝트	부문 간 또는 총체적 프로젝트
사회적 맥락 만에 초점, 정책에 무관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시민적 맥락 정책지향적

출처:캐나다 국제개발청(2001)

- 인권친화적 조직운영원리로 팬더원칙과 인권기반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 인권친화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의 팬더 또는 PANEL 원칙은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나 각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주로 조직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보장,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책

무성 제고, 비차별 및 차별에 대한 무관용, 인권 관련 행정에서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권한 공유 및 강화, 법 및 규정의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인권친화적 조직의 구현의 모습이 각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모습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

- 인권은 조직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바탕 위에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인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상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은 각급 조직과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반영하여 왔음
- 하지만, 각급 기관의 인권수준과 인권취약분야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며, 예방적 및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인권 수준의 대한 정보와 비교 및 벤치마킹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취약 분야 및 반부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 및 진단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하향적·통합적 관리도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수준 평가 제도와 비교하면, 인권 수준과 인권 취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 대한 측정 및 진단 목적의 평가체계는 미비한 수준임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 등의 도구가 존재하나, 개인이 지니는 인권에 대한 심리적 기대와 준거의 차이로 개인별로 인권 수준의 측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로 인해 인권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 정보로의 활용과 환류 기능이 미약할 수 밖에 없음
- 개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조직문화와 내부 업무, 대민 및 대기관 업무 단위에서의 인권 수준에 대한 진단과 기관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공통 도구는 기관별 인권 수준 및 인권 취약 분야의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기관의 제도 개선 및 기관 간 학습을 통한 자체적인 인권 보호 노력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인권 인식 및 실태 조사가 사회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조사 대상 단위에 맞는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인권 수준에 대한 공통 도구를 전체 국민이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관의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권 수준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의 인권 정책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의 인권 정책 및 인권 경영의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이는 각급 공공기관별로 추구하는 인권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국가의 인권 정책과 연동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수준으로 인권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인권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필

요성과 연결됨

### 3. 인권노력도 평가지표 설계

#### 1) 인권노력도 구성

##### □ 인권노력도 측정의 개념

-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인권노력도는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수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 가능한 상태로 바꾸어 실증적으로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적(conceptually) 및 조작적으로(operationally)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사회과학방법론에서는 측정을 측정 대상의 속성에 대해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속성을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concept)과 측정 이후에 정성 및 정량적으로 값을 부여 받은 변수(variable)가 구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인권친화도는 과정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등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 업무를 수행한 정도” 그리고 결과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내·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인식 및 경험하는 인권의 수준”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과정적 관점과 비교하여 결과적 관점의 추상성과 모호성의 수준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의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과정적 관점이 보다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수준으로 체계화가 가능함
  - 과정적 관점에서의 인권친화도는 인권노력도의 수단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 구성원이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인권 수준을 투입과 노력을 중심으로 한 과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내부 이해관계자의 제도화 노력과 내용의 충실화의 관점에서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함
  - 제도적 관점은 주로 조직 차원의 노력을 반영하며, 인권 경영을 위한 주요 체계, 즉 인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구성, 인권경영을 위한 규칙 및 규정 등의 제도 정비, 인권 주류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집중함
  - 내용적 관점은 인권 관련 제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행태의 변화, 특정 부서가 아닌 전사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 주류화의 적용 등에 집중함

##### □ 인권노력도 측정 체계 - 청렴도 측정체계와의 비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인권경영 체계는 제도적인 관점에 주목하

여 4가지 주요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 4가지는 1단계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2단계 인권경영 실행 지침(규정) 제정, 3단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4단계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임
  - 인권경영가이드라인과 인권영향평가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내부 구성원(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조직문화와 조직운영 및 주요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인권 수준의 평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인권 증진 및 개선 노력을 위한 평가가 기관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의 노력에 대한 외부자적 입장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평가 지표로서의 활용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함
- 비교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종합청렴도의 측정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권익위가 주체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체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실패의 3개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렴체감도는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 수준의 인식 및 경험,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추진 체계 및 실적과 부패방지시책의 효과성, 부패실패는 기관별 부패사건의 발생 현황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있음
  -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적 성격을 가지며, 인권 인식조사와 유사하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한정 및 특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일부 개편 및 재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청렴체감도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적 성격을 가진다면,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노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권노력도는 인권친화적 조직 구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다는 점에서 청렴노력도와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짐
  - 부패실패는 인권실태와 유사하게 사건의 직접적 경험 및 간접적 관찰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청렴 및 인권친화의 수준에 대한 상징적인 성과로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청렴노력도는 기존의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재구성한 것으로, 시책평가는 기관의 반부패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외부 및 내부 전문가 평가와 권익위의 현지 점검 등을 통해서 측정되고 있음
- 부패방지시책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2005년에 개편된 평가는 부패방지체계,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성으로 구분하였다가, 2008년부터 공동부문, 자율부문, 부패방지성과 부문으로 재설정되었음. 2006년에 '반부패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반부패의지노력부

- 문과 부패방지성과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2013년부터 감점지표를 추가하였음
- 2016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계획, 실행, 성과, 확산, 감점으로 개편되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부패방지추진계획과 같은 기본계획을 해당 조직이 수립하였는지를 기본 요소로 평가하였음
  - 조직체계 또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는가: 부패방지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위원회 등의 설치를 평가
  -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서부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았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
  - 교육 및 홍보: 기존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발 및 확산 가능성: 각 기관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책의 맥락성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 맞춤형 제도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평가
  - 감점제도: 부패방지시책은 조직의 부패행위가 발견되고 징계를 받았을 때 이를 평가점수에 감점으로 포함시켰음. 이는 부패방지시책이 형식적인 기관 평가가 아니라 기관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했으며, 나아가 내부고발이나 내부에서 부패상황을 인지했을 때 신고자를 보호하는 보완적인 제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제도개선 등의 항목을 통해서 평가하였음
  - 2021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2022년의 청렴노력도 평가는 추진체계와 실적을 중심으로 지표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국가 단위의 반부패 및 청렴을 위한 주요 법률 및 제도가 기관 단위에서도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성함으로 정책의 강제적 동형화를 통한 확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종합청렴도 중 청렴노력도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권친화도 중 인권노력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논의함

## 2) 인권노력도 (안)

- 인권노력도는 인권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요인과 인권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내용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음
- 제도적 요인은 인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와 같은 조직 또는 인력, 인권관련 조례 또는 지침, 인권관련 위원회 구성, 마지막으로 4단계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임
- 제도적 요인은 인권경영의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친화도 달성을 위한 노력의 수준을

반영하며, 이 중 인권교육과 훈련실시의 경우 교육과 훈련의 제도화의 경우 제도적 요인으로 그리고 실제 교육과 내용의 평가의 경우 내용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제도적 요인은 외부 및 내부 전문가가 공공기관이 준비하여 제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는 것이 적절하며, 기관의 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지향함
- 내용적 요인은 인권 경영 및 행정을 위한 제도와 사업의 추진 실적과 연관되며, 기관별 인권 취약 분야 개선, 인권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실효성 제고, 인권 주류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내용적 요인은 조직 구성원의 내부 고객적 관점을 강조하며, 기관의 인권 경영 및 행정을 위한 계획과 제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측정함
  - 필요에 따라 내용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여, 조직 문화에 대한 만족도 측정적 성격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1) 제도적 요인의 지표

##### □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 소속기관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며, 제출한 인권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기본계획은 인권경영/행정에 대한 전략과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의 명확성, 충실성, 현실가능성, 난이도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 인권계획의 실행 체계 평가

- 소속기관이 인권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인권계획 추진체계는 다음의 단위과제를 평가하도록 함
  - 전담조직 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 T/F) 운영 여부 및 활동: 인권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상설된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임시조직인 T/F을 마련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
  - 인권담당관 활동 평가: 인권담당관을 지정 및 선발하였는지 여부와 인권담당관의 활동 권한과 범위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가 제도화되어 있는지 여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 정책·시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된 평가의 규모·수를 평가
  - 인권조례 및 인권현장 수립 여부: 소속기관에서 인권조례 및 인권현장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평가
  - 인권취약 분야 개선활동: 인권취약 계층 및 분야를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실적을 평가

□ 인권경영의 리더십 평가

- 인권경영의 리더십 평가 항목으로 인권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리더십이 적절하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다음의 단위과제로 통해 평가함
  - 기관장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기관장이 기관의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요소를 강조하며 인권 분위기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인권담당자를 포함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함
  - 기관장의 인권 관련 정책 참여도: 기관장이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참여 활동을 평가함
  - 기관장과 더불어 상급 및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 담당 부서의 고유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전사적인 기관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 적절성 평가

- 인권교육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을 구성함
  - 양적 지표: 소속기관에서 연간 시행된 인권교육의 실시 횟수, 시간, 대상자 수를 평가함
  - 질적 지표: 소속기관에서 수행된 인권교육의 내실화 정도를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매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함
-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평가는 제도화의 수준과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인권거버넌스 구축 평가 (가점 지표)

- 인권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인권위원회 설치 여부와 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평가로 구성됨
  - 인권위원회 설치 여부: 소속기관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대표성·전문성(인권취약 계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위원 포함 여부 등), 인권위원회가 개최된 횟수, 인권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의 수를 평가함. 이 항목은 인권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설문조사 항목을 포함함
  - 인권위원회의 권한(권고기능) 평가: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인권영향평가, 인권제기안건 등의 심의기관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결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 결정의 구속력 여부, 권고 수용률을 평가함. 이 항목은 인권담당관을 포함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위원회 권한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 구성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평가에 포함됨

- 인권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나, 각 지자체별 상황 및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상이할 수 있음
  - 이는 인권거버넌스를 표준모형으로 제시하기 보다 각 지자체의 정책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최적 모형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설계와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2) 내용적 요인의 지표

### □ 인권행정의 원리 적용 평가

- 조직 운영에서 인권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음의 단위과제를 통하여 평가함
-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 보장
  - 조직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 ‘조직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발언하고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가?’
-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제공
  -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처우 및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문조사 함
  -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 받았는가?’
  -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는가?’
- 조직 내 인사관리의 차별 가능성
  - 조직 내 인사관리 관행과 분위기가 차별과 소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구성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함
  - ‘조직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과 소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가?’
- 조직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장
  - 직무 수행과 조직 관계 전반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구성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함
  - ‘조직에서 경험하였던 여러 관계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충분히 보호받았다고 생각하는가?’

- 권리침해 시 구제의 충분성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구성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함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절차에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는가?’
  
- 내용적 요인은 인권 정책 효과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며, 이는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도 운영의 실적이 내부 고객, 구성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도임

### (3) 인권행정의 사례 개발 및 확산 지표 (가점 지표)

- 인권행정 사례 평가
  - 소속기관에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함
    -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 발굴 여부 확인, 발굴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위한 조치(책자발간, 교육사례 활용 등) 확인
  
- 개발된 사례의 적절성 및 확산성 평가
  - 소속기관에서 개발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와 전파 노력에 대하여 그 적절성을 구성원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함
    - ‘소속기관에서 인권행정의 모범사례를 충분히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소속기관에서 발굴한 인권행정의 모범사례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
    - ‘소속기관에서 인권행정의 모범사례 전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4) 감점 지표

- 차별과 관련된 법령의 불이행
  - 소속기관에서 인권조례, 인권기본계획 등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이행하였던 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인권노력도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표 53] 인권노력도 (조직구성원 대상)

평가 부문	평가 영역(안)	지표 및 평가요소(안)	배점(안)
제도적 요인 (40)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기본계획을 수립여부</li> </ul>	10
	인권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조직 또는 T/F 운영여부 및 활동</li> <li>인권담당관 활동 평가</li> <li>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인권조례 및 인권현장 수립여부</li> <li>인권취약분야 개선활동</li> </ul>	15
	인권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리더십이 발휘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장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li> <li>기관장의 인권 관련 정책 참여도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li> <li>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li> </ul>	10
	인권 관련 교육이 적절히 실시 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지표: 인권 교육의 실시횟수 or 시간</li> <li>질적지표: 인권 교육의 내실화</li> </ul>	5
	인권거버넌스 구축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위원회 설치여부</li> <li>인권위원회의 권한(권고기능) 평가</li> </ul>	+3
내용적 요인 (60)	인권 정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과 관련된 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 받았는가?</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았는가?</li> </ul>	5
	인권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내 인사 및 문화가 차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호받았는가?</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li> </ul>	10
확산 (가점)	인권행정의 사례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행정 사례 평가</li> <li>개발된 사례의 적절성, 확산성</li> </ul>	+3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과 관련된 법률 불이행</li> </ul>	-6

## 4. 인권노력도 평가체계 운영 및 보완

### □ 인권노력도 평가 기본 방향

- 인권노력도 평가는 인권친화도에 대한 예측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친화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측면에서의 인권노력도의 개념적 정의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권노력도 평가는 인권친화적 조직으로의 노력을 유도하는 목적과 기능을 가지며, 인권기본계획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운영 기반의 구축과 실제 운영 성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 인권노력도 평가체계의 거버넌스 설계

- 인권노력도의 평가 도구 개발과 평가의 실행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인권노력도는 각급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친화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국가 단위에서의 인권 관련 정책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달되고 있음에 따라 정책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행위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할 수 있을 것임
  
- 인권노력도 평가대상 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일 수 있으나, 자율성과 상호적 접근을 강조하는 인권 경영 및 행정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의 특정 지표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으나, 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의 인권적 강조하는 목적에서 인권 노력도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과 기초 단위를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정책 계획과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인권노력도 측정은 광역 단위로 분권화되어 있는 인권 주류화 노력을 집중화하는 시도일 수 있으며, 인권노력의 수준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와 수준이 낮은 단체를 구분하여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인권 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례시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의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각급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친화”기관 및 지자체 만들기에 대한 실질 및 상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과 연계하여 인권노력도는 대외적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인권노력도는 등급제 방식으로 등급결과만 발표하고, 점수와 세부 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로 제공하여 기관의 자율적 인권친화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점수와 순위의 공개의 경우 순위 위주의 대내외 불필요한 관심 증가, 기관 간 경쟁 유발로 인한 우수 사례 공유 및 학습 저해 등의 부작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등급은 1~5등급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인권노력의 정도가 높음을, 5등급에 가까울수록 인권노력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등급 구간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의 인권노력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식과 각 등급별 비율을 강제 배분하는 방식 또는 등급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평가하는 방식 등 다양할 수 있음
  - 인권노력도의 경우 초기 도입 단계임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제도적 요인에 대하여는 공동평가단을 통한 평가 그리고 내용적 요인에 대하여는 공통지표를 반영할 설문을 활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권노력도 평가 결과 발표 및 활용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인권친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인권친화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노력도 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 지표별 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 및 환류될 수 있어야 함
  - 이는 인권친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다소 미흡한 분야를 발굴·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폭넓게 공유하여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인권친화도의 결과적 측면의 보완 -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의 인권체감도로의 활용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권노력도는 인권친화도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한 도구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 이는 결과적 측면의 지표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가짐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권위가 매년 국가 단위로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를 각 지

자체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및 집행하여 별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대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인식 조사는 인권노력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여 표본조사의 한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 4장 결론

---

제1절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제2절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거버넌스



## 1. 사전 및 사후적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 □ 사전적 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의 사전적 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정부의 행정 활동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 및 평가하여 인권 및 기본권의 제한 및 침해의 가능성을 예방 및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정부의 행정활동은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활동과 고유의 행정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간접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정부의 공적활동, 즉 정책과정 및 행정활동에서 명시적으로 목적하지 않았으나 나타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인권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보다 직접적으로 인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또는 파생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입법활동과 행정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입법활동의 경우 국가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그리고 행정활동의 경우에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행정기관/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이 입법기관/의회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가짐
  - 이는 지자체의 입법과 행정활동이 집행부로서의 행정기관인 시청 및 도청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들 행정기관의 입법과 행정활동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와 연결됨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의 사전적 과정으로서 “인권”을 주체어로 하여 정책으로 인한 권리 제한 및 침해를 예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후 기존에 제정되어 집행 중인 법률의 정비로 확장될 수 있음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일부에서 인권정책영향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대상은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정책산출물, 공공건축물 등으로 확장되어 왔음

- 하지만, 기존의 인권정책영향평가는 행정부의 일부 활동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었으며 제도와 절차적 관점에 대한 강조로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인 인권 침해 및 제한의 부정적 효과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의 달성에는 한계를 지님
- 본 연구는 기존의 인권정책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권 침해 및 제한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평가 도구를 제안함
- 본 연구는 자치법규와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정책영향평가 도구를 설계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인권 유형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인권 침해 및 제한의 가능성을 전제한 평가로의 전환을 강조함
  - 이는 인권 제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담당자의 소극적 평가의 태도의 전환과 연결되며, 특히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인권정책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제도 및 절차적 관점에서의 평가 요소의 비중을 줄이고 내용적 관점에서의 평가 요소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의 도구로 설계되었음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보다 인권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입증하는 사전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된 평가 결과는 외부 기관의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및 인권 전문 부서와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정책 및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에 대한 환기와 인권 침해의 가능성 최소화 및 제한의 최소화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사후적 평가로서의 인권노력도 측정
- 본 연구에서는 인권노력도 측정을 인권친화도 측정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친화도의 개념적 정의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임
- 인권친화도 측정은 인권친화의 개념의 추상적 수준이 높아 인권친화의 수준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개념적 정의의 추상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인권친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인권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관리적 목적에서의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인권노력도는 인권 관련 정책 및 행정활동에 대한 기관과 기관 구성원의 투입과 노력의 정도와 연결되며, 인권노력도가 최종적으로 인권친화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타당성을 지닌 도구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인권노력도 측정은 평가를 통한 통제 보다 개선을 위한 성과 정보의 생산을 목적으로 함. 인권 관련 추진 체계와 실적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노력을 과정적인 측면에서 주목하는 인권노력도는 결과적 측면에서의 인권친화도의 하위 요소로 설계

됨

- 인권친화도는 인권노력도와 인권체감도를 주요 하위요소로 지니며, 인권노력도가 과정적 측면 그리고 인권체감도가 결과적 측면과 연결됨
  - 인권노력도는 조직 차원에서의 계획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조직 구성원 차원에서의 행태 변화와 문화 조성을 하위요소로 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가 불특정 다수의 인식과 경험을 대상으로 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관의 인권 주류화 노력을 측정하는 사후평가 도구로서 인권노력도의 개념을 정의함
- 인권노력도는 내부적 관점을 강조하며 내부 구성원이 인권에 기반한 정책 및 행정활동을 할 것을 장려하는 목적성을 가짐
  - 인권노력도는 평가가 아닌 측정을 지향하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관의 노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내용적 차원에서의 기관의 노력에 대한 구성원 인식을 결합하는 복합지표로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

##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거버넌스

-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행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평가 제도의 운영과 확산은 관심과 기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제도 구축 노력과 지자체 단위의 제도 구축 및 운영 실적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도 존재
    - 사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지자체 간 학습을 통한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적 관점을 강조한 실질적 평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사후적 인권영향평가로서의 인권인식 및 실태조사는 주로 외부자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권 기반의 행정 활동의 수준과 노력 평가에 적합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평가 도구와 가이드라인 제공과 같은 지원 기능과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제공 노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인권위가 중심이 되어 개발 및 보급 중인 다양한 도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이러한 도구의 실제 활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의 인권행정/경영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지자체를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반영 노력에 대한 관리 도구가 부재한 한계도 존재함
  -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도구의 설계와 운영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능 강화는 평가도구의 개발과 보급 및 지원의 현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가 도구를 활용하려는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안될 수 있음
    - 더욱이, 인권노력도 평가의 주관 기관으로 인권위의 기능이 추가될 수 있으며, 국가 단위의 인권 기본 계획 및 인권 정책이 지방 단위로 적용 및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의 추가가 가능할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의 구축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 정책 영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정책 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다양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함

-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권, 법률, 정책 및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 간 상시적인 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사업 담당 실무자와 인권 분야 전문가, 행정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을 사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음. 특히, 실무자가 인권 제한의 가능성이 부재하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과 비교하여 인권 분야 전문가 집단은 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관점을 가진 관계자 간 협의체의 운영일 필수적임
  - 인권노력도측정은 기관의 인권 노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내부 구성원 인식 조사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제도화 수준과 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접근과 실제 제도를 경험 및 인식하는 내부 구성원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위 등이 전문평가기관으로 기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강원도. (2021). 2021년 강원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5.0.
- 경기도. (2020).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 (2021).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 (2020).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 인권기본계획보고서.
- 광명시. (2022). 2022 광명시 간행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 자료.
- 광주광역시. (2017). 사람중심, 평등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  
----- (2017). 2018-2022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 (2018).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운영계획(안).  
----- (2020). 2020년 인권지표 추진실적 및 2021년 시행계획.  
-----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민인권실천단'과 함께하는 투표소 인권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2018).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 (2019).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 (2020).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 국무조정실. (202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2021). 규제개혁백서.
- 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 (2020).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 (2021). 부산시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2017).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9).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 (2019).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 (202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건축·시설물 분야.  
----- (202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정책·사업분야.

- 여성가족부. (2022). 성별영향평가 지침
- 울산광역시. (2021). 2021-2025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 전라남도. (2022). 전라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 전라북도.. (2022). 2022년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 전북연구원. (2019). 인권영향평가 지침개발 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2021). 20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202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계획(안).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의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 충청남도. (2019).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 (2020).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김경호·이진희·양경·이영준·이선민·정슬기. (2021).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KEI 연구보고서, 1-201.
- 김기곤(2013).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정책적 수용 방안. 광주연구 2013년(4). 49-66.
- 김영주·이찬우.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종진·강은지·김동현·김두나·김진·나현필·박예안·정신영·한정민. (2020).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준현(2013). 복지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보, 27(4). 71-96.
- 김채운·김은희·김형완·이명희·최성윤. (2020).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 김태명·송기춘·박준석. (2021).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 노화준. (1986). 프로그램 이론 형성으로서의 정책영향평가. 행정논총 24(1): 47-64.
- 안국진·이영안·전무형·이나윤·권준형·박정연·변혜영.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민호. (2017).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영안·안국진·한연주·이현승·강연주. (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충은·노진석. (2018).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4(2): 217-244.
- 이현우·송상훈·이미애. (2015).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장인호(2013).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4.  
327-360.





I. 절차 및 형식 검토			
평가항목	질문	응답	
절차 및 형식	공개	1.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참여	2. 제·개정 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3.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구제	4. 제·개정으로 인하여 권리 제한(또는 침해)을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용어 차별	5. 관련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 표현 해당 여부 확인)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II. 내용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내용 상	기본권 제약 및 인권 침해		6.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규범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7. 그러한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민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이주민/이주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항 5에 ①번 응답 시 체크														
			8. 그러한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교육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문화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input type="checkbox"/> 이동권 및 접근권 <input type="checkbox"/> 노동권 <input type="checkbox"/> 정보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항 5에 ①번 응답 시 체크														
			9. 해당 업무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세부 항목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업무 분야</th> <th>세부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교육</td> <td><input type="checkbox"/>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학교박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td> </tr> <tr> <td>복지</td> <td><input type="checkbox"/>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td> </tr> <tr> <td>일자리/경제</td> <td><input type="checkbox"/>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소상공인 차별 등</td> </tr> <tr> <td>환경</td> <td><input type="checkbox"/>주거권(환경오염 등) <input type="checkbox"/>생명(동물 등) 보호 <input type="checkbox"/>환경권 침해</td> </tr> <tr> <td>안전재난</td> <td><input type="checkbox"/>여성 안전 <input type="checkbox"/>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td> </tr> <tr> <td>부동산/주택/ 도시</td> <td><input type="checkbox"/>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input type="checkbox"/>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이동권 제한 가능성, <input type="checkbox"/>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td> </tr> <tr> <td>도로/교통</td> <td><input type="checkbox"/>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 안전시설/교통수단확보)</td> </tr> </tbody> </table>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박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차별 등	환경	<input type="checkbox"/> 주거권(환경오염 등) <input type="checkbox"/> 생명(동물 등) 보호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	안전재난	<input type="checkbox"/> 여성 안전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부동산/주택/ 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동권 제한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박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차별 등																	
환경	<input type="checkbox"/> 주거권(환경오염 등) <input type="checkbox"/> 생명(동물 등) 보호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																	
안전재난	<input type="checkbox"/> 여성 안전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부동산/주택/ 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동권 제한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 안전시설/교통수단확보)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64 376 683 450">생활/문화</td> <td data-bbox="683 376 1366 450">□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td> </tr> <tr> <td data-bbox="464 450 683 524">보건/건강</td> <td data-bbox="683 450 1366 524">□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제한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td> </tr> <tr> <td data-bbox="464 524 683 636">일반행정</td> <td data-bbox="683 524 1366 636">□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td> </tr> </table>	생활/문화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제한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일반행정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생활/문화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제한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일반행정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p><b>종합 판단</b></p>	<p>10.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제·개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p> <p>[비고]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대상 및 침해 내용 기술)</p> <p>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없음         </p>						

□ 인권정책영향평가 -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안)**

사업명	비예산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 사업	
붙임 자료	해당 사업계획 관련 자료 등	

※ 우선 적용 대상 검토

검토 항목	구분
1.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input type="checkbox"/>
2.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3.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5. 침익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법정계획)	<input type="checkbox"/>
6. 투용자 규모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지방투자심사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7. 지자체장, 의회, 인권위 등에서 평가 권고한 사안	<input type="checkbox"/>
8.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되어 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9. 기타 평가 필요 사유 ( )	<input type="checkbox"/>

※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된 분야는 별도 점검표 적용 가능

검토 항목	구분	적용 기준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음 → 별도의 점검표를 적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예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 I.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추진 근거

○

주요 사업 내용

○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		
	전년도(A)	당해 연도(B)	증감(B-A)

## 1. 절차 및 형식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절차 및 형식	공개	1.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참여	2.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3.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구제	4. 정책·사업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용어 차별	5. 정책·사업 계획상에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 표현 해당 여부 확인)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비고]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II. 내용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내용	인권 증진	6. 해당 사업은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비고] (인권 증진 대상 및 내용 기술)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인권 침해 가능성	7. 아래 제시된 '업무영역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세부 항목'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항목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규칙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
		환경	<input type="checkbox"/>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안전 재난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 참여의 권리 <input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부동산/주택/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 시설/교통수단확보)
생활/문화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의로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일반행정	<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자기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8. 해당 사업에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 규범과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8-1. 그러한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민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이주민/이주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항 8에 ①,③번 응답시 체크	
	8-2. 그러한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교육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문화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input type="checkbox"/> 이동권 및 접근권 <input type="checkbox"/> 노동권 <input type="checkbox"/> 정보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권	문항 8에 ①,③번 응답시 체크	

부록. 인권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지침

종합 판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정책·사업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비고]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대상 및 침해 내용 기술)	
	10. 그러한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부록. 인권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지침

## 인권정책영향평가 지침(안)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 부문]

### 1. 근거 및 목적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법률 제·개정 및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행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나 사회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함임
- 본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i) 인권 침해 및 기본권 제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해당 정책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ii) 정책 및 사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 내외에 인권적 관점의 학습과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 해당 지침(안)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의 개발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추후 사업 및 정책분야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심화 및 변형된 평가 기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2. 대상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정 및 개정되는 자치법규와 일부 주요 정책·시책임
- 정책·시책
  - 정책·시책의 경우, 인권 측면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권조례와 관련된 사업,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 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예: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 침익의 발생 범위가 큰 사업, 투융자 규모가 큰 대규모 예산사업(국가재정법 38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정투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담당관이나 지역 인권위원회, 지자체장, 의회 등이 권고 및 선정한 사업(특정평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제시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인권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기준에 복수로 해당할수록 평가의 필요성이 클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 기준에 다수 해당한다면 평가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2.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3. 지역 내 갈등 빈발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인권 측면의 영향력을 폭넓게 검토하는 본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의 경우, ‘5. 침익의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과 ‘8. 기타 사유로써 정책·사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제한 가능성이 있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 정책·사업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 적용 검토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 특히 기타와 관련하여 전자는 방법용 CCTV 설치, 후자는 재난시 대피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

우선 적용 검토 대상 (복수 선택 가능)
1. 인권조례 관련된 사업
2. 사회적 약자 대상(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3.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사업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
5. 침익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
6. 투용자 규모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예비타당성 대상 및 지방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7. 지자체장, 의회, 인권위원회 등에서 평가 권고/선정한 사안(특정평가 포함)
8. 기타 평가 필요 사유 (- 정책·사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제한 가능성 있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 3. 평가항목 및 지표

#### (1) 평가항목

##### □ 평가항목의 구성

- 평가항목의 구성은 1) 세부 항목의 점검 결과를 합하여 인권침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2) 세부 항목을 진단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침해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현재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인권영향평가 항목이 전자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절차 및 형식 차원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들로서 가부를 확인하는 방식
- 내용 차원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정도의 상·중·하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하는 항목들로 구성함
- 이와 같은 방식은 담당자가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학습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평가항목의 세부 요소

- 평가항목은 크게 정책·사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 및 형식’상의 인권침해 요소와 정책·사업 ‘내용’상 기본권 제약 및 인권 침해 요소로 구성함
- **절차 및 형식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공개, 참여, 구제, 용어 차별로 구성됨. 정책·사업 수립 및 추진과정을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와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용된 용어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사전 검토하였는지 등을 진단하도록 함
- 아래의 질문에 대해 ‘예’로 체크하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며, ‘아니오’ 혹은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그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였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종합 판단 시 보완 여부 판단하도록 함

- **공개:**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제공되고 있습니까? (☞ 사업 관련 정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 여부를 의미함)
- **참여:** 1)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 사업에 관련된 직접적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자들까지도 의견수렴 과정에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참여:** 2)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확인하였습니까? (☞ 사업과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지역의 사례 등 선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의미함)
- **구제:**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개

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용어 차별: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 계획상에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 국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 표현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그 외에도 근래 사회에서 차별 논란이 있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할 것)

-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정책·사업의 내용 및 집행상 인권증진의 긍정적 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대해 먼저 가늠한 후, 인권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함. 특히, 해당 업무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사안 및 상황 예시 중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제한 또는 인권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지, 차별적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였는지, 그러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단계적 및 구체적으로 검토함
-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관련된 질문들로서 앞선 질문에 이어진 다음 질문에 응답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인권 증진: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이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까?
- 사업 관련 대상자 확인: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과 관련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 사업과 직접적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관련되는지 확인하여, 관련된 집단을 보기에서 복수 선택)
- 업무 분야별 인권침해 검토: 제시된 업무 영역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사례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 <표 2>로 10개 영역의 인권침해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음. 추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함. 복수 선택 가능)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1)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게 불편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 방범용 CCTV설치는 국민 전체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2)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i)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ii)설치 지역 NGO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여부를 심의하며, iii)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것 등)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3)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인권 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표 3>로 기본권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으니 확인하고 판단할 것)
- 기본권 제한의 대상 및 내용 확인: 해당 재난안전 정책·사업 관련 대상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하십시오. (☞ (1) 누구에 의하여: 예) 방법용 CCTV를 설치, 개인정보를 수집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 언제/어떠한 상황에서: 예)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 (3) 어떤 방식으로: 예) 수집된 정부가 외부로 유출)

- **종합 검토**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 정도와 실행 가능성 판단으로 구성됨. 앞서서 진행된 절차 및 형식 차원, 내용 차원의 항목에서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사업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함. 또한 그러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려되거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예방 방안이 있는지 등을 함께 적도록 하여 현장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인권침해 가능성의 최종 판단으로 상·중·하·없음 중 선택하는데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구체적인 침해 대상 및 내용과 함께 침해 가능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적인 판단 주체(예: 인권위, 인권담당관 등) 보내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최종 판단하도록 함

- **인권침해 정도의 종합 판단:**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정책·사업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상, 중, 하, 없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실행가능성:** 그러한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전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해주시시오. (☞ 실행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고, 예방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을 것)

〈표 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비고
절차 및 형식	공개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참여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여부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여부	
	구제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권리침해시, 구제방안 마련	
	용어차별	정책·사업 계획상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부	
내용	인권 증진	정책·사업의 내용이 인권을 증진할 가능성 검토	
	업무분야 별 인권침해 항목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 분야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세부 항목과의 관련성 검토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정책·사업의 내용상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검토	
	기본권 제한의 대상	정책·사업의 내용상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대상 검토	
	제한 가능성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 검토	
종합검 토	인권침해 발생정도	정책·사업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상의 인권침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 인권침해 대상별 침해요소 기술	상·중·하 없음
	실행가능성 검토	- 해당 인권침해 요소의 제거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 기술	

(2)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 인권 및 기본권은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업무분야별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세부 항목이나 사례를 예시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이러한 세부 항목이나 사례와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세부 상황과 예시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미처 주목되지 않고 간과되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임
-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 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이라는 10개의 업무분야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른 예시 상황을 나열하고 있음
  - 재난안전분야의 정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제공과 알권리, 사업 및 정책 기획과 과정상의 참여, 재난안전으로부터의 주거권, 안전권,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사회적 약자보호, 사생활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성이 있음

〈표 2〉 업무분야별 관련 인권목록 및 예시

업무 분야	세부 항목	예시
교육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차별 방지 대책의 존부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생할인 또는 혜택(공공요금), 각종 행사참가자격 제한 예) 학생증을 활용한 학생할인제도, 공모전 참가자격 '초·중·고등학생' 으로 제한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어린이 놀이공간 미조성
	장애인 학습권	관련 편의시설이나 지원서비스의 존부와 실효성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이주노동자의 자녀, 탈북민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춘 교육기관 및 시설 존부
복지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차단 복지관 경로식당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판매 제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및 대안 마련
일자리/경제	노동자 안전/보건권	작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 및 보건권 보장 상비약 구비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인권(공정계약, 휴식권, 임금 등) 보장체계 미비
	이주노동자 인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공정계약, 휴식권, 임금 등) 보장체계 미비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휴게시간, 노동시간, 노동

부록. 인권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지침

		강도 및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유무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표 또는 상호 등 무단도용)에 대한 방안
	사회적 약자의 일할 권리 침해 가능성	청년고용정책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정책 마련 여부
환경	생명권	폭풍,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후변화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 및 노력 여부
	건강권	
	주거권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여부
	환경권	
재난 안전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재난 대응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받을 권리 보장 여부 재난 발생,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알권리
	참여의 권리	안전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마련 재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 보호권	CCTV 설치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대피소 및 임시거주시설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주거권 보장	재난시 재난피해 이재민 외에 안전취약계층(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홀몸 노인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안전권 보장	재난 상황 발생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재난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발생 가능, 대응반안 마련 여부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지정 대피소로 대피하는 이동상의 어려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미설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초상권(안면인식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
부동산/주택/도시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재개발시 강제철거로 인한 주거권 침해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및 공해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여부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시계획 및 설계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예) 장애인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핸드레일 및 승강기 설치, 단차제거, 수유실 설치, 휠체어 구비 등
도로/교통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폭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 (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확보)	신호등 정비 및 자동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유무
생활/문화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접근성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배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지원여부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노인복지관 또는 요양센터 등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방지에 대한 교육 등의 존부
보건/건강	지역보건의로 접근성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돌봄과 동행서비스 등 마련 여부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증진방안 마련 여부 예) 사회적 인프라 구축, 건강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화, 이동, 의사소통, 시력 제한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증진방안 모색
일반행정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 공고문의 주요내용상 부당요소 실효된 전과로 인한 불합격 연령, 국적·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인사상 차별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열람 및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사업·정책 및 민원 사무에 대한 충분한 제공을 통한 자기결정권 부여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상여금, 복지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

### (3) 평가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

- 평가대상이 된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침해 가능한 인권 및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 제시된 권리 항목은 민주적 참여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권/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권
- 평가자는 해당 정책의 인권정책영향평가 과정을 통해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내용 및 종류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복수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라면 그 모두를 포함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 정책·사업

〈표 3〉 인권영향평가의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

분야	내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b>문화권</b>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b>안전권</b>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b>환경권</b>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b>이동권 접근권</b>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b>노동권</b>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개인정보 보호권</b>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4) 최종 판단 항목 및 검토의견

- 소관 부서 담당자의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예: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는 각 평가 영역에 대한 문항에 최종 결과(가부)를 선택하고 검토 의견을 작성함

□ 주요 평가 내용

- 공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고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참여: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하고 있는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였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구제: 정책·사업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용어 차별: 정책·사업 계획상에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 증진: 해당 사업은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및 무관하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침해 가능성 고려: <업무영역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세부항목>에 관한 고려가 충분한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침해 가능성 예측: 해당 정책·사업에 기본권 제한 또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하였는가? 기본권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고려가 타당한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침해 가능성 예방: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종합: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적절한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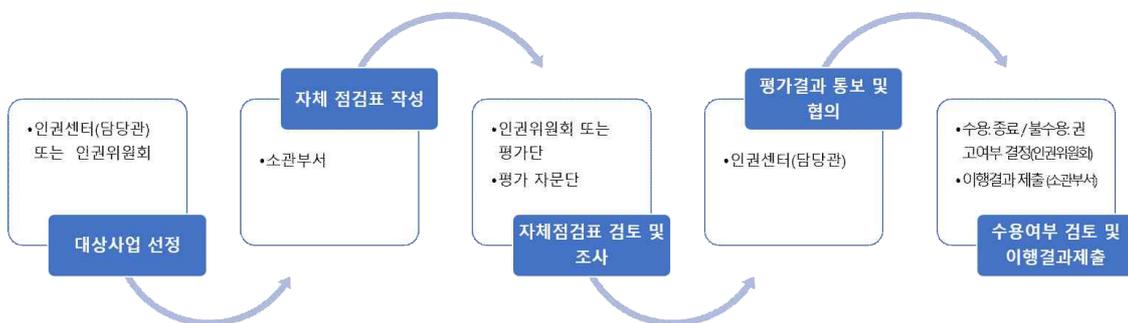
□ 검토 의견

- 위 항목별 검토 결과, 통과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서술할 것.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되었다면 검토 의견에는 그 침해 대상과 내용(기본권)이 적시되어야 함

#### 4. 평가절차

-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평가 순서는 아래와 같음
- 지침(안)은 **소관부서의 사업담당자가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로서 설계되었는데, 먼저 1)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그 선정 기준이나 선정 사업을 인권센터(담당관)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2) 소관부서 사업 담당자는 자체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3) 제출된 자체점검표를 인권위원회 또는 평가단, 평가자문단 등 평가의 최종 주체가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평가를 내린 후 4) 그 결과를 인권센터(담당관)가 사업부서에 통보 및 협의함 5) 소관부서에서 수용여부의 검토 및 이행결과를 제출함

※ 그림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절차



정책 · 사업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안)

### - 방법용 CCTV 설치(재난안전 분야)

사업명	비예산사업	
	정책사업	
구분	단위사업	
	<input type="checkbox"/> 신규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 사업	
붙임 자료	해당 사업계획 관련 자료 등	

※ 우선 적용 대상 검토

검토 항목 (복수 선택 가능)	구분
1. 인권조례와 관련된 사업	<input type="checkbox"/>
2. 사회적 약자 대상(혹은 밀접히 관련된) 사업	<input type="checkbox"/>
3.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5. 침익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투용자 규모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예:타당성 대상 및 자량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7. 지자체장, 의회, 인권위 등에서 평가 권고한 사안	<input type="checkbox"/>
8. 기타 평가 필요 사유 (- 정책사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제한 가능성 있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된 분야는 별도 점검표 적용 가능

검토 항목	구분	적용 기준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음 → 별도의 점검표를 적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예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 I.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추진 근거

○

주요 사업 내용

○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		
	전년도(A)	당해 연도(B)	증감(B-A)

II. 절차 및 형식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공개	1.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참여	2.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3.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사전 확인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구체	4. 정책·사업 추진과정으로 인해 권리 제한(또는 침해)을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체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용어 차별	5. 관련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국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 표현 해당 여부 확인)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III. 내용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인권 증진	1. 해당 사업은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인권 증진 대상 및 내용 기술을 간략히 기술할 것)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2. 해당 사업과 관련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민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이주민/이주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인권침해 가능성	3. 해당 사업의 내용 중 아래 제시된 '업무영역별 발생 가능한 인권제한 세부 항목'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세부 항목별 예시는 매뉴얼 참고할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업무 분야</th> <th>세부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교육</td> <td><input type="checkbox"/>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td> </tr> <tr> <td>복지</td> <td><input type="checkbox"/>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td> </tr> <tr> <td>일자리/경제</td> <td><input type="checkbox"/>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td> </tr> <tr> <td>환경</td> <td>환경 위험으로부터의 <input type="checkbox"/>생명권 <input type="checkbox"/>건강권 <input type="checkbox"/>주거권 <input type="checkbox"/>환경권</td> </tr> <tr> <td>재난안전</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참여의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주거권 <input type="checkbox"/>안전권 <input type="checkbox"/>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개인정보보호</td> </tr> <tr> <td>부동산/주택/도시</td> <td><input type="checkbox"/>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 문제) <input type="checkbox"/>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td> </tr> <tr> <td>도로/교통</td> <td><input type="checkbox"/>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 확보)</td> </tr> <tr> <td>생활/문화</td> <td><input type="checkbox"/>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type="checkbox"/>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td> </tr> <tr> <td>보건/건강</td> <td><input type="checkbox"/>지역보건외로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td> </tr> <tr> <td>일반행정</td> <td><input type="checkbox"/>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td> </tr> </tbody> </table>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	환경	환경 위험으로부터의 <input type="checkbox"/>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재난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 참여의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부동산/주택/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 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 확보)	생활/문화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외로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일반행정	<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																						
	환경	환경 위험으로부터의 <input type="checkbox"/>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재난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 참여의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부동산/주택/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 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 확보)																						
	생활/문화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외로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일반행정	<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4. 해당 사업·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되거나 인권 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5.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6. 그러한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각 기본권의 내용은 매뉴얼 참고할 것)	문항6에 ①번 응답시 체크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교육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문화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input type="checkbox"/> 이동권 및 접근권 <input type="checkbox"/> 노동권 <input type="checkbox"/> 정보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	
	8. 위와 같이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없음 (1) 누구에 의하여: _____ (2) 언제/어떠한 상황에서: _____ (3) 어떤 방식으로: _____	
<b>종합 판단</b>	9.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없음
	10. 그러한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전에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인권침해 방지 방안: _____ (2)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 _____	

## 인권정책영향평가 지침(안)

[생활문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1. 근거 및 목적

- 인권정책영향평가는 법률 제·개정 및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행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나 사회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함임
- 본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i) 인권 침해 및 기본권 제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해당 정책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ii) 정책 및 사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 내외에 인권적 관점의 학습과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 해당 지침(안)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의 개발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추후 사업 및 정책분야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심화 및 변형된 평가 기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2. 대상

-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정 및 개정되는 자치법규와 일부 주요 정책·시책임
- 정책·시책
  - 정책·시책의 경우, 인권 측면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권조례와 관련된 사업,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 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예: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 침익의 발생 범위가 큰 사업, 투융자 규모가 큰 대규모 예산사업(국가재정법 38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정투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담당관이나 지역 인권위원회, 지자체장, 의회 등

- 이 권고 및 선정한 사업(특정평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제시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인권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기준에 복수로 해당할수록 평가의 필요성이 클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 기준에 다수 해당한다면 평가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2.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3. 지역 내 갈등 빈발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인권 측면의 영향력을 폭넓게 검토하는 본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일 경우, 2. 사회적 약자 대상(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8. 기타의 이유로써 이용자/수혜자 집단의 수요와 선호에 다양성이 큰 사업으로 볼 수 있기에 인권정책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적절할 수 있음

우선 적용 검토 대상 (복수 선택 가능)
1. 인권조례 관련된 사업
<b>2. 사회적 약자 대상(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b>
3.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사업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
5. 침익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
6. 투자자 규모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예비타당성 대상 및 지방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7. 지자체장, 의회, 인권위원회 등에서 평가 권고/선정한 사안(특정평가 포함)
<b>8. 기타 평가 필요 사유 (이용자/수혜자 집단의 수요와 선호에 다양성이 큰 사업)</b>

### 3. 평가항목 및 지표

#### (1) 평가항목

##### □ 평가항목의 구성

- 평가항목의 구성은 1) 세부 항목의 점검 결과를 합하여 인권침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2) 세부 항목을 진단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침해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현재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인권영향평가 항목이 전자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절차 및 형식 차원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져야

- 할 사항들로서 가부를 확인하는 방식
  - 내용 차원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정도의 상·중·하 정도를 판단하도록 가이드하는 항목들로 구성함
- 이와 같은 방식은 담당자가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학습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평가항목의 세부 요소

- 평가항목은 크게 정책·사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 및 형식'상의 인권침해 요소와 정책·사업 '내용'상 기본권 제약 및 인권 침해 요소로 구성함
- **절차 및 형식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공개, 참여, 구제, 용어 차별로 구성됨. 정책·사업 수립 및 추진과정을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와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용된 용어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사전 검토하였는지 등을 진단하도록 함
- 
- 아래의 질문에 대해 '예'로 체크하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며, '아니오' 혹은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그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였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종합 판단 시 보완 여부 판단하도록 함

- 공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제공되고 있습니까? (☞ 사업 관련 정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 여부를 의미함)
- 참여: 1)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 사업에 관련된 직접적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자들까지도 의견수렴 과정에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참여: 2) 정책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확인하였습니까? (☞ 사업과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지역의 사례 등 선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의미함)
- 구제: 정책사업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용어 차별: 정책사업 계획상에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 국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 표현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그 외에도 근래 사회에서 차별 논란이 있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할 것)

-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정책·사업의 내용 및 집행상 인권증진의 긍정적 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대해 먼저 가늠한 후, 인권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함. 특히, 해당 업무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사안 및 상황 예시 중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제한 또는 인권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지, 차별적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였는지, 그러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단계적 및 구체적으로 검토함
-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관련된 질문들로서 앞선 질문에 이어진 다음 질문에 응답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인권 증진: 해당 사업이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까?
- 사업 관련 대상자 확인: 사업과 관련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 사업과 직접적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관련되는지 확인하여, 관련된 집단을 보기에서 복수 선택)
- 업무 분야별 인권침해 검토: 제시된 업무 영역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사례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 <표 2>로 10개 영역의 인권침해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음. 추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함. 복수 선택 가능) (☞ 생활문화 분야의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이용자 차별 가능성 문제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1) 해당 시설의 설치가 특정 집단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 불편이나 차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 해당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에게 상대적 혹은

- 잠재적 불편이나 차별일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2) 해당 시설의 이용 규정이 다양한 이용자 집단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까? (☞ 해당 문화체육시설의 이용 규정이 이용자 및 수혜자 집단의 다양한 특성과 선호를 고려할 때 공정한지, 아니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함.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이용과 접근 제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3) 해당 시설이 다음 항목에 따른 이용자 차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별, 국적, 연령, 직업, 소득, 지역, 기타 등 (☞ 앞서 질문의 이용자의 차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임)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4) 그러한 차별 또는 접근 제한 가능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이인지 검토하는 단계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을 것)
  -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검토: 5) 그러한 차별 또는 접근 제한 가능성
  -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인권규범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한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 <표 3>에 제시된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응답함)
  - 기본권 제한의 대상 및 내용 확인: 해당 사업 관련 대상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하십시오. (☞ (1) 누구에 의하여, (2) 언제/어떠한 상황에서 (3) 어떤 방식으로 침해 가능한지 기술함)

- **종합 검토**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 정도와 실행 가능성 판단으로 구성됨. 앞서서 진행된 절차 및 형식 차원, 내용 차원의 항목에서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사업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함. 또한 그러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려되거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예방 방안이 있는지 등을 함께 적도록 하여 현장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인권침해 가능성의 최종 판단으로 상·중·하·없음 중 선택하는데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구체적인 침해 대상 및 내용과 함께 침해 가능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적인 판단 주체(예: 인권위, 인권담당관 등) 보내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최종 판단하도록 함

- 인권침해 정도의 종합 판단: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정책 사업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상, 중, 하, 없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실행가능성: 그러한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전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 해주십시오. (☞ 실행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고, 예방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을 것)

〈표 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비고
절차 및 형식	공개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참여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여부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여부	
	구제	정책·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권리침해시, 구제방안 마련	
용어차별	정책·사업 계획상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부		
내용	인권 증진	정책·사업의 내용이 인권을 증진할 가능성 검토	
	업무분야 별 인권침해 항목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 분야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세부 항목과의 관련성 검토	
	기본권 제한 및 인권침해 요소	정책·사업의 내용상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검토	
	기본권 제한의 대상	정책·사업의 내용상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대상 검토	
	제한 가능성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 검토	
종합검 토	인권침해 발생정도	정책·사업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상의 인권침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 인권침해 대상별 침해요소 기술	상·중·하 없음
	실행가능성 검토	- 해당 인권침해 요소의 제거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 기술	

(2) 업무분야별 인권목록

- 인권 및 기본권은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업무분야별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의 세부 항목이나 사례를 예시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이러한 세부 항목이나 사례와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세부 상황과 예시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미처 주목되지 않고 간과되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임.
- 교육, 복지, 일자리/경제, 환경, 안전 재난, 부동산/주택/도시, 도로/교통, 생활/문화, 보건/건강, 일반행정이라는 10개의 업무분야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른 예시 상황을 나열하고 있음

〈표 2〉 업무분야별 관련 인권목록 및 예시

업무 분야	세부 항목	예시
교육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차별 방지 대책의 준부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생할인 또는 혜택(공공요금), 각종 행사참가자격 제한 예) 학생증을 활용한 학생할인제도, 공모전 참가자격 ‘초·중·고등학생’으로 제한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어린이 놀이공간 미조성
	장애인 학습권	관련 편의시설이나 지원서비스의 준부와 실효성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이주노동자의 자녀, 탈북민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춘 교육기관 및 시설 준부
복지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차단 복지관 경로식당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판매 제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및 대안 마련
일자리/경제	노동자 안전/보건권	작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 및 보건권 보장 상비약 구비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인권(공정계약, 휴식권, 임금 등) 보장체계 미
	이주노동자 인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공정계약, 휴식권, 임금 등) 보장체계 미비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휴게시간, 노동시간, 노동강도 및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유무

부록. 인권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지침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표 또는 상호 등 무단도용)에 대한 방안
	사회적 약자의 일할 권리 침해 가능성	청년고용정책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정책 마련 여부
<b>환경</b>	생명권	폭풍,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후변화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 및 노력 여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여부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b>안전 재난</b>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재난 대응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받을 권리 보장 여부 재난 발생,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알권리
	참여의 권리	안전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마련 재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 보호권	CCTV 설치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대피소 및 임시거주시설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주거권 보장	재난시 재난피해 이재민 외에 안전취약계층(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홀몸 노인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안전권 보장	재난 상황 발생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재난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동·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발생 가능, 대응반안 마련 여부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지정 대피소로 대피하는 이동상의 어려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미설치
	개인정보보호	안면인식 CCTV설치로 인한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b>부동산/주택/도시</b>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문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재개발시 강제철거로 인한 주거권 침해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및 공해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여부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시계획 및 설계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예) 장애인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핸드레일 및 승강기 설치, 단차제거, 수유실 설치, 휠체어 구비 등
<b>도로/교통</b>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폭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 (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확보)	신호등 정비 및 자동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유무
<b>생활/문화</b>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접근성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배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지원여부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노인복지관 또는 요양센터 등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방지에 대한 교육 등의 준비
<b>보건/건강</b>	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돌봄과 동행서비스 등 마련 여부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증진방안 마련 여부 예) 사회적 인프라 구축, 건강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

		화, 이동, 의사소통, 시력 제한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증진방안 모색
일반행정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 공고문의 주요내용상 부당요소 실효된 전과로 인한 불합격 연령, 국적·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인사상 차별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열람 및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사업·정책 및 민원 사무에 대한 충분한 제공을 통한 자기결정권 부여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상여금, 복지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

### (3) 평가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

- 평가대상이 된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침해 가능한 인권 및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 제시된 권리 항목은 민주적 참여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권/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보호권
- 평가자는 해당 정책의 인권정책영향평가 과정을 통해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내용 및 종류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복수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라면 그 모두를 포함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함

〈표 3〉 인권영향평가의 기준으로서 기본적 인권

분야	내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b>안전권</b>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b>환경권</b>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b>이동권 접근권</b>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b>노동권</b>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개인정보 보호권</b>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4) 최종 판단 항목 및 검토의견

- 소관 부서 담당자의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예: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는 각 평가 영역에 대한 문항에 최종 결과(가부)를 선택하고 검토 의견을 작성함

주요 평가 내용

- 공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고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참여: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하고 있는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였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구제: 정책·사업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용어 차별: 정책·사업 계획상에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 증진: 해당 사업은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및 무관하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침해 가능성 고려: <업무영역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세부항목>에 관한 고려가 충분한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침해 가능성 예측: 해당 정책·사업에 기본권 제한 또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하였는가? 기본권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고려

- 가 타당한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인권침해 가능성 예방: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 종합: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적절한가? (☑ 그렇다고 검토된 경우,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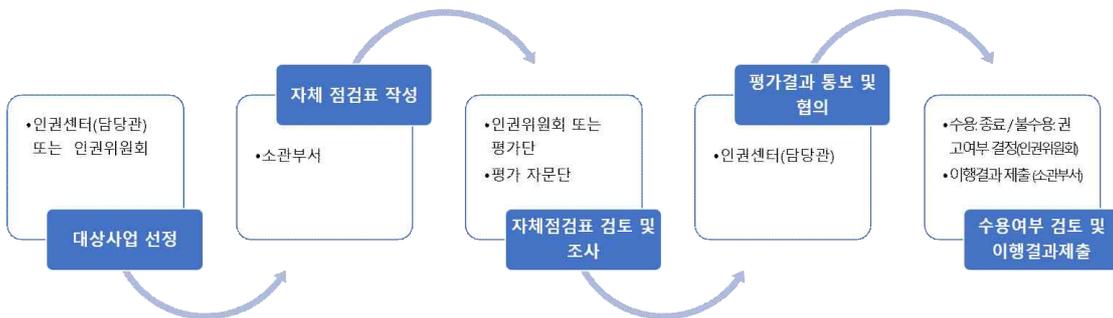
□ 검토 의견

- 위 항목별 검토 결과, 통과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서술할 것.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되었다면 검토 의견에는 그 침해 대상과 내용(기본권)이 적시되어야 함

#### 4. 평가절차

-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함
- 지침(안)은 **소관부서의 사업담당자가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로서 설계되었는데, 먼저 1)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그 선정 기준이나 선정 사업을 인권센터(담당관)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2) 소관부서 사업 담당자는 자체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3) 제출된 자체점검표를 인권위원회 또는 평가단, 평가자문단 등 평가의 최종 주체가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평가를 내린 후 4) 그 결과를 인권센터(담당관)가 사업부서에 통보 및 협의함 5) 소관부서에서 수용여부의 검토 및 이행결과를 제출함

※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절차



정책·사업- 생활문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안)**

사업명	비예산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 사업	
붙임 자료	해당 사업계획 관련 자료 등	

※ 우선 적용 대상 검토

검토 항목 (복수 선택 가능)	구분
1. 인권조례와 관련된 사업	<input type="checkbox"/>
2. 사회적 약자 대상(혹은 밀접히 관련된)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지역 내 갈등이 빈발하는 사안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5. 침익 발생 범위 및 규모가 큰 사업	<input type="checkbox"/>
6. 투용자 규모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예:타당성 대상 및 재방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7. 지자체장, 의회, 인권위 등에서 평가 권고한 사안	<input type="checkbox"/>
8. 기타 평가 필요 사유 (이용자/수혜자 집단의 수요와 선호에 다양성이 큰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된 분야는 별도 점검표 적용 가능

검토 항목	구분	적용 기준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별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음 → 별도의 점검표를 적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예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 I.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추진 근거

○

주요 사업 내용

○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		
	전년도(A)	당해 연도(B)	증감(B-A)

## II. 절차 및 형식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공개	1.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참여	2.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3.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사전 확인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구제	4. 정책·사업 추진과정으로 인해 권리 제한(또는 침해)을 받을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용어 차별	5. 관련 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국가인권위의 차별 및 비하 표현 해당 여부 확인)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②과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III. 내용 검토																								
평가항목	질 문	응 답																						
인권 증진	1. 해당 사업은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인권 증진 대상 및 내용 기술을 간략히 기술할 것)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2. 해당 사업과 관련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민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이주민/이주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인권침해 가능성	3. 해당 사업의 내용 중 아래 제시된 '업무영역별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세부 항목' 중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세부 항목별 예시는 매뉴얼 참고할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업무 분야</th> <th>세부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교육</td> <td><input type="checkbox"/>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td> </tr> <tr> <td>복지</td> <td><input type="checkbox"/>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td> </tr> <tr> <td>일자리/경제</td> <td><input type="checkbox"/>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td> </tr> <tr> <td>환경</td> <td>환경 위험으로부터의 <input type="checkbox"/>생명권 <input type="checkbox"/>건강권 <input type="checkbox"/>주거권 <input type="checkbox"/>환경권</td> </tr> <tr> <td>안전 재난</td> <td><input type="checkbox"/>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참여의 권리 <input type="checkbox"/>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주거권 <input type="checkbox"/>안전권 <input type="checkbox"/>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type="checkbox"/>개인정보보호</td> </tr> <tr> <td>부동산/주택/도시</td> <td><input type="checkbox"/>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 문제) <input type="checkbox"/>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td> </tr> <tr> <td>도로/교통</td> <td><input type="checkbox"/>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 확보)</td> </tr> <tr> <td>생활/문화</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td> </tr> <tr> <td>보건/건강</td> <td><input type="checkbox"/>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td> </tr> <tr> <td>일반행정</td> <td><input type="checkbox"/>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td> </tr> </tbody> </table>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	환경	환경 위험으로부터의 <input type="checkbox"/>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안전 재난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 참여의 권리 <input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부동산/주택/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 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 확보)	생활/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일반행정	<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업무 분야	세부 항목																						
	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차별 <input type="checkbox"/>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일반 인권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권/발달권/참여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습권 <input type="checkbox"/> 그 외 소외계층의 교육권 침해 등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수급자의 권리 제한/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가능성																						
	일자리/경제	<input type="checkbox"/> 노동자 안전/보건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노동인권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인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노동권 및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등																						
	환경	환경 위험으로부터의 <input type="checkbox"/> 생명권 <input type="checkbox"/> 건강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안전 재난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input type="checkbox"/> 참여의 권리 <input type="checkbox"/> 사생활 보호권 <input type="checkbox"/> 주거권 <input type="checkbox"/> 안전권 <input type="checkbox"/> 학습권 및 돌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부동산/주택/도시	<input type="checkbox"/> 주민 주거권(강제이주 및 재정착 문제) <input type="checkbox"/> 환경권 침해(소음, 악취, 대기, 수질, 조망 등)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접근성 차별 등																						
	도로/교통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침해(교통안전시설/교통수단 확보)																						
	생활/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접근권 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용자 차별 가능성 등																						
보건/건강	<input type="checkbox"/> 지역보건의료 접근성 제한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																							
일반행정	<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채용, 승진)의 차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및 공무원 차별 가능성 등																							
	4. 해당 시설의 설치가 특정 집단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 불편이나 차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5. 해당 시설의 이용 규정이 다양한 이용자 집단에게 공평하도록 마련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6. 다음 항목에 따른 이용자 차별 가능성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연령,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7. 그러한 차별 또는 접근 제한 가능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① 예																						

	<p>니까?</p> <p>8.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되거나 인권 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p> <p>9. 그러한 제한의 여지가 있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각 기본권의 내용은 매뉴얼 참고할 것) <input type="checkbox"/>주거권 <input type="checkbox"/>교육권 <input type="checkbox"/>건강권 <input type="checkbox"/>문화권 <input type="checkbox"/>안전권 <input type="checkbox"/>환경권 <input type="checkbox"/>이동권 및 접근권 <input type="checkbox"/>노동권 <input type="checkbox"/>정보권 <input type="checkbox"/>개인정보보호권 <input type="checkbox"/>기타(            )</p> <p>10. 위와 같이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없음 (1) 누구에 의하여: _____ (2) 언제/어떠한 상황에서: _____ (3) 어떤 방식으로: _____</p>	<p>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p> <p>문항8에 ①번 응답시 체크</p>
<p><b>종합 판단</b></p>	<p>9.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없음</p>	
	<p>10. 그러한 인권침해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전에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인권침해 방지 방안: _____ (2)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 _____</p>	





## 인권정책영향평가 등의 방법 및 지표개발 연구

| 인쇄일 | 2022년 12월

| 발행일 | 2022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831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mailto:research@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936-5 93350 비매품

